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47호

2018. 1. 18.(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4195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
제419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
제4197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
제4198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	14
제4199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1
제4200호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	23
제4201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44
제4202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50
제4203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58
제4204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71
제4205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76
제4206호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84
제4207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93

[입법예고]

제2018-113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94
---	----

◆ 고 시

제2018-11호 당현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96
제2018-12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99
제2018-13호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표지 폐기 고시	116
제2018-14호 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16
제2018-15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127
제2018-16호 도시관리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49
제2018-17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성북제2- 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고시	152
제2018-18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고시	168
제2018-19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169
제2018-20호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72

제2018-21호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제5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75
제2018-22호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한국종합무역센터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86
제2018-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87

◆ 공 고

제2018-71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공고	192
제2018-81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193
제2018-84호 설계업 등록 공고	194
제2018-8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95
제2018-95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195
제2018-99호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97
제2018-102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217
제2018-106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지정 공고	217
제2018-10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공고	218
제2018-109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계획 및 보호구역 조정계획 공고	219
제2018-111호 시민의 숲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	224
제2018-11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25
제2018-115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226
제2018-117호 중랑캠핑숲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227

◆ 구 고 시

제2018-6호 도시계획시설[둘리(쌍문)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봉구)	228
제2018-7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도봉구)	230
제2018-8호 도시계획시설사업(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활용홍보전시관 건립)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노원구)	231
제2018-1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은평구)	233
제2018-15호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233
제2018-1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구로구)	238
제2018-1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구로구)	238
제2018-18호 가산동 148-9,10호(신번지 778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 및 고시(금천구)	239
제2018-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239

제2018-12호 도시관리계획(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강동구)	242
--	-----

◆ 구 공 고

제2018-3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종로구)	244
제2018-46호 도시관리계획(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종로구)	246
제2018-44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중구)	248
제2018-41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성동구)	255
제2018-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도봉구)	257
제2018-65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수립 공고(강서구)	259
제2018-80호 도시관리계획(등촌택지지구) 변경결정(안) 재열람공고(강서구)	262
제2018-9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구로구)	264
제2018-7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사업인정을 위한 열람(의견청취) 공고(영등포구)	268
제2018-5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동작구)	271
제2018-60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 · 공고(동작구)	282
제2018-90호 관악구 도시계획시설(관악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열람공고(관악구)	283

◆ 사업소고시

제2018-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85
제2018-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85

◆ 기 타

제2018-10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86
제2018-11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86
제2018-12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87

◆ 정 정

서울특별시 조례6681호 정정	288
------------------------	-----

자 치 법 규**[규 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195호****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시”를 “선정 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종료시”를 “종료 시”로, “취소시”를 “취소 시”로 한다.

제8조의2 본문 중 “수탁기관이”를 “수탁기관은”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로”를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법령”을 “별도의 법령”으로, “회계감사를”을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로, “있다”를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00.00.0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마. 민간위탁기간
-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나.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개정으로 회계감사 대상사무가 모든 위탁사무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무로 회계감사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조례 등에 따라 대체 가능한 회계감사 주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8조의2)
- 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될 사항을 명확화 개정함에 따라 동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관련 별지서식(동의안 작성서식)에 반영(안 별지 서식)

◆ **서울특별시규칙 제419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7호 중 “시청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민참여예산과”를 “시민참여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3항 중 “시민참여예산과장”을 각각 “시민참여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경제진흥본부장 및 투자유치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시청 직장 어린이집 시설 관리

제16조제6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제20조제8항제18호 중 “미불보상”을 “미지급보상”으로 한다.

제20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2제6항제15호 중 “미불보상”을 “미지급보상”으로 한다.

제68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제69조제6항 중 “경전철관리과”를 “경전철관리과·영동대로복합개발과”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식물연구과”를 “식물연구과, 전시교육과”로 하고, “식물연구과장”을 “식물연구과장, 전시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물원 전시계획 수립 및 운영

2. 전시 콘텐츠·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식물자료 DB 구축 및 전산화
5. 식물원 홈페이지 개발, 관리 및 운영

별표2 강남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 남 소방서	삼 성 119안전센터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구중 : 삼성동(삼성 1·2동), 청담동, 대치동 (대치 1·2·4동)
	영 동 119안전센터	강남구 도산대로 320 (논현동)	강남구중 : 압구정동, 신사동, 논현동(논현 1·2동)
	역 삼 119안전센터	강남구 역삼로 236 (역삼동)	강남구중 : 역삼동(역삼 1·2동), 도곡동(도곡 1·2동)
	수 서 119안전센터	강남구 광평로31길 6 (수서동)	강남구중 : 수서동, 일원동(일원본동·1·2동)
	개 포 119안전센터	강남구 논현로10길 19 (개포동)	강남구중 : 개포동(개포1·2·4동)
	세 곡 119안전센터	강남구 밤고개로26길 11-17 (율현동)	강남구중 : 율현동, 자곡동, 세곡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현원의 면직 시까지 개방형직위로 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기구 신설·명칭 변경 및 부서간 사무이관과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직위 변경 등 기구조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사업소·직속기관 내 부서 신설 및 본청 부서 명칭변경

- 세곡119안전센터 개관에 따른 소재지 및 관할범위 지정
-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 복합개발' 및 서울식물원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담부서 신설
- '시민참여예산과' 명칭을 '담당관'으로 조정

나. 효율적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무 소관부서 조정

-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 소관 변경

다. 인사운용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직위 조정 등

- 경제진흥본부장, 공공개발센터장 개방형직위 지정 해제 등

◆ **서울특별시규칙 제4197호****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계	18,144	4,410	300	7,964	5,320	150
----	--------	-------	-----	-------	-------	-----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242	4,232	294	402	5,164	150
-------	--------	-------	-----	-----	-------	-----

같은 표 5급 소계란, 행정란, 공업란, 녹지란, 약무란, 간호란, 의료기술란, 환경란, 보건란, 시설란, 농업란, 행정또는녹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소계	1,317	845	44	54	346	28
행정	586	408	41	22	92	23

공업	60	32			27	1
녹지	23	14			9	

약무	7	5			2	
간호	13	8			5	
의료기술	5	4		1		
환경	10	10				

보건	9	9				
시설	182	110			71	1
농업	4	4				
행정또는녹지	13	7			6	

같은 표 5급 직렬란 중 시설란 다음에 방재안전란을, 시설관리란 다음에 행정또는속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재안전	1	1				
행정또는속기	1		1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세무란, 사회복지란, 사서란, 전산란, 공업란, 녹지란, 약무란, 의료기술란, 보건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행정또는시설란, 통신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256	1,707	89	101	1,279	80
행정	1,185	772	67	39	254	53
세무	46	44	1			1
사회복지	19	16			3	
사서	17	2		6	9	
전산	76	53	3	3	15	2
공업	338	108	6	4	218	2

녹지	67	35			32	
약무	13	3			10	
의료기술	35	2		3	30	
보건	24	23				1
시설	524	280	1	2	224	17
방송통신	61	31	2	3	25	
시설관리	40	11			29	
운전	35	20	1	1	13	
행정또는시설	40	38			2	
통신운영	17	5	1	3	8	

같은 표 7급 소계란, 행정란, 사회복지란, 세무란, 사서란, 전산란, 공업란, 녹지란, 수의란, 간호란, 보건란, 환경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행정또는시설란, 기계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291	1,239	88	146	1,782	36
행정	1,213	640	62	57	429	25
사회복지	28	14			13	1
세무	34	34				
사서	20		1	8	11	
전산	115	68	2	8	36	1

공업	399	26	5	13	353	2
녹지	79	11		2	66	
수의	9	5			4	
간호	131	6		3	122	
보건	20	18			2	
환경	39	7		19	13	
시설	486	195	1	4	280	6
방송통신	57	24	3	12	18	
행정또는시설	38	35			2	1
기계운영	89	5	1		83	

같은 표 7급 직렬란 중 시설란 다음에 방재안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재안전	1	1				
------	---	---	--	--	--	--

같은 표 8급 소계란, 행정란, 공업란, 간호란, 환경란, 방송통신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행정또는 시설란, 농업또는녹지란, 통신운영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 농림운영란, 사육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761	222	48	83	1,407	1
행정	213	34	15	15	149	
공업	95	8	1	3	83	

간호	138				138	
환경	25	3		4	18	
방송통신	20	2		5	13	
시설관리	155	15			140	
운전	121	21	3	15	82	
행정또는시설	16	6			10	
농업또는녹지	10				10	
통신운영	13	6		2	5	
전기운영	106	2	1	1	102	
기계운영	239	3	2	1	233	
농림운영	21			3	18	
사육운영	16				16	

같은 표 9급 소계란, 공업란, 의료기술란, 방송통신란, 간호조무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급 소계	227	6	4	5	212	
공업	35				35	
의료기술	21				21	

방송통신	7			2	5	
간호조무	33				33	
전기운영	18	1			17	
기계운영	10			1	9	

같은 표 연구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직 계	370	25		189	156	
-------	-----	----	--	-----	-----	--

같은 표 연구관 소계란, 학예연구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관 소계	59	4		33	22	
학예연구	20	4			16	

같은 표 연구관 직렬란 중 기록연구란 다음에 수의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의연구	1			1		
------	---	--	--	---	--	--

같은 표 연구사 소계란, 학예연구관, 환경연구관, 수의연구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사 소계	311	21		156	134	
학예연구	84	14		2	68	
환경연구	74	1		58	15	
수의연구	4	1		2	1	

같은 표 소방공무원 계란, 소방경란, 소방위란, 소방장란, 소방교란, 소방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공무원 계	6,979	128		6,851		
소방경	416	21		395		
소방위	353	33		320		
소방장	739	35		704		
소방교	1,646	3		1,643		
소방사	3,651	8		3,64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18.1월 시행예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및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인력 재배치를 위한 직급 조정

2. 주요내용

총 정원을 17,771명에서 18,144명으로 373명 증원하고, 직렬·직급 조정을 통해 행정수요 증대분야 인력보강 및 적정인력 배치

- 조직문화 혁신 및 업무경감 지원을 위한 증원 및 직급부여(+373명)
- 119안전센터장, 운전·시설관리 등 현업인력 직급상향(32명)
- 환경변화 반영, 기관 내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직렬·직급 조정(5명)
- 관리운영직군 퇴직 및 공로연수에 따른 일반직으로의 정원조정(37명)

◆ 서울특별시규칙 제4198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월 18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국민안전처 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국민안전처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국민안전처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국민안전처 종합상황실”을 “소방청 종합상황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민안전처 종합상황실”을 “소방청 종합상황실”로 하며, 같은 서식 중 “국민안전처 장관”을 “소방청 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민안전처 차관”을 “소방청 차장”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강

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바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불용지”를 각각 “미지급용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불용지보상신청”을 “미지급용지보상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미불용지보상신청서”를 “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미불용지보상담당부서”를 “미지급용지보상담당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미불용지보상신청서류”를 “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류”로, “미불용지보상처리대장”을 “미지급용지보상처리대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자치구미불용지보상심의위원회)”를 “(자치구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불용지보상심의위원회”를 “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미불용지보상업무”를 “미지급용지보상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불용지보상신청서류”를 “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미 불”을 “미 지 급”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미 불”을 “미 지 급”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0조제1항 에”를 “제50조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의2제5항 중 “불입하여야”를 “납입하여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의료지도의사””를 ““구급지도의사””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의료지도의사”를 “구급지도의사”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로 한다.

제2조의1을 제2조의2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호에”를 “호의”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월중”을 “1월 중”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7일이내에”를 “7일 이내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기금의 지원목적외 사용)”을 “(기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금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를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금지출목적 외에 사용한 때””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 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제2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제10호에 따른”으로, “사무중”을 “사무 중”으로 한다.

제19조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1”을 “31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회의록등”을 “회의록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하 “법”이라 한다)”를 “(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하 중요규제라 한다)”를 “(이하 “중요규제”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해당 규제를”을 “해당 규제”으로 한다.

제12조 중 “시민등”을 “시민 등”으로 하고, “개선등에”를 “개선 등에”로 하며, “의견에 대하여”를 “의견이”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위원회”를 “감사위원회 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상위법령 제·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법령 적합성 확보

2. 주요내용

- 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
- 나.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 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준수 등 조례·규칙의 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경미한 사항

◆ 서울특별시규칙 제4199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교육훈련비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비용의 징수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표준훈련비의 10% 이내에서 정하되, 교육훈련생 모집 공고에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된 교육훈련 비용은 교육훈련생이 해당과정을 수료하는 경우에 전액 환급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조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선입학대상자, 위탁 교육생 또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한 성별의 위원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1항제2호 중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또는 제12조”를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3조”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제2항 중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교육훈련이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도탈락자 수가 증가하고, 실제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는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2. 주요내용

- 가. 교육훈련비 징수는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
나. 교육훈련비 징수 금액의 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표준훈련비의 10% 이내로 제한
다. 징수된 교육훈련비는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에 환급

라. 교육훈련비 정수와 관련된 규정은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입학자격 등)에 따른 우선입학대상자, 위탁교육생 또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규칙 제4200호**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통신 보안 및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과 소속 직원 등을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3. “인터넷망”이란 기관의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
4. “업무망”이란 기관의 네트워크 중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영역으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망 분리기관: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전산망
 - 나. 망 미분리기관: 인터넷서비스가 병행 제공되는 내부전산망
5. “정보시스템”이란 PC·서버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6. “휴대용 저장매체”란 디스켓·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7. “정보보안”이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위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8.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9. “전자기록물”이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10. “전자정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을 말한다.
11. “정보통신실”이란 서버·PC등과 스위치·교환기·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치 등이 설치 운용되는 장소를 말하며, 전산실·통신실·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전자정보)보관실 등을 말한다.
12. “안전측정”이란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해킹·컴퓨터바이러스·서비스방해·도청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취약점을 진단하는 제반활동을 말하며, 대도청(對盜聽)측정 활동을 포함한다.
13. “국가용 보안시스템”이란 비밀 등 중요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비·보안자재·암호논리 등을 말한다.
14. “암호장비”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저장·송수신되는 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암호논리를 내장하여 제작된 장비를 말한다.
15. “보안자재”란 통신내용 등의 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암호·음어·약호자재를 말한다.
16. “음어자재”란 Ⅲ급비밀 이하의 통신내용 등의 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숫자·기호 등으로 구성된 환자표 또는 암호논리 등을 수록한 문서나 도구를 말한다.
17. “약호자재”란 대외비 이하의 통신내용 등의 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 용어와 그에 대응·변환되는 문자, 숫자, 기호 등을 수록한 문서나 도구를 말한다.
18. “암호논리”란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무결성·인증·부인봉쇄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 또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19.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저장·검색·송신·수신 시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20. “사이버공격”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공격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시 본청
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3. 시 직속기관 · 사업소 · 합의제행정기관

제4조(정보보안 대상) 시의 정보보안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컴퓨터나 저장매체에 기록된 정보
2. 시에서 사용 또는 관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
3. 전자정보 및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인력, 시설 등

제5조(책무) 시장은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 관련 정보(전자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보안 조직

제6조(정보보안담당관 지정) ① 시장은 효율적 · 체계적인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속 · 직책 · 직급 · 성명 ·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포함) 등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의 기본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안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 시행
2.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3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정보통신보안 분야 안전 심의 주관
3. 정보보안 업무 지도 · 감독
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료 등의 보안관리
5. 정보보안 관리실태에 대한 자체 조사 · 평가
6. 사이버공격 초동조치 및 대응
7. 사이버위협정보 수집 · 분석 및 보안관제
8. 정보보안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
9. 정보보안 사고 조사 결과 처리
10. 정보보안 교육 및 정보협력
11. 도청 위해 요소 측정 · 제거
12.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활동
13.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용 및 보안관리
14.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의 수립 · 시행
15.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 · 시행
16. 그 밖에 정보보안 관련 사항

제3장 정보보안 기본활동

제1절 기본 사항

제7조(활동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① 시장은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그 추진결과를 심사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매년 1월 25일까지
2. 전년도 3/4분기 ~ 해당 연도 2/4분기 내용 종합 보안업무 심사분석 결과: 매년 7월 31일까지

제8조(지도방문) 시장은 정보통신망 운용 관리에 따른 보안취약성 개선을 위하여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 대하여 정보통신보안 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 관리) ① 시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포함)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자 보안에 관련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위·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 자격부여 심사
2. 비밀 등 중요정보 취급 시 비밀취급인가, 보안서약서 징구 등의 보안조치
3. 보직변경, 퇴직 등 인사이동 시 관련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조정

② 시장은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의 개발, 운용, 정비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정보유출이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용역사업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제10조 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상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부록 7)을 따른다.

제10조(용역사업 보안관리) ① 시장은 정보화·정보보안 사업 및 보안컨설팅 수행 등을 외부 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 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 계약 시 계약서에 참가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명시,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친필 보안서약서 제출 등
2. 용역사업 수행 관련 보안교육·점검 및 용역 기간 중 참여인력 임의교체 금지
3. 정보통신망도·IP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4. 사업 종료 시 외부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사업자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5.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열람 금지
6.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반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7. 그 밖에 시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② 시장은 용역사업 추진 시 과업지시서·입찰공고·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등 정보보안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③ 시장은 비밀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외부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비밀취급인가,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보안대책의 시행과 관련한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사업 책임자에게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용역사업 보안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상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부록 7)을 따른다.

제11조(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관리) ① 시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외부업체의 위탁 운영을 최소화하되, 위탁 운영 필요 시 관련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은 다른 기관 또는 업체 직원이 시 소관 부서 또는 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 부서 또는 기관에 위탁업무 수행 직원의 상주가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조건으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시스템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원격근무 보안관리) ① 시장은 재택·파견·이동근무 등 원격 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영할 경우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격근무 가능 업무 및 공개·비공개 업무 선정기준을 수립하고 대외비 이상 비밀 자료를 취급하는 업무는 원격근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경우 보안대책 강구 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수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모든 원격근무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원격근무자의 업무변경·인사이동·퇴직 등 상황 발생 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재설정 등 관련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④ 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 시 해킹에 의한 업무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수행 전 최신 백신으로 원격근무용 PC점검·업무자료 저장금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 원격근무자는 정보시스템 고장 시 정보유출 방지 등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정비·반납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비공개 원격업무인 경우에는 국가용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소통자료를 암호화 하고 행정전자서명체계를 이용하여 인증하며 인증강화를 위하여 일회용 비밀번호·생체인증 등 보안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⑦ 정보보안담당관은 주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원격근무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통신시설 보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암호실·통신실·전산실
 2. 통합전산센터
 3. 보안 관제센터, 백업센터 및 중요한 정보통신시설을 집중 제어하는 장소
 4.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참고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방지대책
 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
 3. 출입자 인증·식별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야간 감시대책
 4.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5. 정보시스템 안전지출 및 긴급과기 계획 수립
 6. 관리책임자 및 자료·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
 7.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
 8. 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
 9. 전자파 누설 방지 대책
 10.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 대책 등

제14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① 시장은 비밀 등 중요 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생산·보관·분류·열람·출력·송수신·이관하는 등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용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등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비밀 등 중요 전자정보를 다음 각 호의 PC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1. 업무망이 인터넷망과 분리된 경우: 업무망 전용 PC에서 처리
 2. 업무망이 인터넷망과 분리되지 않은 경우: 다른 전산망과 연동되지 않은 비밀문서 작업 전용 PC에서 처리
- ③ 비밀을 전자적으로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 시 비밀등급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비밀을 전자적으로 생산·열람·출력·송수신·이관 시에는 관련 규격에 따른 제반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송수신 시에는 정당성 확인 및 부인을 방지하기 위하

여 전자적으로 생성된 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비밀 생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PC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 저장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별도로 지정 사용하거나 PC내에 독립된 폴더를 지정, 국가용 보안시스템으로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국방·외교 관련 사항 등 비밀을 주로 취급하는 정보통신망을 인터넷망 등 상용망과 분리 운용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으로 처리된 비밀을 종이문서로 출력한 이후의 취급관리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5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 시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규정한 보안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의 생산·등록·보관·사용·유통·재분류·이관·파기 등 전 처리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기능
2. 비밀의 관리를 위한 기능
3. 비밀을 표시하기 위한 양식 및 외형 정의
4.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 기록·관리 기능
5. 비밀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대장 및 카드 정의
6. 사용자 및 시스템 관리 기능
7. 그 밖에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보안·관리 기능

제2절 정보보안 점검

제16조(모의훈련) ① 시장은 자체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 완료일 기준 2개월 이내 훈련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모의훈련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보안 교육) ① 시장은 자체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들은 반드시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보안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 자체 실정에 맞는 정보보안 교안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보안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정보보안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① 시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관 정보통신망의 악성코드 감염여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여부 등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진단 결과를 제7조에 따른 정보보안업무 심사분석에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시장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 등을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평가 대상·기준, 평가항목 및 기간에 따라 자체 평가하여야 한다.

제20조(자체평가 및 개선대책 강구) ① 시장은 국가정보원이 구축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의 계정을 부여받아 정해진 기간 동안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별 증빙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온라인 평가시스템에 첨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평가결과를 자체 정보보안 대책 등의 수립 시에 반영하고 취약요소를 개선·보완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측정) ① 시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측정을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른 전자정보 보안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의 이행여부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라 보안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4.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안전대책의 수립·수행 관련 지도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는 경우
5.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정보통신망의 보안취약성 진단이 요구되는 경우
6. 중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보호대책이 필요한 경우
7. 정보통신수단에 의하여 국가기밀 유출 및 암호체계의 누설 우려가 있는 경우
8. 시장이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취약성 점검 또는 종합 진단을 요청한 경우
9. 그 밖에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측정 결과 신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필요한 조치를 시장에게 요청할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정보원장의 안전측정과는 별도로 홈페이지 등 자체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안취약성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상, 점검항목, 조치내용 및 조치계획 등을 3개월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용역을 통해 보안취약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이 시의 자체 보안취약성 점검결과에 대하여 별도의 안전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은 이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침해사고 및 재난 방지

제22조(사고상황전파) ① 시장은 사이버공격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팩스·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해야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 사이버공격이 발생한 경우
2.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사이버공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사이버공격 계획 등 사이버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제23조(정보보안 사고 조사) ① 시장은 별표 1의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존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일시 및 장소
2. 사고 원인, 피해 현황 등 개요
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4. 조치 내용 등

② 시장은 규정에 따른 관련자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등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침해사고) 침해사고 등 사이버 테러 발생 시 대응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재난방지) ①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이원화, 백업관리,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방지대책을 정기적으로 시험하고 검토해야 하며 업무 연속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백업시설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백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통신실과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원 이원화 분리 등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재난으로 인한 정보통신 마비 상황 발생 시 대응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절 그 밖의 보안활동

제26조(무선도청 탐지) ① 시장은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청사 신설·이전 또는 증·개축 시설

2. 기관장실·회의실 등 중요시설
3. 중요 협상·회의와 회담장소 또는 도청 의심징후가 있는 장소
- ② 시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선 도청 탐지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무선도청 탐지활동을 실시하고 통보한 결과나 자체 무선도청 탐지활동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탐지활동 결과 도출된 도청 취약요소 등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비상사태 시 보호관리) ①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에 비밀 및 중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비밀 및 중요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후송하여 계속 보관해야 할 비밀(A급 비밀)
2. 암호장비, 음어자재, 비밀관리시스템 등 국가용 보안시스템
3. 비밀이 저장된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4. 시장이 보관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중요자료 및 중요 정보시스템 등

③ 시장은 제1항의 보호관리 대책 수립 시 충무사태 단계별 비밀 및 중요 정보시스템의 소산·이동·파기 절차·방법 등 조치방안 일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비상사태에 따라 업무지역 이동 시 비밀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소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비상사태 시 비밀문서의 보안관리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국가비상사태 시 비밀관리지침」을 따른다.

제5절 보안관제

제28조(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분석·대응할 수 있는 자체 보안관제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하루 24시간 중단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을 따른다.

제29조(정보공유) 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안관제센터의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사이버안전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 제출한 경우에는 변동사항만 통보한다.

② 시장은 보안관제 시 수집된 사이버공격 정보가 다른 보안관제센터의 소관 업무와 연관될 경우에 해당 보안관제센터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속히 이관하여야 한다.

제30조(보안관제 용역업체 선정 및 관리) ①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안

관계 전문업체중에서 ‘보안관계 용역업체 업무수행 능력평가 기준’ 등을 참고하여 보안관계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② 보안관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작성한 각종 문서는 평가가 끝난 후에도 공개할 수 없으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규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안관계 용역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탐지규칙 관리 등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제31조(탐지규칙 관리) ① 시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제공한 탐지규칙(이하 “탐지규칙”이라 한다) 전담 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대외비에 준하여 탐지규칙 관리
 2. 보안관계시스템 탐지규칙 외부 유출 금지
 3. 탐지규칙 관리시스템 원격접근 금지
 4. 인터넷 등 외부로 유출된 경우 즉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신고
- ② 시장은 자체 개발한 탐지규칙을 적용할 경우, 통합보안관계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공유하여야 한다.
- ③ 탐지규칙 전담 관리자는 탐지규칙 보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 ‘보안관계 탐지규칙 보안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 전담 관리자는 탐지규칙 관리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2조(보안관계센터 수행업무) 보안관계센터 업무수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전산망 보안관계지침」을 따른다.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대책

제33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대책) ① 시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다음 해 보호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소관 주요기반시설별 시스템 현황 및 기능
 2. 전년도 보호업무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추진계획
 3.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4.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대책
 5.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 ③ 시장은 시 산하 주요기반시설의 관리기관에 대하여 보호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34조(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보안관리) ① 주요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등 외부기관에 소관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 망 구성도 등 중요자료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외부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취약점 및 관련 보호대책을 포함한다)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적절성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평가 세부 결과를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대외비 또는 비밀로 지정·관리하고 인터넷이나 학회지 등 외부에 공개 또는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보안 기술 교류나 학문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 회의 등의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를 거친 후 발표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평가 방향, 평가중점사항, 평가결과 적절성 검증, 평가업체 보안점검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제어시스템 보안관리) ① 시장은 지하철, 교통, 상수도, 전력, 인터넷 등을 중앙에서 감시 및 제어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제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제어시스템 도입·교체 시 최신 백신 설치, 응용프로그램 보안 패치 및 침해사고 대응책을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 후 사업 추진 시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어시스템에 백신 등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시 가용성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 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철도, 교통, 상수도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제어시스템 구축 시 해당 시스템을 업무망 및 인터넷망 등 상용망과 분리 운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어시스템과 상용망 간 연동이 필요할 경우 시장은 국가정보원장의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 연동구간에 일방향 통신장비 설치 등 안전한 망 연동 기법을 검토한 후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보안 위반

제36조(통신보안 위규사항 등) 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인가자에게 누설하거나 위반하지 않아야 할 통신보안 위규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보안 위규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 나.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및 업무시간 중 음란, 저속, 도박, 비방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한 경우
 - 나.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 다.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 라.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 마.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 부여
 - 바.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사.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 자. 불법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
 - 차. 비인가 보조매체, 메신저, 상용메일 무단 사용
 - 3. 그 밖의 위반 사항
 - 가.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나. 정보보안 교육 미 이수
 - 다. 실태점검 등 보안점검을 통해 발견된 취약점 미 조치
 - 라. 보안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마. 정보보안 사고 인지 후 미 보고
 - 바. 정보화사업 시 보안점검표에 따른 보안대책 미 수립
-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하여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에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 및 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7조(규칙 등 재검토) 정보보안담당관은 이 규칙을 포함한 정보보안 관련 규칙 및 지침의 타당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신설·변경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8조(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지침 운영)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안전성 확인·평가, 국가용보안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정보보안 사고 유형

(제23조 관련)

조	구 분	항	세 부 내 용
1	전자정보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	(1) (2) (3) (4)	비밀의 유출 주전산기(주요 서버 등) · 대용량 전자기록(DB) 손괴 전자정보의 위조 · 변조 · 훼손 및 유출 PC 등 단말기內 비밀의 평문 보관 및 유통
2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1) (2) (3) (4) (5) (6) (7)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 · 악성코드의 유포 비밀이 저장된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분실 중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파괴 고의적인 중요 정보시스템 기능 장애 및 정지 상용메일 등을 통한 비밀 등 중요자료 무단 소통 비밀 등 중요자료의 무단 반출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비밀 등 중요자료 무단 소통
3	암호장비	(1) (2) (3) (4) (5) (6)	암호장비 분실 및 피탈 암호장비 파손 및 임의파기 암호장비 복제 · 복사 비인가 암호장비 사용 암호장비 비닉체계 특성 및 제원 노출 암호장비 키 운용체계 노출
4	보안자재	(1) (2) (3) (4)	암호 · 음어 · 암호자재의 분실 및 누설 암호 · 음어 · 암호자재의 파손 및 임의파기 암호 · 음어 · 암호자재의 임의제작 사용 세부 암호체계 노출

[별표 2]

통신보안 위규사항

(제36조 관련)

내 용	세 부 내 용
1. 적성국과의 통신	가. 적성국 인터넷망과의 메시지 또는 자료 송수신 나. 적성국의 국내외 인터넷 거점(경유지를 포함한다)과의 통신 다. 적성국의 국내외 인터넷 거점(경유지를 포함한다)에서 공직자 상용메일 불법 접속 라. 적성국의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계정과의 메시지 또는 자료 송수신
2. 정보통신망을 통한 군사상 기밀의 누설 또는 유출	가. 군사전략, 작전계획 및 진행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나. 군 편제·임무·시설 및 그 밖의 부대현황의 누설 또는 유출 다. 병력(군·경·예비군) 현황 및 이동 상황의 누설 또는 유출 라. 경찰 및 특수기관의 장비(작전·정보·수사용) 현황과 집행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마. 특수기관·군사시설의 위치 및 이동상황의 누설 또는 유출 바. 군사장비의 구성·성능 및 발명개량 연구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사. 군사장비(군수품 등) 생산 및 공급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아. 그 밖에 국가방위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교상 기밀의 누설 또는 절취	가. 국가 외교방침, 기본계획 및 재외공관에 발하는 훈령의 누설 또는 유출 나. 공개할 수 없는 외교조약 또는 협약의 누설 또는 유출 다.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해외주재원의 활동(계획·지시·보고) 및 신원정보와 관련된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라. 그 밖에 국가외교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4.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가정보활동 관련 사항의 누설 또는 절취	가. 대공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나. 정보(첩보) 수집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다. 간첩 또는 대공용의자 발견과 수사활동의 누설 또는 유출 라. 정보 및 특수 수사기관의 기구 또는 임무기능 관련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마. 국가원수 및 그 밖의 요인의 비공개행사의 누설 또는 유출 바. 불명선박의 발견 및 처리의 누설 또는 유출 사. 중요물자 수송활동의 누설 또는 유출 아. 테러·마약·밀수 및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수사활동의 누설 또는 유출 자. 적 또는 경쟁국에 유리한 과학기술 및 산업 관련 정보의 누설 또는 유출 차.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공안유지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5. 암호자재 관련 사항	가. 암호자재의 연구개발 및 제작에 필요한 사항 누설 나. 암호전문을 허위로 조립하여 송신 다. 암호를 부정한 목적에 사용 라. 암호문과 암호화되지 아니한 평문의 혼용 및 이중사용 마. 암호문 작성시 동일 난수를 2회 이상 반복사용 바. 사용기간이 경과된 암호자재를 계속 사용 사. 암호문에 암호화되지 아니한 평문을 삽입하여 송신 아. 그 밖에 암호자재 보호체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누설

내 용	세 부 내 용
6. 전자정보	가. 주전산기(주요 서버 등)·대용량 전자기록(DB)의 손괴 나. 전자정보의 위조·변조·훼손
7.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시스템 관련 사항	가.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침입, 해킹·악성코드의 유포 나. 중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파괴 다. 중요 정보시스템 기능 장애 및 정지
8. 비인가 통신시설 및 통신제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	가. 비인가된 무선시설의 설치·운용 나. 비인가된 무선시설과 교신 다. 비인가된 호출부호 및 주파수 사용 라. 비인가된 전파형식 사용 마. 지정출력의 초과사용
9. 허가목적 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허가목적 업무와 관련이 없는 통신 나. 군 통신망에서 군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통신 다. 그 밖에 사회질서를 해치는 통신

[별지 제1호서식]

정보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

(제7조 관련)

1. 활동목표
2. 기본방침
3. 세부 추진계획

분 야 별	사 업 명	세부 추진계획	주관·관련부서	비 고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대상여부 표기

4. 전년도 보안감사·지도방문시 도출내용과 조치내역

도 출 내 용	조 치 내 역	담당부서

※ 형식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소속 및 산하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 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정보보안업무 심사분석

(제7조 관련)

1. 총 평

2. 주요 성과 및 추진사항

3. 세부 사업별 실적분석

추진계획	추진실적	문제점	개선대책

※ 추진실적은 목표량과 대비하여 성과 달성도를 계량화

4. 부진(미진)사업

부진사업	원인 및 이유	익년도 추진계획

5. 애로 및 건의사항

6. 첨부(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용현황 등)

[별지 제3호서식]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제29조 관련)

보안관제센터 개요				
개 소	* 개소일자 기재		위 치	
규 모	* 상황실 면적 등		예 산	* 구축예산 및 운영예산
조직 현황				
개 요		* 조직구성, 인원 및 임무, 근무형태 등 기술		
1	부서(소속)		센 터 장	
	직 급		성 명	
	이 메 일		연 락 처	전화 : HP :
2	부서(소속)		직급/직책	
	담당분야		성 명	
	이 메 일		연 락 처	전화 : HP :
3	* 센터장과 탐지 · 분석 · 대응 등 담당분야별 대표자만 기입			
외부인력 현황				
업 체 명			대표이사	
인 원 수			근무형태	
계약기간			수행업무	
지침 · 매뉴얼 현황				
지 침			기 준	
매 뉴얼			기 타	
보안관제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 주요기능 기술		시스템명	
시스템명			시스템명	
시스템명			시스템명	

보안장비 보유 현황					
F/W	* 제품명 및 사용대수 기입	IDS/IPS			
ESM		WEB F/W			
라우터		그 밖의 장비	예) NMS 1대 * 네트워크 구성도 사본제출		
보안관제 연동기관 현황					
* 대상기관 수, 기관명, 대상목표(인터넷 또는 내부전산망, 홈페이지 등) 기술					
연동기관 IP할당 현황					
1	연동기관		IP 관리 자	성명	
	공인IP			연락처	
	사설IP			전자우편	전화 : HP :
2					
3					
4					
5					
6					

[별지 제4호서식]

사이버공격 정보 이관

(제29조 관련)

탐 지 정 보							
탐지기관명	○○ 보안관제센터			탐 지 자			
탐지이벤트				탐지방법			
발 생 일 시				이관일시			
연 락 처	전화 :			Fax :			
공 격 정 보							
공 격 I P		공격포트		피 해 I P (국적 · 기관)		피해포트	
경 유 I P (국적 · 기관)				사 고 유 형			
발 생 건 수 (건/분)							
공 격 내 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관련 규정 개정내용 반영과 정보보안 교육강화, 정보보안관련 규정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내부적인 기술적·관리적 부분 삭제 및 정보보안 내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내용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적용범위에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 삭제(안 제3조)
- 나. 정보보안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교육 이수 의무화(안 제17조)
- 다. 보안관련 경미한 사고 발생 시 개선 권고 및 중대한 위반 시 감사의뢰 근거 마련(안 제36조)
- 라. 정보보안 규칙 및 지침 관리 강화(안 제37조)
- 마. 지침으로 정할 사항을 분리·삭제하고 관련 지침 마련 근거 신설(안 제38조)
- 바. 그 밖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등

◆ 서울특별시규칙 제4201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재무회계”를 “회계관리”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의회사무처”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시의회사무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지방회계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의회사무처

제3조제1항제3호가목1), 2), 3), 4), 5), 6), 7), 8), 9), 10) 및 11)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서울시립대학교

제3조제1항제3호나목1), 2), 3), 4), 5), 6), 7), 8), 9), 10) 및 11)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1, 2, 3급 소속관서[서울특별시립병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이하 “시립미

술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전단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의회”를 각각 “시의회사무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본청소관”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청 소관”으로, “의하여 당해 구·동 주민센터”를 “따라 해당 자치구 및 동”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를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관직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에 따른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을 “시의회사무처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을 “시의회사무처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의회의 장”을 “서울특별시의회의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라,”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조·구매계약 (200만원)”을 “제조·구매계약(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의회의”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조사결과”를 “조사 결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으로,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20조의2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정산결과”를 “정산 결과”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징수관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매월 징수 보고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징수부에 대하여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35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별지 제27호서식(2))”을 “별지 제27의2호서식)”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제5호 중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로 한다.

제41조제3항 단서 중 “40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를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사유로”로 한다.

제4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수입대체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급급 지급에 관하여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 전단 중 “대하여 대하여”를 “대하여”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일상경 비”를 “일상경비”로 한다.

제52조제2항 본문 중 “따라”를 “따르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임시일상경 비출납원”을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한다.

제53조 중 “일 상경비정리부(별지 제50호 서식)”를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50호서식)”로 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산결과”를 “정산 결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지출관 계공무원”을 “지출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출관계공무원”을 “지출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66조제4항 전단 중 “동조 제2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경우 법 제82조 에”를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에”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일시보관유가 증권”을 “일시보관유가증권”으로 한다.

제71조 중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일시보관유가증권”으로 한다.

제7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회계책임관은 감사부서 공무원을 지정하여 연간 1회 이상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한 지출내역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6조제2항 중 “수수연월 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을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으로, “(별지 제61호 서식)”을 “(별지 제61호서식)”으로 한다.

제92조제2항 중 “공인,”을 “공인”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64호서식)

제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67호서식)

제95조제1항 중 “소관징수관”을 “소관 징수관”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0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를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사유로”로, “인영(인영)”을 “인영”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제5호 중 “때.”를 “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때”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 중 “소관지출원”을 “소관 지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관징수관”을 “소관 징수관”으로 한다.

제102조 전단 중 “소관지출원”을 “소관 지출원”으로 한다.

제109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으로, “200만원”을 각각 “300만원”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 중 “별지 제80호 및 제81호서식”을 “별지 제80호서식 및 별지 제81호서식”으로 한다.

제116조 중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한다.

제12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해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32조의2제2항 중 “「전자서명법」 같은”을 “「전자서명법」 및 같은”으로 한다.

제141조의2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145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61조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서울시립대학교 : 행정처장

제166조제1항제2호 중 “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171조의 제목 “(재정사항의 공포)”를 “(재정사항의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보”를 “서울시보”로 한다.

제173조 중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고금관리법령”을 “「국고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74조제1항 중 “재무사무”를 “회계사무”로, “시행령등”을 “시행령 등”으로 한다.

제17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자금운용기록부
(제62조제2항 관련)

날짜	회계	공금잔액 (1)	지출						환입					실공금잔액 (1-2+3)	비고
			정기 예금	MMD A	기타 예금	차입 또는 대여	일계	누계 (2)	정기 예금	MMD A	기타 예금	차입 또는 대여	일계	누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예기치 못한 회계사고 등 발생 시 담당공무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키 위한 재정보증보험 가입 금액의 상향 조정 및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원활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관직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을 따르는 조항 추가(안 제3조)
- 나.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을 제외한 회계관직의 재정보증금액을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안 제166조제1항)
- 다. 신용카드 및 인터넷을 통한 물품 등 구매 시 300만 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가능(안 제109조제3항)
- 라. 회계책임관이 감사부서 공무원을 지정하여 연간 1회 이상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한 지출내역 등의 검사 실시(안 제79조제3항)
- 마. 자금운용기록부 서식 변경(안 별지 제51호서식)
- 바. 그 밖에 정부조직 변경사항 등 조문 정비

◆ 서울특별시규칙 제4202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월 18일

제1조 중 “계약심사업무”를 “계약심사 업무”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같은 법률 제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특정제품”이란 물품제조·구매 및 공사 발주 시 제조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공법·기술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제품·공법 및 해당 공법에 대한 시공·기술(특허제품·특허공법 등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인 신기술은 제외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기술용역 :”을 “기술용역:”으로, “「주택법」 제24조제1항, 「측

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주택법」 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학술연구용역:”을 “학술연구용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일반용역:”을 “일반용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10%”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행사업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를 “제3조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본문 중 “용역.”를 “용역”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업(제외기간은 제외 결정 후 1년에 한하며, 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을 “사업.”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외기간은 제외 결정 후 1년에 한하며, 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3호나목 중 “2퍼센트”를 “3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물품(완제품) 제조·구매”를 “물품제조·구매”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심사부서의 장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설계경제성(VE) 심사를 완료한 사업

제5조의 제목 “(심사요청)”을 “(계약심사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3호까지의 규정을”을 “제3호까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특정제품 선정심사)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5조의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에 대한 구매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정제품 구매 타당성 및 가격 적정성
2. 특정제품 선정 적정 여부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사대상 특정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특정제품이 포함되면 같은 사업에 포함되는 모든 특정제품이 심사대상이 된다.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품명(제품의 특정 이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 재료원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공사 성격(내구성, 친환경, 불연성 등)이나 특수한 기술 등으로 공종별 순공사원가(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의 합을 말한다)가 1억원을 초과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포함한 공사. 이 경우 해당 공종을 모두 심의대상에 포함한다.

2.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품명당 구매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특정제품 구매금액의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물품제조 사업에 포함된 특정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특정제품 제조금액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심의대상은 해당 특정제품에 한정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위촉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 발주부서의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장

가. 시 본청 및 자치구: 실·본부·국장

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관장(다만, 서울시립대학교는 행정처장, 상수도사업본부는 부분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국장, 한강사업본부는 총무부장)

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라.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

2. 위원

가. 시 본청 및 사업소(3급 이상): 4, 5급

나. 시 사업소(4급 이하) 및 자치구: 5, 6급

다. 공사·공단: 시 본청 수준

라. 출연기관: 자치구 수준

⑤ 위원회는 안전 발생 시마다 실·본부·국 또는 기관단위로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사업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심사실시)”를 “(계약심사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심사결과)”를 “(계약심사 결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당연직이 아닌”을 “위촉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른”을 “위촉직”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박사학위 소지자”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

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격기본법”을 “「자격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계약심사업무”를 “계약심사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효율적”을 “자문회의는 효율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자문회의”를 “시장은 자문회의”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공표)”를 “(공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계약심사결과”를 “계약심사 결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제품 선정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최초로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 청 기 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입찰종료 예정일 (공개제한 종료시점)				
공사금액	· 총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천원 - 관 급 비 : 천원 - 이 설 비 : 천원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천원 - 관 급 비 : 천원 - 이 설 비 : 천원				
예산내역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천원)		
설 계 자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발 주 처	· 담 당 자 (전화번호 :)						
특정제품/공법 선정심사			선정심사 여부		☐ 심사		
			선정제품(공법)명		☐ 미심사		
건설업 종 류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주공 정	☐ 토목	☐ 준설, 토공사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 포장, 상하수도설비	☐ 비계, 구조물해체, 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	☐ 그 외
		☐ 건축					
		☐ 조경					
		☐ 산업설비					
○ 공사개요 							
○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XML 파일 포함),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3호서식】

물품 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구 매 예정일자		입찰종료 예정일 (공개제한 종료시점)	
예정원가 작성자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예산내역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천원)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개최대상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 구매개요 			
○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결과 서류(심의결과 보고서, 심의의결서, 의결사항) <해당시> 각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4호서식】

물품 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조(수리) 기 간		입찰종료 예정일 (공개제한 종료시점)	
예정원가 작성자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예산내역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천원)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개최대상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 제조(수리)개요 			
○ 첨부서류 1. 제조원가 계산서 1부 2. 제조(수리) 사양서 1부 3.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결과 서류(심의결과 보고서, 심의의결서, 의결사항) <해당시> 각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9호서식】

대행사업 심사요청서

사 업 명			요청기관	
대행사업자	· 명 칭 : · 위 치 : · 대표자 : (전화번호 :)		대행사업 유형	
대행기간		입찰종료 예정일 (공개제한 종료시점)		
사업비용	총 대행사업 비 : 천원 - 인건비 : 천원 - 운영비(경비) : 천원 - 사 업 비 : 천원		금회(당해연도)대행사업비 : 천원 - 인건비 : 천원 - 운영비(경비) : 천원 - 사업비 : 천원	
예산내역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천원)	
예정원가 작성 자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대행사업 개요(구체적으로 서술 : -				
○ 첨부서류 1. 원가계산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산출근거자료 포함)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방침서, 협약 관련 서류 등)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일버리기 및 계약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업무량을 감축하고 상위규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맞게 심사대상 완화 등을 통해 계약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제품” 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

나. 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의 계약심사 제외대상 확대(안 제4조)

다. 특정제품 선정심사 제도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라. 특정제품이 포함된 사업 심사 시 사전 심의여부 등 검토조항 추가(안 제6조)

마. 특정제품 사전심의 제도 도입 등에 따라 계약심사요청 서식에 사전검토 항목 추가 등 서식 개선

바. 그 밖의 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 서울특별시규칙 제4203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주관기관) 조례 제2조제10호에서 “시장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제5조제1항에 따른 별표2의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말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

제3조(직무대행) 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난 유형별 대책본부의 차장·통제관·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장이 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복합재난으로 그 수습 주무부서가 소속된 부시장이 각각 다를 때에는 행정1부시장이 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실무반 구성) ① 통제관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조례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는 별표1을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는 별표2와 같다.

②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나.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조례 제2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는 대책본부의 통제관 및 담당관을 포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

집한다.

-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의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실무회의의 구성·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 1.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 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2. 실무회의는 대책본부의 통제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2에서 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 직원으로 구성한다.
- 3.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12조(상황판단회의의 구성·운영) ① 본부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1. 비상단계 지역대책본부 운영 여부
 -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
 -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재난 상황에 따라 대책본부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1. 대책본부의 통제관
 - 2. 대책본부의 담당관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조례 제17조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구성) ① 본부장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자치구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경우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파악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 파악
4. 지역주민 대피 및 자치구 지역대책본부의 수습 상황 파악
5.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제16조(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와 협조체제 구축) ① 본부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구호기관 및 각종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와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및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7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본부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

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 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자치구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제3장 재난에 대한 지원

제1절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

제20조(지원대상) 본부장은 법 제6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회재난(조례 제13조에 따른 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경우에 한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해당 자치구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는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하여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으로써 관할 자치구청장이 요청한 경우
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으로써 관할 자치구청장이 요청한 경우

제21조(지원기준 등) 본부장은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표1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에 의거 지원할 수 있으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22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20조에 따라 본부장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관할 자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④ 자치구청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 ⑥ 자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 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전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자치구청장은 제22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4조(지급방법) 이 규칙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25조(지원금 반환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이 규칙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재원의 확보) 서울특별시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제2절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28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안전 또는 건강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생활 또는 건강에 필요한 구호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호품을 지급할 때는 성별에 따른 고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 또는 건강에 취약한 계층에게 지급하는 생활 또는 건강에 필요한 구호품의 지급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서울특별시재난안전상황실

제29조 (서울특별시재난안전상황실 구성)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재난의 범위는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한다.

② 재난안전상황실에는 서울특별시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과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를 두고 상황실장은 상황대응과장으로 한다.

③ 상황실장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총괄 지휘·감독하고,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복무사항을 관장한다.

④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황실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재난안전상황실 운영)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연중 상시 운영하며 상황실 근무는 별도로 정하는 근무명령에 따른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경우에는 해당 관련부서 직원에 대하여 상황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재난안전상황실 보고) ① 평상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는 전자상황네트워크·방송·인터넷·재난관리기관 등을 통해 각종 재난정보를 파악·분석하고 매일 2회(07:00, 17:00) 재난 및 기상상황에 대하여 보고·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는 야간 또는 휴무일 근무 중 비상상황 발생으로 신속한 보고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 후 상황실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황실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을 보고체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제4조 관련)

구 분	임 무	관 련 부 서
총괄지원관	본부장 · 차장 보좌 및 대책본부 업무 지원 총괄	안전총괄본부장
지원협력관	본부장 · 차장 보좌 및 대책본부의 행정 및 대외협력 총괄	기획조정실장
통 제 관	본부장, 차장, 총괄지원관 · 지원협력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실 · 국 · 본부장
담 당 관	본부장, 차장, 총괄지원관 · 지원협력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재난수습 주무과장
상황총괄반	○ 상황실 재난상황 총괄 관리 ○ 재난상황 종합보고, 상황판단회의 ○ 예·경보 등 상황전파, 비상발령 ○ NDMS(재난관리시스템) 문서접수 및 통보 ○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현장 피해조사, 원인분석 및 긴급복구 ○ 현장지휘 및 복구점검(현장지휘소 지원) ○ 항구복구대책 수립	○ 실무반장 : 소관부서 과장 (예 : 풍수해 발생 시 하천관리과) ○ 관련부서 - 안전총괄과 - 그 외 관련부서
생활지원반	○ 피해주민 임시주거 및 응급구호물품 지원 ○ 거동불편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 피해주민 안전관리 대책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 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 민간단체 구호지원	○ 실무반장 : 복지정책과장 ○ 관련부서 - 어르신복지과, 희망복지지원과, 건강증진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가족담당관 등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재난수습 주무부서 비상연락망 유지 ○ 재난현장 쓰레기 수거 및 처리 ○ 수거운반 및 처리장비 지원 ○ 임시적환장, 폐기물 처리시설 점검 ○ 재해지역 폐기물 발생량, 환경오염량, 수집 운반경로, 청소 인력, 장비 배치 등 현황파악	○ 실무반장 : 생활환경과장 ○ 관련부서 -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 그 외 기후환경본부 소속과
통신지원반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통신두절지역(재해지역 등) 통신 기반시스템 복구 ○ 긴급통신을 위한 자원 파악 및 지원 ○ 재난현장통합지휘소 및 대책본부 비상통신지원 ○ 대체통신 수단 확보 및 지원	○ 실무반장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관련부서 - 정보기획담당관, 데이터센터, 총무과, KT 등
시설복구반	○ 재난지역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투입 ○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현장 지휘 ○ 민간분야 공사장 등 피해현장 조사 ○ 복구인원 및 장비, 동원현황 기록관리	○ 실무반장 : 방재시설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 ○ 관련부서 - 건축기획과, 소상공인지원과 - 공원녹지정책과, 산지방재과 - 수도방위사령부 - 그 외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과

구 분	임 무	관 련 부 서
에너지복구반	○ 에너지 시설(전기·가스·유류) 피해상황 관리 및 복구 ○ 재난 피해주민 수용시설 에너지 지원 ○ 가스전기 시설물 안전관리 및 피해예방 ○ 전동차 선로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운행 대책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단 가동	○ 실무반장 : 녹색에너지과장 ○ 관련부서 - 예방과, 한국전력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그 외 기후환경본부 소속과
재난홍보반	○ 언론매체 대응 및 보도자료 작성 ○ 인터넷매체 모니터링 및 시민 소통 ○ 재난상황 관련 왜곡정보 대응 ○ 재난현장 취재안내 및 통제	○ 실무반장 : 언론담당관 ○ 관련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뉴미디어 담당관 - 교통방송 - 한국방송공사 등
자원지원반	○ 사·구 방재자원 담당 비상근무 체계유지 ○ 유관협력기관 및 민간단체 등 보유자원 파악지원 ○ 재난현장 복구지원	○ 실무반장 : 상황대응과장 ○ 관련부서 - 안전관리과(도기본), 예산 담당관, 재무과, 총무과, 하천관리과 등
교통대책반	○ 재난수습 주무부서 및 현장담당자와 비상연락망 유지 ○ 피해발생 및 예상지역 교통통제 및 복구 ○ 교통상황 전파 및 교통정보(vms) 알림 ○ 교통상황 관리(교통정보센터 연계)	○ 실무반장 : 교통정책과장 ○ 관련부서 -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교통정보과, 교통운영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도로사업소 등
행정지원·자원봉사반	○ 행정지원 총괄(총괄조정, 복구예산 등) ○ 실·국·본부 대책회의 ○ 피해 자치구 행정지원(市 공무원, 자원봉사 등) ○ 재해지역 자원봉사자 및 민간단체 참여 지원 ○ 비상발령 복무점검 등	○ 실무반장 : 자치행정과장 ○ 관련부서 - 인사과, 시민봉사담당관, 상수도사업본부,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등
의료·방역반	○ 재난현장 의료인력 투입·운영 ○ 재난현장 방역대책 실시 ○ 방역물자 비축현황 점검 및 지원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및 지원 ○ 피해지역 주민 감염병 등 예방접종	○ 실무반장 : 보건의료정책과장 ○ 관련부서 - 생활보건과, 식품정책과, 동물보호과, 건강증진과 등
질서협력반	○ 군부대, 민방위 지원 대책 ○ 경찰력, 타 지자체 지원 등 ○ 교육청(학교시설 피해) 지원 대책 ○ 교통통제·치안유지·범죄예방 등	○ 실무반장 : 안전감사담당관 ○ 관련부서 - 민방위담당관, 교육정책과,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지방경찰청 등
구조·구급반	○ 재난상황 즉시 전파(상황실 및 재난수습 주무부서) ○ 소방 장비·인력 등 재난 초동대응체제 전환 ○ 피해(예상)지역 경보 방송(방송차량, 민방위통제소) ○ 재난현장 구조 및 구급 등(긴급구조통제단)	○ 실무반장 : 재난대응과장 ○ 관련부서 - 소방행정과, 현장대응단, 종합방재센터 등

[별표 2]

재난수습 주무부서(제2조 및 제5조 관련)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국.본부(통제관)	과(담당관)
1	자연 재난	황사(미세먼지)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		가뭄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3		홍수해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4		낙뢰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5		설해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6		지진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7		폭염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8		한파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9		화산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10		산사태 · 급경사지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11	사회 재난	산업시설생산 마비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12		생활필수품유통 마비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13		농수산물 유통마비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14		해외재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15		가스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16		원유수급 마비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17		전력 마비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1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19		유해 화학 물질 유출 사고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1		소각시설 마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2		지하철 대형사고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23		지하철파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24		버스파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25		육상화물운송 마비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26		택시파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27		지하철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도시 철도국)
28		도로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시설국)
29		아파트공사장 붕괴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30		공연 · 행사장 안전사고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국.본부(통제관)	과(담당관)
31	사회 재난	환경(수질) 오염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32		물재생센터 마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33		댐붕괴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34		원전안전(방사능)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35		식용수공급사고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36		상수도 누수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37		상수도공사장 붕괴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38		다중밀집 대형화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39		대테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40		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41		위험물질 유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42		재난대응분야(구조·구급)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43		정전 승강기 사고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44		가축질병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45		병원시설 대형사고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46		보건의료 마비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47		감염병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48		한강교량 대형사고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49		도로함몰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50		공동구 사고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51		도로터널 사고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52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53		정보서비스 마비	정보화기획단	데이터센터
54		정보통신 마비	정보화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55		대형건축물 붕괴(다중밀집건축물)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56		산불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57		한강수난사고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58		시정사 마비	행정국	총무과

[별표 3]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6조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 · 복명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 · 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시 · 도 대책본부 운영상황	시 · 도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시 · 도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시 · 도 대책본부 회의	회의 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상황판단회의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세부 운영 규정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의 구호 및 복구에 관한 규정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안 제3조~제19조)

나.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기준 신설(안 제20조~제27조)

다. 재난취약계층 구호품 지원 신설(안 제28조)

라. 재난안전상황실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29조~제31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204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광화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사용신청 내용을 별지 서식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 대장에 기록한다.

③ 주무부서는 신청서 접수 후 즉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사용허가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조(신청서류의 보완) 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되, 신청자가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다음연도 사용허가신청 수리)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신청서 제출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광장을 사용한 행사
3. 연례적으로 광장을 사용한 행사로서 행사준비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사
4.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다음연도 광장사용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다음연도 광장 사용일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사용허가 신청기간은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넷째 주 금요일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 대상 및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수리여부를 확정할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허가신청 순위)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사용허가신청 순위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정한다.

②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신청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에 대한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때
2. 광장에 설치할 시설물의 위치, 수량, 높이 등이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광화문광장의 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조례 제9조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제7조(준수사항)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2.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사용 기준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용료 기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장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광장사용료 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단 위	금 액(원)	비 고
사 용 료	㎡/시간	10원	
기 타	1.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야간사용료(18:00시~다음날 06:00시)는 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4. 신청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할을,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할을 가산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별지 서식]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 대장

[illegible]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입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신설(안 제2조)
- 나. 신청서류의 보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신설(안 제3조)
- 다. 다음연도 사용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라. 사용허가신청 순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신설(안 제5조)
- 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위임사항 신설(안 제6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205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월 18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록관리)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방대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활동으로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청구인이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현장지휘관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소방공무원의 직접적 현장활동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제4조(손실보상의 절차)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

식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손실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소방서장은 해당 청구서 및 관련자료 전부를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하 “소방재난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소방재난본부장은 손실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없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소방재난본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청구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손실보상의 결정)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 승인 통지서

2.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통보 받은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관하여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소방재난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④ 소방재난본부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금의 지급) ① 손실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협의에 의해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지급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소방재난본부장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④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들에게 서명하도록 해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전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전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전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재난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재난현장활동 손실 발생내역

제 호

개 요	재난종류				
	일 시		장 소		
	재난개요				
	피 해 자 인적사항	성 명 : 연락처 :			
	손실발생 대 상				
	손실발생 경 위				
	조치내용				
특이사항					

첨부서류 : 현장사진, 현장활동 운영일지 등 관련 자료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인의 물적 피해현황을 기록함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손실개요	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손실액 산출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손실보상청구 (일부 · 전부) 승인 통지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보상금액(청구금액)	
	보상방법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의
인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시장

직인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손실보상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각·각하)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중 발생한 민간인 소유 재산의 물적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7. 3. 23. 시행)됨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 절차 및 손실보상위원회의 운영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을 할 경우의 기준 및 보상금액을 규정(안 제3조)

나. 청구인의 손실보상 청구서 제출절차 및 손실보상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규정(안 제4조)

다. 소방재난본부장의 통지서 작성 및 통보 의무와 청구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안 제5조)

라. 손실보상위원회의 의결방법,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9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206호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월 18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출동 소방력 운용과 현장 지휘체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출동 소방력 운용

제3조(소방서 출동기준) ① 소방서 출동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조·구급 출동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하 “소방재난본부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관할 소방력으로 현장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에 지원출동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에서는

즉시 인접 소방관서에 출동지령을 하여야 한다.

③ 출동 소방력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재난본부장이 정한다.

제4조(공동관할구역)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과의 거리가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소방관서에서 더 가까운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공동관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관할구역에서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은 인접 소방관서가 1차출동대에 편성되도록 출동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별 출동체계)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중대한 사고 또는 재난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4개 방면으로 구분한 지역별 출동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서부지역(제1방면): 종로, 중부, 용산, 은평, 마포, 서대문
2. 북동부지역(제2방면): 동대문, 광진, 성북, 도봉, 노원, 중랑, 강북, 성동
3. 남서부지역(제3방면): 영등포, 강서, 양천, 구로, 금천, 관악, 동작
4. 남동부지역(제4방면): 강남, 서초, 강동, 송파

③ 제2항에 따른 각 지역에는 방면지휘본부장을 둔다. 이 경우 소방재난본부장은 방면지휘본부장의 거주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재난대응단계 구분 및 판단기준) ① 현장지휘관은 제3조에 따른 대응규모를 초과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비상발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발령의 재난대응단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단계별 발령권자 및 구체적인 발령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대응 1단계: 1개 소방서의 전 소방력으로 대응 필요
2. 대응 2단계: 2~5개 소방서의 소방력으로 대응 필요
3. 대응 3단계: 6개 이상 소방서의 소방력으로 대응 필요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재난본부장은 둘 이상의 자치구에서 동시에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심각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대응 3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재난본부장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방면지휘본부장을 출동시켜 방면별 지휘체계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현장 지휘체계

제7조(재난대응단계별 비상소집의 범위) 제6조제2항의 재난대응단계에 따른 비상소집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현장 지휘체계) ① 재난대응단계별 지휘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방재난본부장은 대응 1단계 이상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특별시 긴급구조지휘대장이 지휘하도록

할 수 있다.

1. 비상발령전단계: 선착대장 또는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
2. 대응 1단계 및 대응 2단계: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3. 대응 3단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장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관이 지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휘권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하는 각 지원기관의 자원을 하나의 지휘소 및 대응활동계획에 따라 조정·통제하는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통합지휘소 설치) ① 현장지휘관은 재난상황 및 규모 등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지휘차 또는 특정 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통합지휘소를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요원 등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기관별 지휘소) 현장지휘관은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에서 기관별 지휘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적정한 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관별 지휘소가 정상적으로 설치될 때까지 최대한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기관별 임무 부여) 현장지휘관은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연락관이 도착하면 각 기관별로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여야 하고, 임무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상황판단회의) 현장지휘관은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현장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명의 탐색·구조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원의 배치 및 운용 방법
2.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대책과 긴급구호에 관한 사항
3. 추가 필요자원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
5. 단계별 재난 진행·긴급구조 상황 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
6. 그 밖에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재난현장 통제) ① 현장지휘관은 조례 제5호제1항제6호에 따라 재난현장을 통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작과 종료시점, 구역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공무원에게 제1항의 내용을 통보하고 통제를 지시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현장지휘관은 통제를 실시할 경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통제선 표지를 설치하고, 통제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재난통신보좌관) ① 현장지휘관은 원활한 현장지휘를 위하여 소방공무원 중에서 재난통신보좌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재난통신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정보 수집·분석 및 상황 보고
2. 예비통신의 운용
3. 현장지휘관 명령사항 처리 확인
4. 지역·구역·임무별 책임자인 단위지휘관과의 연락업무 등

제15조(즉시보고 기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과 관할 소방서장은 재난현장 지휘 및 보고체계 확립을 위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체계는 별표 4에 따른다.

제16조(현장활동 운영일지) 조례 제9조에 따른 현장활동 운영일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회의) ① 현장지휘관은 사고 및 재난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난대응평가회의를 개최하고, 현장활동 운영일지를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회의의 운영과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소방재난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출동 소방력 세부 운용기준과 현장 지휘체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재난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은 이 규칙 공포일부터 폐지한다.

[별표 1]

소방서 출동기준(제3조 제1항 관련)

소방력 단계별	출동소방력 (출동대)	지휘권자
기본출동	1개대 (관할119안전센터)	선착대장
1차출동	4개대 이상 (관할·인접119안전센터, 관할서 현장대응단)	선착대장 → 긴급구조지휘대장(지휘팀장)
2차출동	1~2개대 추가 (관할서 119안전센터 전부)	선착대장 → 긴급구조지휘대장(지휘팀장) → 소방서장
비 고	1. 소방서장은 단계별 출동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출동 소방력을 가감할 수 있음 2. 단계별 화재규모 예시 - 기본출동 : 현장 확인출동 등 이에 준하는 화재 - 1차출동 : 일반주택, 소규모점포, 사무실 등 단일건물에서의 단순화재 - 2차출동 : 대형건물, 공장, 일반상가 등 대형화재 및 연소확대 우려시의 복합화재	

[별표 2]

재난현장 비상발령(대응단계) 기준(제6조 제2항 관련)

단계별	예상피해	현장활동 소요시간	기타조건
대응 1단계	○ 인명피해 10명 미만 ○ 이재민 10명 미만 ○ 재산피해 5억 미만 ○ 대형화재(인근건물로 연소 우려없고, 인명피해 없는 상황)	3시간 ~8시간	○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시(단순 화재·구조·구급 등 30분 이내 종료 사항은 제외)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유형 ○ 다중이용장소 재난(단, 30분 이내 종료사항은 제외)
대응 2단계	○ 인명피해 10~20명 ○ 이재민 10~50명 ○ 재산피해 5억~10억 ○ 인명대피 100명 이상 ○ 대형화재(기상상황 감안 인근 건물 연소 우려가 높은 상황)	8시간 ~24시간	○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5명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으로 10명이상 인명피해시 ○ 다중이용장소 재난으로 10명 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대응 3단계	○ 인명피해 20명 이상 ○ 이재민 50명 이상 ○ 재산피해 10억 이상 ○ 인명대피 200명 이상 ○ 인근 건물로 연소 확대되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화재	24시간 이상	○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20명이상 발생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으로 20명 이상의 인명피해 발생시 ○ 다중이용장소의 재난으로 20명 이상의 인명피해 발생

※ 비고

1. 『공공시설물 등』이란, 서울특별시 소유 시설물·청사, 공용물, 공공용물, 관공서, 수업중인 학교, 유치원등 교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및 건축물을 말함
2. 『특수재난』이란, 테러·화생방·항공기·철도·초고층 등의 재난과 현장대응이 일반적 수준을 넘어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을 말함
3. 각 단계별 기준 중 2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비상발령 원칙이나 3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발령 해야 함
4.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회적 물의, 여론의 집중 조영 등이 예상 될 때에는 긴급구조지휘대장(소방서장)은 비상발령을 할 수 있음

[별표 3]

재난대응단계별 비상소집 범위(제7조 관련)

구분 단계	관할소방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대응 1단계 출동	필수인력	서울특별시 긴급구조지원대
대응 2단계 출동	전 직원	필수인력
대응 3단계 출동	전 직원	전 직원

[별표 4]

즉시보고 운영 기준 (제15조 관련)

즉시보고 기준	즉시보고 체계										
가. 화재 및 화재를 수반한 재난 등 발생시 ◦ 인명피해 - 사망 1명 이상 ◦ 재산피해 - 1억원 이상 나. 전통신장(등록·인정시장) 화재 다. 대형교통사고, 붕괴 등 긴급구조구급 사태 발생시 ◦ 인명피해 - 사망 3명 또는 중상 5명 이상 라. 다수 이재민 발생시 ◦ 인명피해 - 이재민 50명 이상 마. 다중 구급활동 발생시 ◦ 인명피해 - 사상자 10명 이상 바. 그밖에 국가중요시설물 및 특수화재 또는 위 각호 보고 대상 기준 이하로서 언론보도 등 사회 이목이 집중되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재 등 재난상황 ※ 중상 2명은 사망 1명으로 간주하여 보고대상 여부를 판정함.	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상황팀장)·소방서장은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상황실 및 현장에서 즉시 보고(지휘보고) ◦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팀장은 즉시보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예상되는 재난에 대하여 상황을 면밀히 판단하여 소방력을 출동 조치한 후 상황이 급박할 것으로 판단되면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본부 당직상황책임관에게 통보 ◦ 또한 진행상황에 따른 재난상황의 상태를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수시 보고 나.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청 기준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서울특별시시장에게 즉시 보고 다. 즉시보고 체계도 <table><tr><td>현장보고 (1차)</td><td>→</td><td>상황보고 (2차)</td><td>→</td><td>수습보고 (3차)</td></tr><tr><td>사고발생 보고</td><td></td><td>진행상황 보고</td><td></td><td>최종수습 및 대책보고</td></tr></table>	현장보고 (1차)	→	상황보고 (2차)	→	수습보고 (3차)	사고발생 보고		진행상황 보고		최종수습 및 대책보고
현장보고 (1차)	→	상황보고 (2차)	→	수습보고 (3차)							
사고발생 보고		진행상황 보고		최종수습 및 대책보고							

[별지 제1호서식]

현장활동 운영일지(제16조 관련)

(○○ 소방서)

(00년 00월 00일)

재난 개요 : ※ 육하원칙에 의해 간략하게 기술

시각(간)	운 영 내 용	조치근거
■ 00:00	■	■ 지휘통제계획
■	■	■ 무선전파
■	■	■ 대면조치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지휘대장

소속 :

계급 :

성명

인

※ 비상시는 통제단장 명의로 작성

○○ 긴급구조통제단장

소속 :

계급 :

성명

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가.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나.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의 효율적인 지휘체계와 자치구,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관련기관 간 협업체계 확립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방서 출동기준 및 공동관할구역 등 효율적인 출동체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나. 재난대응단계 구분 및 판단기준을 규정하여, 현장지휘관이 기준에 따라 비상발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다. 현장지휘관은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 등에서 기관별 지휘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최대한 협조 및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라. 현장지휘관은 각 기관별로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고 임무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수시로 확인해야 함(안 제11조)
- 마. 현장지휘관은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안 제12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207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 중 “각”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팀장, 각”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정수운영과장”을 “행정관리팀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내 정수운영과가 행정관리팀과 정수운영과로 조직개편되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관직지정에서 분임재무관 및 지출원을 정수운영과장에서 행정관리팀장으로 개정(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13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18.1.1 시행)에 따라 지방재정규모 확대,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투자심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투자심사 기준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신설하며, 타당성 조사·검증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등 제도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기준으로 “일자리 창출효과” 항목 신설(안 제2조)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원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투자심사시 고용효과를 검토

나. 투자사업 심사대상 기준 재정비(안 제3조)

1) 투자심사 기준금액 조정

- (시 자체심사)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자치구 → 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 2) 투자심사 제외대상을 각 호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 다. 타당성 조사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제14조)
- 1)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절차, 방법 등 명시
 - 2) 타당성 재조사 및 타당성 검증 규정 명시
3.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정관리담당관(전화:02)2133-6870, FAX:02)2133-0825, E-mail: yhshim21@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1호

당현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제2013-14호(2013.01.17)로 기 고시된 중랑천권역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 대장 작성용역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한 「당현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 중랑천권역의 당현천 일부 구간에 대하여 당초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노원 상계뉴타운 사업(3구역)을 감안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뉴타운 사업이 해제됨에 따라 하천을 현상태로 유지함에 따른 수리·수문 특성을 검토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권역명	하천명	당초 변경	유역면적 (km ²)	연평균강우량 (mm)	수자원총량 (백만m ³)	유출량 (백만m ³)			손실량 (백만m ³)
						홍수기	평상시	계	
중랑천	당현천	당초	11.15	1,207.2	13.46	6.68	2.13	8.81	4.65
		변경	11.15	1,207.2	13.46	6.68	2.13	8.81	4.65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권역명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면적 (km ²)	계획빈도 (년)	기본홍수량 (m ³ /sec)	유역및홍수방어 시설별홍수량 (m ³ /sec)	하도분담 홍수량 (m ³ /sec)
중랑천	당현천	당현천 하구	11.15□	100	228	—	228
		광석천 합류점	7.92□	100	164	—	164
		북개1 종점	5.18□	100	113	—	113

권역명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면적 (km ²)	계획빈도 (년)	기본홍수량 (m ³ /sec)	유역및홍수방어 시설별홍수량 (m ³ /sec)	하도분담 홍수량 (m ³ /sec)
		당고개역 상류지점	3.07□	100	68	—	68
		복개1시점 하류지점	1.68□	100	36	—	36
		과업시점	0.96□	50	20	—	20

라.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권역명	하천명	주요지점명	기본홍수량 (m ³ /sec)		계획홍수량 (m ³ /sec)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중랑천	당현천	당현천 하구	228	228	228	228	20.70	20.70	56	56
		광석천 합류전	164	164	164	164	26.76	26.76	41	41
		복개1 종점	113	113	113	113	35.63	35.63	29	29
		당고개역 상류지점	68	68	68	68	48.45	48.14	20	11
		복개1시점 하류지점	36	36	36	36	54.69	54.69	9	9
		과업시점	20	20	20	20	86.70	86.70	7	7

마. 보전지구 · 복원지구 · 친수지구 현황

권역명	하천명	구간(No.)		안별	지구구분	연장(km)
		시점	종점			
중랑천	당현천	53+00	0+00	좌 안	친수지구	2.64
		106+00	53+00	좌 안	복원지구	2.67
		116+32	106+00	좌 안	보전지구	0.52
		53+00	0+00	우 안	친수지구	2.64
		106+00	53+00	우 안	복원지구	2.67
		116+32	106+00	우 안	보전지구	0.52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하천관리과) 및 각 하천의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자치구청 관리부서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당현천 지정 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한 「당현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지방하천의 구분 및 지정 변경 사항

하천명	하천 등급	당초 변경	구 간			변경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당현천	지방 하천	당초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155-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중랑천(국가) 합류점	5.83	-
		변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155-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중랑천(국가) 합류점	5.83	

3. 당현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서울특별시(하천관리과) 및 각 하천의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자치구청 관리부서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하천명	하천 등급	구 간			면적 (m ²)		결정(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당초	변경	
당현천	지방 하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155-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중랑천(국가) 합류점	5.83	217,062	211,037	고시일 (노원상계뉴타운 (3구역)사업 해제)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1:1,500)

4. 당현천 폐천부지 및 지형도면의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서울특별시(하천관리과) 및 각 하천의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자치구청 관리부서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폐천부지는 하천 전 구간에 산재하여 위치하고 있는바, 구간의 기점·종점은 하천의 기점·종점을 기재 하였고,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은 국·공유지에 한함.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면적 (m ²)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발생 연월일
		기 점	종 점	당초	변경		
당현천	지방 하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155-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중량천(국가) 합류점	35,943	36,945	보전-현상태이용 하천환경보전 활용	고시일

첨부서류 : 1. 폐천부지등이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폐천부지등이 표시된 지형도면(1:1,5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2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1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영등포지역)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2010.01.21.)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71호(2013.01.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6호(2015.07.30.)로 정비구역 해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8호(2016.01.14.)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8호(2017.04.27.)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7호(2017.05.25.)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0호(2017.08.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영등포구 영등포동 2·5·7가 일원	144,507.7	증) 86.3	144,594.0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재정비촉진계획의 목적(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44,507.7	증) 86.3	144,594.0	100.0	
도시계획 시설	소 계	49,455.9	증) 46.3	49,502.2	34.2	
	도 로	37,873.9	증) 45.6	37,919.5	26.2	
	광 장	1,446.0	－	1,446.0	1.0	
	공 원	8,427.3	감) 3.4	8,423.9	5.8	
	공공공지	1,708.7	증) 4.1	1,712.8	1.2	
주 상 복 합		59,796.7	증) 40.0	59,836.7	41.4	
상 업 복 합		32,257.1	－	32,257.1	22.3	
종 교 시 설		2,998.0	－	2,998.0	2.1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2)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없음)

3)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 로	16	37,873.9	증) 45.6	37,919.5	
공 원	2	8,427.3	감) 3.4	8,423.9	
광 장	1	1,446.0	-	1,446.0	
공공공지	1	1,708.7	증) 4.1	1,712.8	
주차장(환원)	1	860.8	-	860.8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특 성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문화공원	영등포동5가 43-3 일대	5,464.5	-	5,464.5	도시의 문화적 특징을 활용, 만남의 장소, 지역 중심	
역사공원	영등포동7가 155-22 일대	2,962.8	감) 3.4	2,959.4	상산전 보전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5) 교통계획 (변경없음)

6) 경관계획 (변경없음)

7)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사업의 종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개 구역)			144,507.7	증) 86.3	144,594.0	-	
재 정 비 촉 진 구 역	영등포1-2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7가 76-5일대	5,392.0	-	5,392.0	도시환경 정비사업	
	영등포1-3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7가 29-1일대	8,407.0	-	8,407.0	도시환경 정비사업	
	영등포1-4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7가 145-8일대	58,335.8	증) 86.3	58,422.1	도시환경 정비사업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5가 30일대	17,391.8	-	17,391.8	도시환경 정비사업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5가 22-3일대	16,256.0	-	16,256.0	도시환경 정비사업	
	영등포1-13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5가 32-8일대	27,065.1	-	27,065.1	도시환경 정비사업	
	영등포1-14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5가 34-16일대	11,660.0	-	11,660.0	도시환경 정비사업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8)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

구역명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계	144,507.7	증) 86.3	144,594.0	100.0	
	준주거지역	103,699.9	증) 86.3	103,786.2	71.8	
	일반상업지역	40,807.8	-	40,807.8	28.2	
영등포1-2 재정비촉진구역	계	5,392.0	-	5,392.0	100.0	
	준주거지역	433.0	-	433.0	8.0	
	일반상업지역	4,959.0	-	4,959.0	92.0	
영등포1-3 재정비촉진구역	계	8,407.0	-	8,407.0	100.0	
	준주거지역	1,017.2	-	1,017.2	10.6	
	일반상업지역	7,389.8	-	7,389.8	89.4	
영등포1-4 재정비촉진구역	계	58,335.8	증) 86.3	58,422.1	100.0	
	준주거지역	58,335.8	증) 86.3	58,422.1	100.0	
	일반상업지역	-	-	-	-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계	17,391.8	-	17,391.8	100.0	
	준주거지역	2,743.9	-	2,743.9	8.9	
	일반상업지역	14,647.9	-	14,647.9	91.1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	계	16,256.0	-	16,256.0	100.0	
	준주거지역	2,444.9	-	2,444.9	8.7	
	일반상업지역	13,811.1	-	13,811.1	91.3	
영등포1-13 재정비촉진구역	계	27,065.1	-	27,065.1	100.0	
	준주거지역	27,065.1	-	27,065.1	100.0	
	일반상업지역	-	-	-	-	
영등포1-14 재정비촉진구역	계	11,660.0	-	11,660.0	100.0	
	준주거지역	11,660.0	-	11,660.0	100.0	
	일반상업지역	-	-	-	-	

※ 용도지역 변경은 사업시행을 전제로 계획된 사항이므로, 용도지역 변경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고시 예정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가) 기정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 축 시 설 계 획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주된용도	용적률 (%)	건폐율 (%)	층수(지하) /높이	주거 연면적 비율(%)		
기정	합계	144,507.7	-	95,051.8	-	-	520이하	54이하	-	-		
	1-2	5,392.0	-	3,930.4	영등포동7가 76-5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610이하	52이하	32F(4)/120m	50미만		
	1-3	8,407.0	-	5,767.1	영등포동7가 29-1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610이하	55이하	31F(5)/120m	50미만		
	1-4	58,335.8	1-4-1	35,507.2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근린생활, 업무, 주거	370이하	52이하	35F(3)/120m	90미만		
			1-4-2	2,998.0	영등포동7가 148-18 일대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		
	1-11	17,391.8	-	11,981.1	영등포동5가 30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770이하	58이하	38F(5)/130m	50미만		
	1-12	16,256.0	-	10,578.5	영등포동5가 22-3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750이하	59이하	38F(5)/130m	50미만		
	1-13	27,065.1	-	17,234.9	영등포동5가 32-8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398이하	59이하	33F(4)/99m	70미만		
	1-14	11,660.0	-	7,054.6	영등포동5가 34-16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380이하	55이하	24F(4)/80m	70미만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수 × 60% 이상 - 주거연면적 × 50% 이상 • 임대주택 (200세대 이상) - 전용면적 40㎡ 이상 - 세대수 × 17% × 주거연면적비율 이상 또는 주거연면적 × 10% × 주거연면적비율 이상				구 분	전 용 면 적	세 대 수 (세 대)	비 율 (%)	비 고	
							합계		3,546	100.0	-	
							임대		841	23.7	-	
							분양	60㎡ 이하		996	28.1	-
								60 ~ 85㎡ 이하		1,615	45.5	-
								85㎡ 초과		94	2.7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30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5m 후퇴지정 • 20m이하 도로변 건축한계선 2~3m 후퇴지정(1-9호선 보행자전용도로 제외. 단, 중2-5호선 건축한계선 지정) • 진입광장 인접 보행자 도로변 1층 벽면지정선 지정 • 보행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구역에 1층 벽면한계선 5m 지정									

- ※ 1. 주용도는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2. 주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 이상, 3가지일 경우 34% 이상으로 도입 용도 중 가장 많은 비율로 계획하여야함.
 3. 층수는 최고층수이며, 높이는 최고높이 기준으로, 다양한 높이계획을 권장함.
 4. 최고 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층수 조정 가능
 5. 1-4구역은 사업시행인가된 주거연면적 이내에서 주거연면적 비율 90% 미만 적용
 6. 1-4구역 임대주택은 최소 200세대 이상으로 계획 (단, 계획세대수 증가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준용하여 임대주택 추가 적용)
 7. 오피스텔 설치시 주거연면적 비율에 포함하여 산정(단, 뉴타운 추진구역 지원계획에 따른 '비주거시설내 오피스텔 10% 허용' 사항은 주거연면적비율 산정시 제외함)
 8.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의거 주용도가 업무시설일 경우 오피스텔 불허
 9. 주거연면적비율 외에 '재정비촉진지구 상업 및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완화 기준'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7.5%, 장기전세주택 2.5% 추가 가능하며 준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비율 산정시 전체 연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 (단, '뉴타운 추진구역 지원계획'에 따른 비주거시설내 오피스텔 10%는 준공공임대주택 7.5%, 장기전세주택 2.5%로 공급 가능함)

나)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 축 시 설 계 획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주된용도	용적률 (%)	건폐율 (%)	층수(지하) /높이	주거 연면적 비율(%)
변경	합계	144,594.0 (증 86.3)	-	95,091.8 (증 40.0)	-	-	520이하	54이하	-	-
	1-2	5,392.0	-	3,930.4	영등포동7가 76-5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610이하	52이하	32F(4)/120m	50미만
	1-3	8,407.0	-	5,767.1	영등포동7가 29-1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610이하	55이하	31F(5)/120m	50미만
	1-4	58,422.1 (증 86.3)	1-4-1	35,547.2 (증 40.0)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근린생활, 업무, 주거	370이하	52이하	35F(3)/120m	90미만
			1-4-2	2,998.0	영등포동7가 148-18 일대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
	1-11	17,391.8	-	11,981.1	영등포동5가 30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770이하	58이하	38F(5)/130m	50미만
	1-12	16,256.0	-	10,578.5	영등포동5가 22-3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750이하	59이하	38F(5)/130m	50미만
	1-13	27,065.1	-	17,234.9	영등포동5가 32-8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398이하	59이하	33F(4)/99m	70미만
	1-14	11,660.0	-	7,054.6	영등포동5가 34-16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380이하	55이하	24F(4)/80m	70미만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수 × 60% 이상 - 주거연면적 × 50% 이상 • 임대주택 (200세대 이상) - 전용면적 40㎡ 이상 - 세대수 × 17% × 주거연면적비율 이상 또는 주거연면적 × 10% × 주거연면적비율 이상			구 분	전 용 면 적	세 대 수 (세 대)	비 율 (%)	비 고
						합계		3,546	100.0	-
						임대		841	23.7	-
						분양	60㎡ 이하	996	28.1	-
							60 ~ 85㎡ 이하	1,615	45.5	-
							85㎡ 초과	94	2.7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30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5m 후퇴지정 • 20m이하 도로변 건축한계선 2~3m 후퇴지정(1-9호선 보행자전용도로 제외. 단, 중2-5호선 건축 한계선 지정) • 진입광장 인접 보행자 도로변 1층 벽면지정선 지정 • 보행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구역에 1층 벽면한계선 5m 지정							

- ※ 1. 주용도는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2. 주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 이상, 3가지일 경우 34% 이상으로 도
 입 용도 중 가장 많은 비율로 계획하여야함.
 3. 층수는 최고층수이며, 높이는 최고높이 기준으로, 다양한 높이계획을 권장함.
 4. 최고 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층수 조정 가능
 5. 1-4구역은 사업시행인가된 주거연면적 이내에서 주거연면적 비율 90% 미만 적용
 6. 1-4구역 임대주택은 최소 200세대 이상으로 계획 (단, 계획세대수 증가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준용하여 임대주택 추가 적용)
 7. 오피스텔 설치시 주거연면적 비율에 포함하여 산정(단, 뉴타운 추진구역 지원계획에 따른 '비주거시설내 오피스텔 10%
 허용' 사항은 주거연면적비율 산정시 제외함)
 8.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의거 주용도가 업무시설일 경우 오피스텔 불허
 9. 주거연면적비율 외에 '재정비촉진지구 상업 및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완화 기준'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7.5%, 장기전
 세주택 2.5% 추가 가능하며 준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비율 산정시 전체 연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
 (단, '뉴타운 추진구역 지원계획'에 따른 비주거시설내 오피스텔 10%는 준공공임대주택 7.5%, 장기전세주택 2.5%로
 공급 가능함)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10)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현황(㎡)		계획(㎡)		공공용지부담	
	명칭	면적(㎡)	대지(㎡)	공공용지(㎡)	대지(㎡)	공공용지(㎡)	면적(㎡)	비율(%)
기정	합계	144,507.7	111,688.7	32,819.0	95,051.8	49,455.9	16,636.9	14.9
변경		144,594.0 (증 86.3)	111,775.0 (증 86.3)	32,819.0 (-)	95,091.8 (증 40.0)	49,502.2 (증 46.3)	16,683.2 (증 46.3)	14.9 (-)
기정	1-2	5,392.0	4,334.2	1,057.8	3,930.4	1,461.6	403.8	9.3
기정	1-3	8,407.0	6,775.2	1,631.8	5,767.1	2,639.9	1,008.1	14.9
기정	1-4	58,335.8	45,019.6	13,316.2	38,505.2	19,830.6	6,514.4	14.5
변경		58,422.1 (증 86.3)	45,105.9 (증 86.3)	13,316.2 (-)	38,545.2 (증 40.0)	19,876.9 (증 46.3)	6,560.7 (증 46.3)	14.5 (-)
기정	1-11	17,391.8	14,232.7	3,159.1	11,981.1	5,410.7	2,251.6	15.8
기정	1-12	16,256.0	12,677.6	3,578.4	10,578.5	5,677.5	2,099.1	16.6
기정	1-13	27,065.1	20,501.0	6,564.1	17,234.9	9,830.2	3,266.1	15.9
기정	1-14	11,660.0	8,148.4	3,511.6	7,054.6	4,605.4	1,093.8	13.4

※ 향후 각 구역별 사업시행시 추가 용적률 적용에 대한 공공시설 기부채납 기준제시를 통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시설 확보방안 검토 (사업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11)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12)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3)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 (변경없음)

마.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변경) 결정 조서 (변경)

가) 영등포1-2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나) 영등포1-3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다) 영등포1-4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영등포1-4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58,335.8	증) 86.3	58,422.1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58,335.8	증) 86.3	58,422.1	100.0	－
도시계획시설	소 계	19,830.6	증) 46.3	19,876.9	34.0	－
	역사공원	2,962.8	감) 3.4	2,959.4	5.1	－
	공공공지	1,708.7	증) 4.1	1,712.8	2.9	－
	도 로	15,159.1	증) 45.6	15,204.7	26.0	－
택 지	소 계	38,505.2	증) 40.0	38,545.2	66.0	－
	1-4-1	35,507.2	증) 40.0	35,547.2	60.9	－
	1-4-2	2,998.0	－	2,998.0	5.1	종교시설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 도로 (변경없음)
- 철도 (변경없음)
- 공원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2	공원	역사공원	영등포동7가 155-22 일대	2,962.8 (2,962.8)	감) 3.4	2,959.4 (2,959.4)	서울시고시 제2008-373호 (2008.10.23)	—

※ ()는 구역내 사항임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공공공지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공공공지	영등포동2가 435-4 일대	1,708.7	증) 4.1	1,712.8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12.22)	—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변경없음)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5)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1-4	58,335.8	-	38,505.2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387	-	387	-	
변경	1-4	58,422.1 (증 86.3)	-	38,545.2 (증 40.0)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387	-	387	-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나)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축시설계획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지하) /높이	계획 세대수 (세대)
기정	1-4	58,335.8	1-4-1	35,507.2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근린생활, 업무, 주거	52이하	370이하	35F(3) /120m	90미만
			1-4-2	2,998.0	영등포동7가 148-18일대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수 × 60% 이상 - 주거면적 × 50% 이상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세대)	비 율 (%)	비 고
						합계		1,221	100.0	
						임대	60㎡ 이하	200	16.4	
						분양	60㎡ 이하	249	20.4	
60~85㎡ 이하							681	55.8		
85㎡ 초과	91	7.4								
변경	1-4	58,422.1 (증 86.3)	1-4-1	35,547.2 (증 40.0)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근린생활, 업무, 주거	52이하	370이하	35F(3) /120m	90미만
			1-4-2	2,998.0	영등포동7가 148-18일대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수 × 60% 이상 - 주거면적 × 50% 이상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세대)	비 율 (%)	비 고
						합계		1,221	100.0	
						임대	60㎡ 이하	200	16.4	
						분양	60㎡ 이하	249	20.4	
							60~85㎡ 이하	681	55.8	
						85㎡ 초과	91	7.4		

※ 1. 주용도는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2. 주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 이상, 3가지일 경우 34% 이상으로 도

입 용도 중 가장 많은 비율로 계획하여야함.

3. 층수는 최고층수이며, 높이는 최고높이 기준으로, 다양한 높이계획을 권장함.
 4. 최고 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 층수 조정
 5. 오피스텔 설치시 주거연면적 비율에 포함하여 산정
 6.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의거 주용도가 업무시설일 경우 오피스텔 불허
-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6)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7)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구 분	위 치	면 적(㎡)	
기 정	1-4	38,505.2	1-4-1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35,507.2	-
			1-4-2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2,998.0	종교시설
변 경	1-4	38,545.2 (증 40.0)	1-4-1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35,547.2 (증 40.0)	-
			1-4-2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2,998.0	종교시설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라)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마)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바) 영등포1-13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사) 영등포1-14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44,507.7	증) 86.3	144,594.0	100.0	-
준주거지역	103,699.9	증) 86.3	103,786.2	71.8	
일반상업지역	40,807.8	-	40,807.8	28.2	

나) 용도지역 변경 사유: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변경)

(1) 광장 (변경없음)

(2) 공원 (변경)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1	공원	문화공원	영등포동5가 43-3 일대	5,464.5	-	5,464.5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12.22)	
변경	2	공원	역사공원	영등포동7가 155-22 일대	2,962.8	감) 3.4	2,959.4	서울시고시 제2008-473호 (2008.10.23)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역사공원	공원 면적 변경 (2,962.8㎡ → 2,959.4㎡)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3) 공공공지 (변경)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공공공지	영등포동2가 435-4 일대	1,708.7	증) 4.1	1,712.8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12.22)	-

○ 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공지	공공공지 면적 변경 (1,708.7㎡ → 1,712.8㎡)	영등포1-4구역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변경없음)
- 사. 광고물 관리 계획 (변경없음)
- 아.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자.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차.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카.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 타.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파. 유비쿼터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하.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참조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02-2133-7224) 및 영등포구 도시재생과(☎02-2670-3528)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재정비촉진지구계

PROJECT TITLE 사업명칭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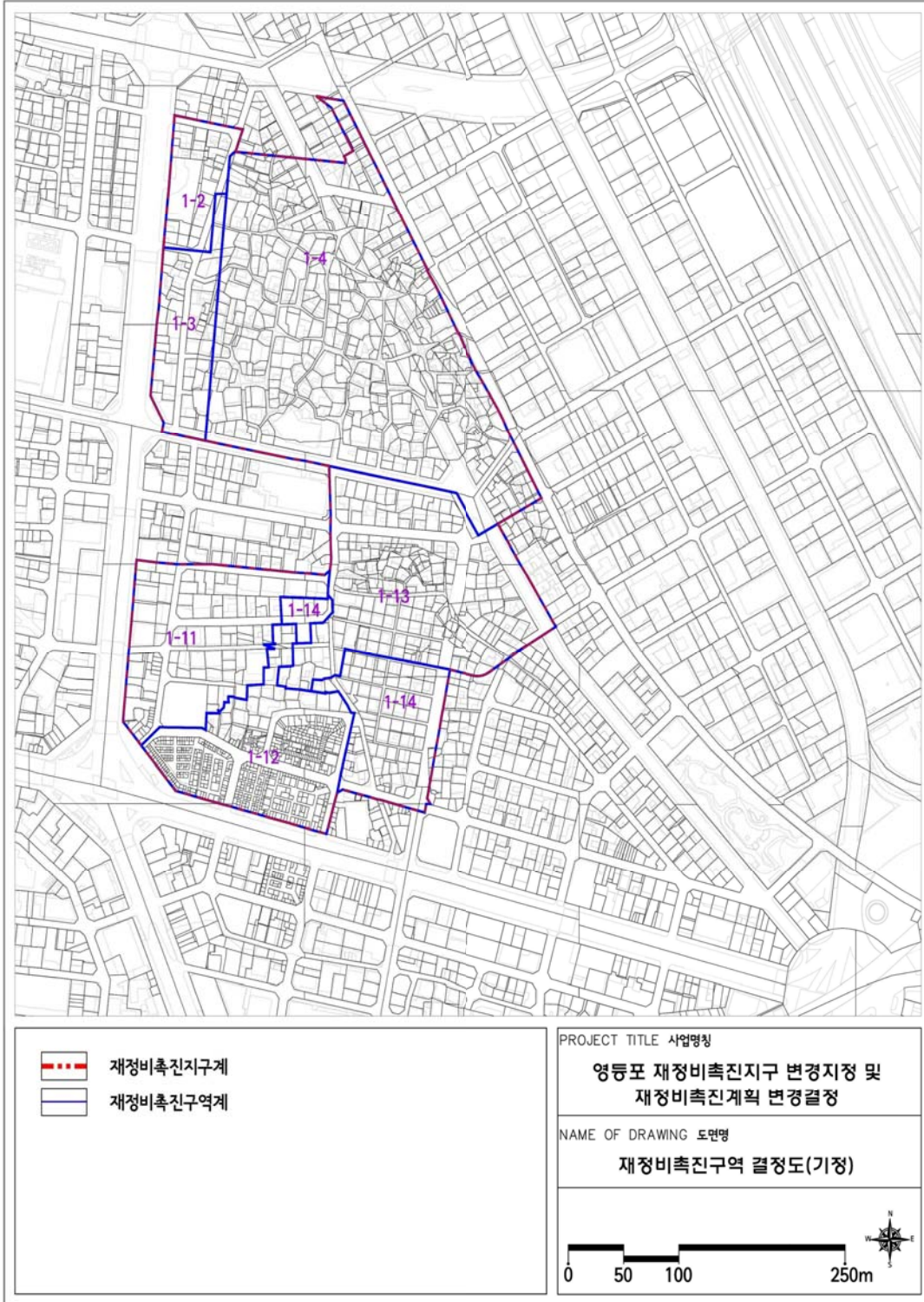
NAME OF DRAWING 도면명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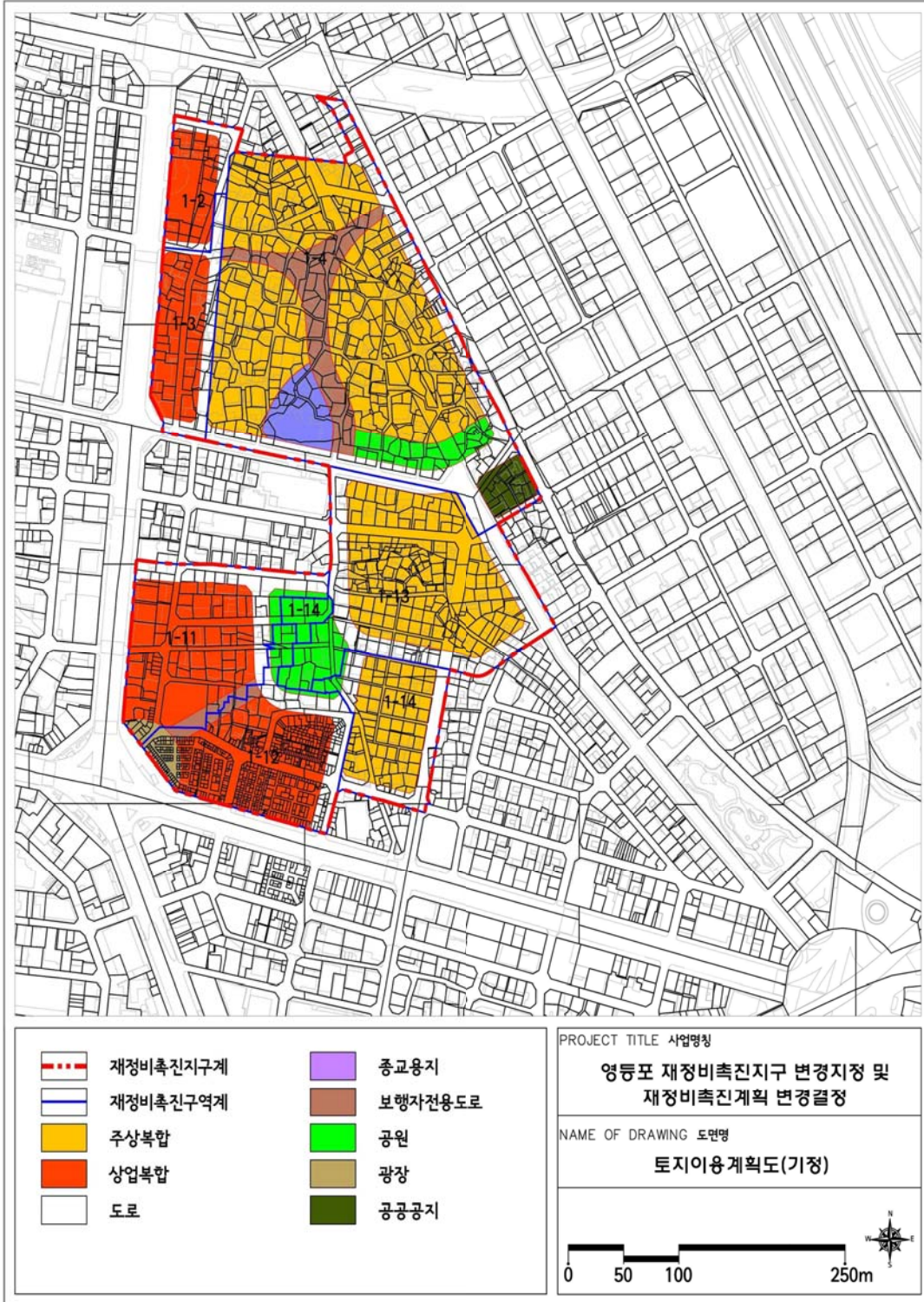
0 50 100 2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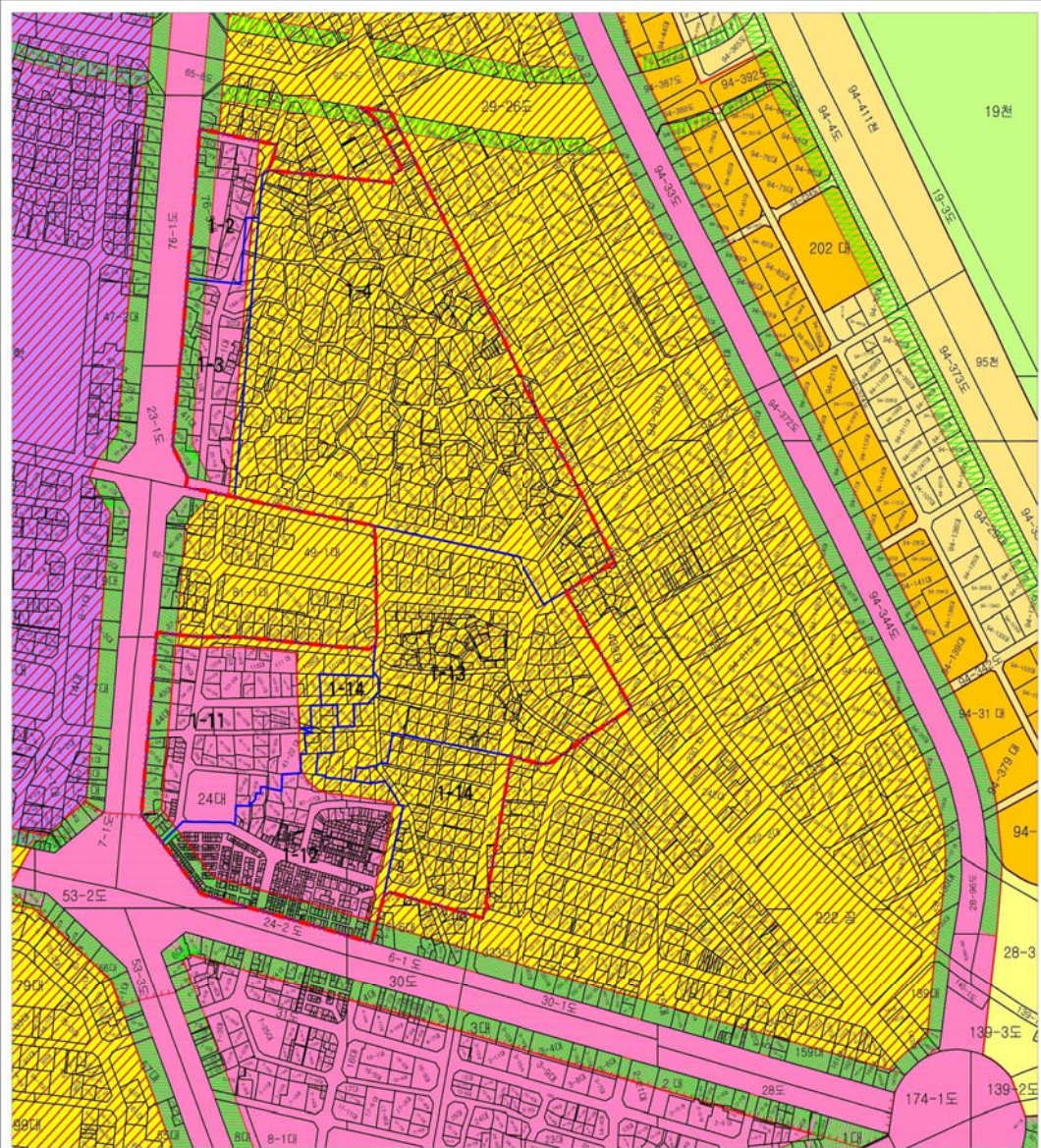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없음)



□ 용도지역 및 지구 변경계획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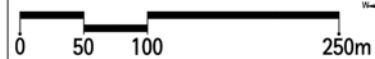
- | | |
|-------------------|---------|
| 재정비촉진지구계 | 일반상업지역 |
| 재정비촉진구역계 | 준공업지역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일반미관지구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심지미관지구 |
| 준주거지역 | 방화지구 |

PROJECT TITLE 사업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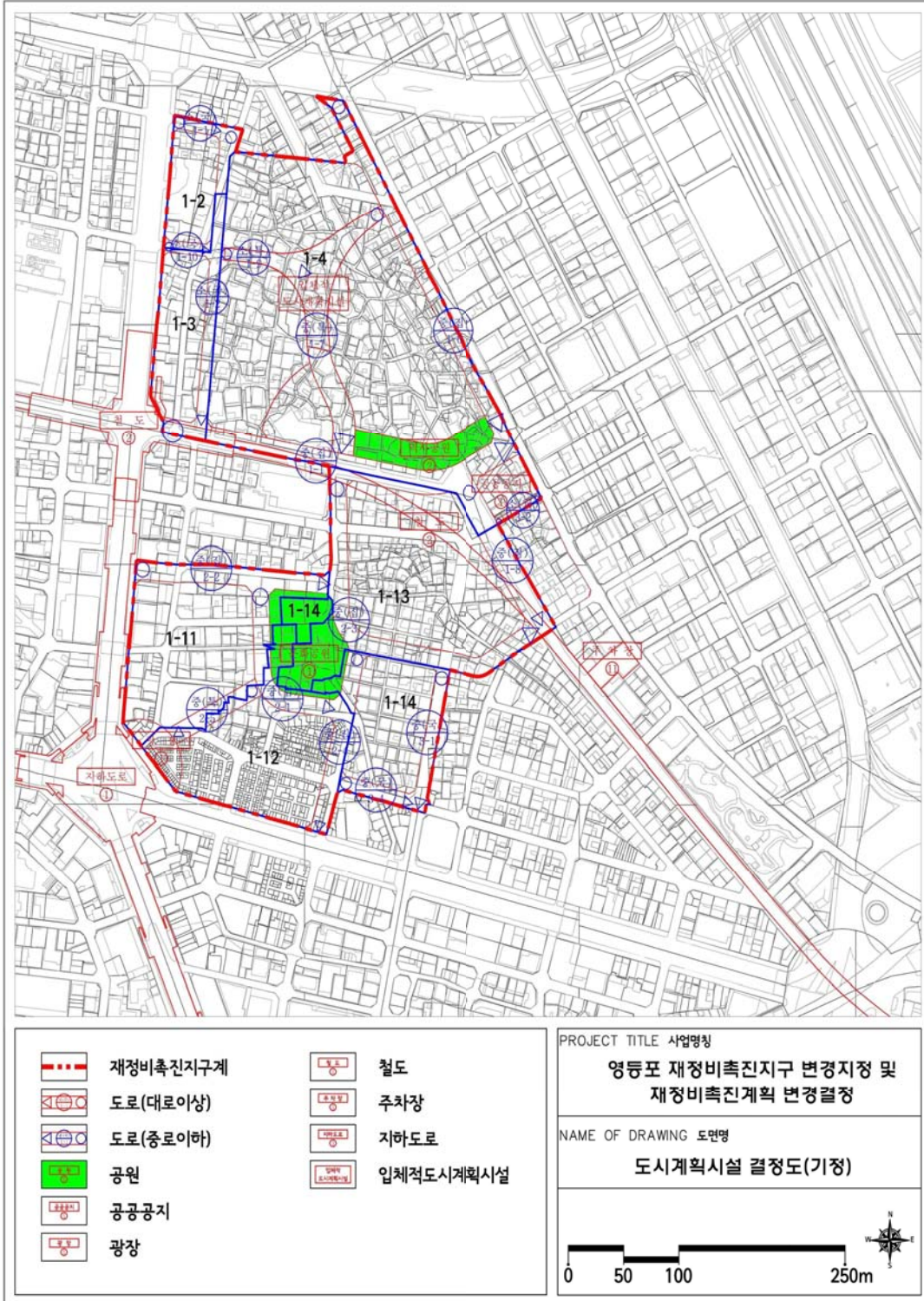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NAME OF DRAWING 도면명

용도지역 및 지구 변경계획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3호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표지 폐기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적 기준점(지적삼각점)표지를 아래와 같이 폐기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기준점 명칭 및 번호	원점	평면직각좌표	표고 (m)	경 · 위 도		설치일 (측량일)	표지 종류	소재지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지적삼각점 서울283	중부	X 449360.59	69.15	경도	37° 32′ 37.310″	1984.10.31	표철	마포구 공덕동 370-4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폐기
		Y 195523.26		위도	126° 56′ 57.613″					
지적삼각점 서울284	중부	X 449401.81	69.13	경도	37° 32′ 38.646″	1984.10.31	표철	마포구 공덕동 370-4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폐기
		Y 195456.97		위도	126° 56′ 54.912″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2133-4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4호

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로구 오류2동 147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 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주민참여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위함.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로구 오류2동 147번지 일대	-	증)182,007	182,007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82,007	－	182,007	100.0	－
주택용지			133,917	감)304	133,613	73.5	－
공동이용시설			－	증)304	304	0.1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8,090	－	48,090	26.4	－
	도로	도시계획도로	20,082	－	20,082	11.0	－
		현황도로	12,779	－	12,779	7.0	－
	학교용지		15,229	－	15,229	8.4	－

2)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82,007	-	182,007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26,227	-	26,227	14.4	-
제2종일반주거지역	10,875	-	10,875	6.0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06,426	-	106,426	58.5	-
제3종일반주거지역	38,479	-	38,479	21.1	-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경인로	일반미관지구	오류동81-53~온수 동45-32	38,304.0	1,596	양측12	서고제56호 (2005.03.03.)	-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 태	주요경 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75	15	국지 도로	610	오류동 174-2 (중로1-112)	오류동 135-6 (광로1-32)	일반 도로	-	서고410호 (1978.8.14.)	-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336	중로 2-175	중로 1-112	일반 도로	-	서고506호 (1980.10.30.)	-
기정	소로	2	189	8	국지 도로	546	오류동 136 앞	오류동 138 서측	일반 도로	-	서고35호 (1969.01.18.)	-
기정	소로	2	190	8	국지 도로	164	오류동 58-5	오류동 136-2 서측	일반 도로	-	서고35호 (1969.01.18.)	-
기정	소로	2	191	8	국지 도로	136	오류동 135	오류동 135-1	일반 도로	-	서고35호 (1969.01.18)	-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110	오류동 166-10	오류동 156-15	일반 도로	-	서고341호 (1978.07.08)	-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110	오류동 146-1	오류동 147-1	일반 도로	-	서고160호 (1989.03.30.)	-
기정	소로	3	215	6	국지 도로	80	오류동 137-16	오류동 137-4	일반 도로	-	서고35호 (1969.01.18.)	-
기정	소로	3	216	6	국지 도로	438	오류동 155-1 남측	오류동 147-16	일반 도로	-	서고35호 (1969.01.18.)	-
기정	소로	3	217	6	국지 도로	144	오류동 156-4 서측	오류동 156-15 앞	일반 도로	-	서고35호 (1969.01.18.)	-
기정	소로	4	135	4	국지 도로	220	오류동 145-29 앞	오류동 145-16 앞	일반 도로	-	서고35호 (1969.01.18.)	-

나)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학교	초등학교	구로구 오류동 190-2일대	15,229.0	-	15,229.0	서고 제358호 (1980.10.30)	현명칭 오류남 초등학교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문을 기준으로 작성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신규)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동이용시설	오류동 136-18,19	-	304	304	-

※ 설치계획(규모, 시행방법 등)은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결정 예정

5)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대상 건축물	정비 개량계획	지원계획	비고
544동	별도 지정 없음 (신축,개량 등)	주택개량·신축비용 융자지원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융자지원제도 적용)	-

※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제도 (서울시 관련부서의 지원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나) 건축물의 주용도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대지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 업	182,007	-	-	구로구 오류동 147번지 일대	관계 법령에 따름	관계 법령에 따름	관계 법령에 따름	관계 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관계법령에 따름							
심의완화 사항			관계법령에 따름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계법령에 따름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버들마을 나들길 개선(장미담장, 노후·담장개선, 담장벽화)을 통해 버들마을 가로경관 개선 · 버들마을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안으로 마을의 도시경관을 지속적, 장기적으로 개선 유도	-
환경보전	· 버들마을 생활가로 개선으로 마을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마을의 가로환경 보전 · 계단, 경사로 등에 친환경 염화칼슘을 보관 및 사용하여 환경보전 기여 · 건축 인허가시 제안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옥상녹화, 성절토금지 등 환경보전 유도	-
재난방지	· 도로 정비시 하수관거 준설 - 배수시설 통합정비 · 도로안전을 위해 도로재포장 및 미끄럼 방지 포장 - 그루빙 설치, 스템프 공법 ·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공중선 정비	-

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구로구청장	해당사항 없음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및 신축하는 방법	계획 수립 이후	토지등소유자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교육환경 현황	- 대상지 내 초등학교 1개소 및 유치원 2개소 입지 - 사업대상지의 대부분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동법 제9조에 의거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

9)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환경	1.생태면적률	일반주택 20% 이상 공동주택 30% 이상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대부분이며 공원, 녹지가 부족한 실정임	-옥상녹화 및 텃밭 등 조성으로 녹지율 증가 유도	-
	2.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1	○	-시가화지역이며, 특별한 식물상은 없음	-건축물 신축시 관련규정에 의거 조경녹지 최대확보	-
	3.지형변동	지형변동의 최소화	○	-지형변동 영향 미미함	-지형에 순응한 계획권장	-
	4.비오톱	3등급	○	-비오톱유형평가4~5등급 -특별한 식생 분포 없음	-비오톱 고립화 방지를 위해 대지내 조경공간 등을 분산배치 유도	-
생활환경	5.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사업 대상자는 대부분 4층이하의 단독 및 다세대 밀집주거지역	-건축물 신축시 관련규정 준수	-
	6.바람 및 기후	바람 및 미기후변화 최소화	○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4층이하의 단독 및 다세대 밀집 주거지역으로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 미비	-개별 대지 내 장치물 최소화 유도	-
	7.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에너지절약에 대한 주민 관심 높음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연계 및 홍보 유도	-
	8.경관	주요 경관자원의 보전	○	-저층주거지로 낮은 스카이라인 형성	-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시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물 계획	-
		조망권 확보	○	-고층건물 미입지	-주변지역과의 연속적 경관에 위배되지 않는 경관 계획 권장	-
		개방적 가로경관 형성	○	-현재 내부도로가 협소하여 가로녹화는 부족한 실정	-조경공간의 가로변 조성 유도 등을 통해 가로녹시율 향상	-
	9.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사업대상지내 주민을 위한 휴식 및 여가공간 부족	-쌈지공원 등을 통한 휴식 공간 조성	-
	10.보행 친화 공간	주요가로 환경개선 (보차혼용도로)	○	-급경사 및 협소한 폭으로 현황 도로내 불법적치물로 인한 통행 불편가중	-교통정온화,포장·가로시설물 정비 등을 통한 보행환경개선 -CCTV설치, 가로등 정비 등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
	11.폐기물	폐기물 발생 최소화	○	-공사시 폐기물 발생 예상	-공사시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
	12.소음·진동	소음환경기준 이하	○	-향후 공사 중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발생 예상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	-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구분	계획내용	비고
자연적 감시	-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후 보안통 교체계획 수립 - 담장은 주변감시와 골목길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투시형 또는 낮은 높이의 담장 설치를 권장함	-
영역성 강화	- 우범지역 및 저활용 공지 등에 지여구민을 위한 썸지공간을 조성하여 영역성 강화 및 활용성 증대 - 통일성 있는 가로 시설물 디자인 계획을 통하여 마을의 영역성 강화	-
활동의 활성화	- 우범지대 및 통행이 적은 골목길에 화단을 조성하여 활성화 유도 -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
유지관리	- 정비되는 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는 주민협의체(주민공동체 운영회)에서 주도적으로 관리	-
방범용 CCTV 설치	- 마을 내 주요 교차로 및 우범지역 등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의 효율성(가시범위, 주변 인지성) 등을 고려하여 CCTV 확충	-
커뮤니티 시설 조성	- 지역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방범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	-

11)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부문	정비계획	개요	사업시행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	주민역량 강화	- 사례지답사 및 교육 실시 - 지역에서 활동 중인 공동체전문가를 지역재생 활동가로 지정·파견	지원조직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공동체 활성화	- 지속적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통하여 마을공동체 형성	주민협의체 (주민공동체운영회) 및 지원조직
	공동체 프로그램	- 버들마을 비전/목표 실행을 위한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발굴	주민협의체 및 지원조직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 조직구성 및 운영규약 작성 (관련법령에 의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예정))	주민공동체운영회

2. 관련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도면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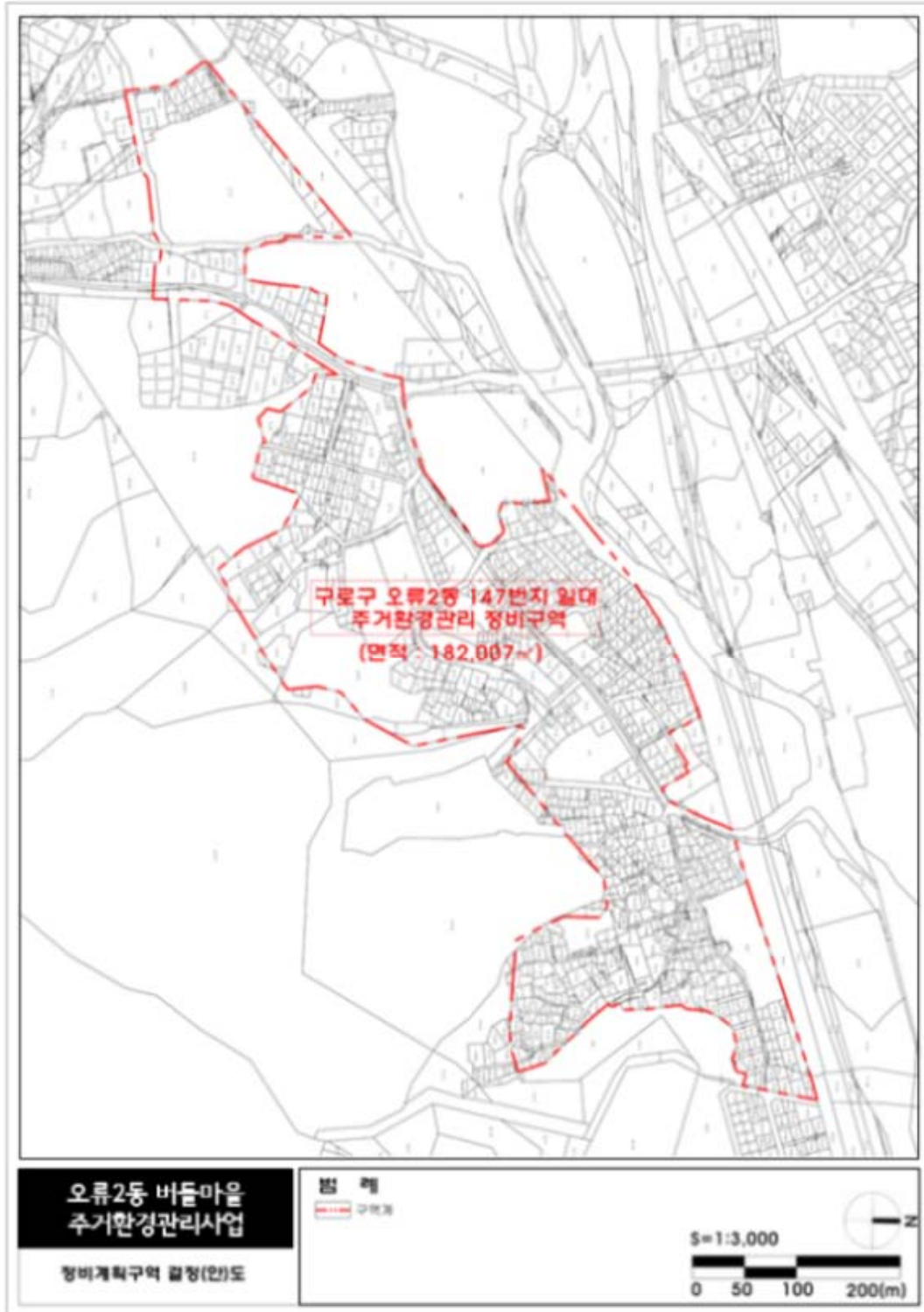
3. 고시 관련된 자세한 세부내용은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과) 및 구로구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1)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자 김철기 / ☎ 02-2133-7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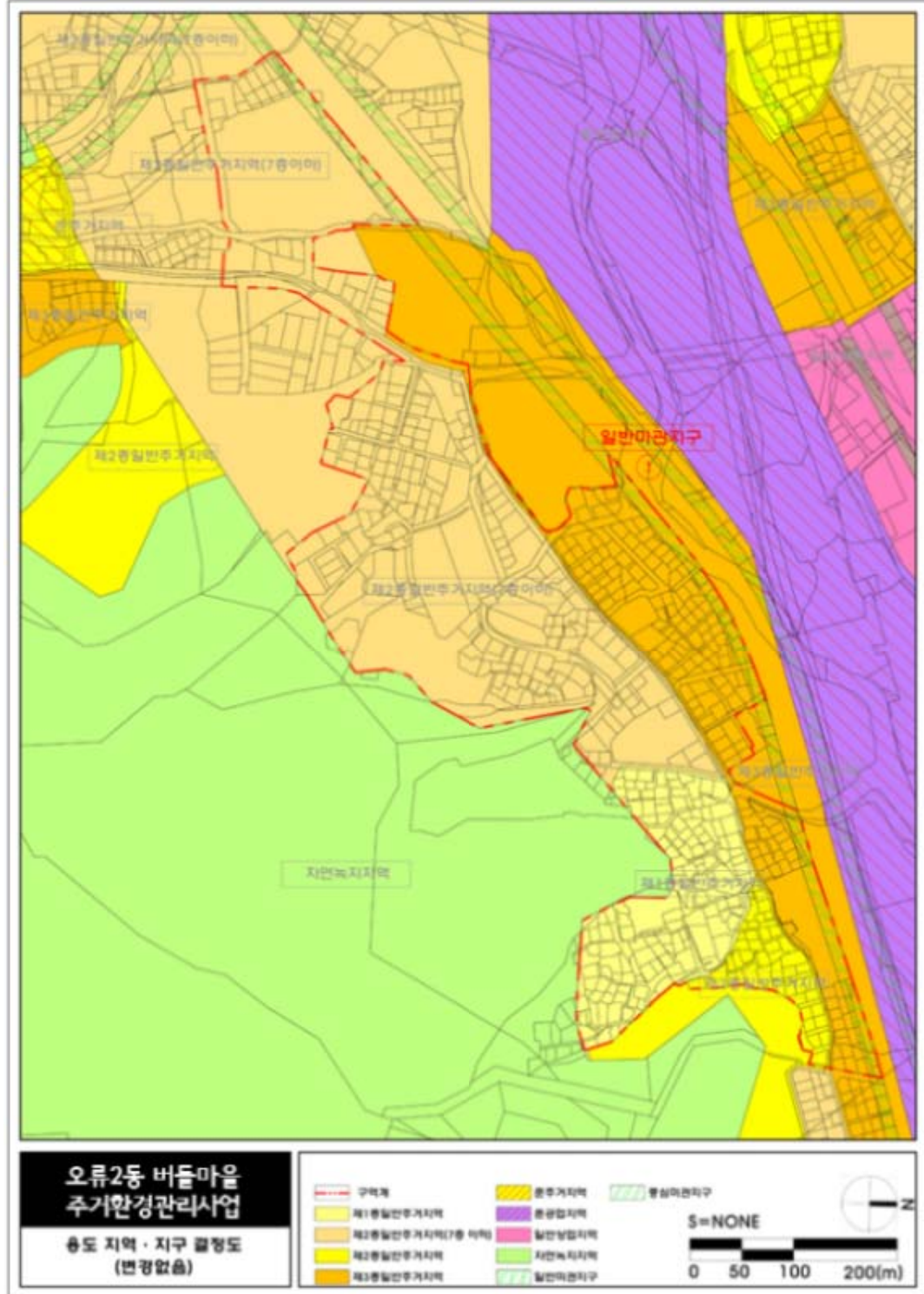
2) 구로구 도시재생과 (담당자 강남길 / 02-860-2517)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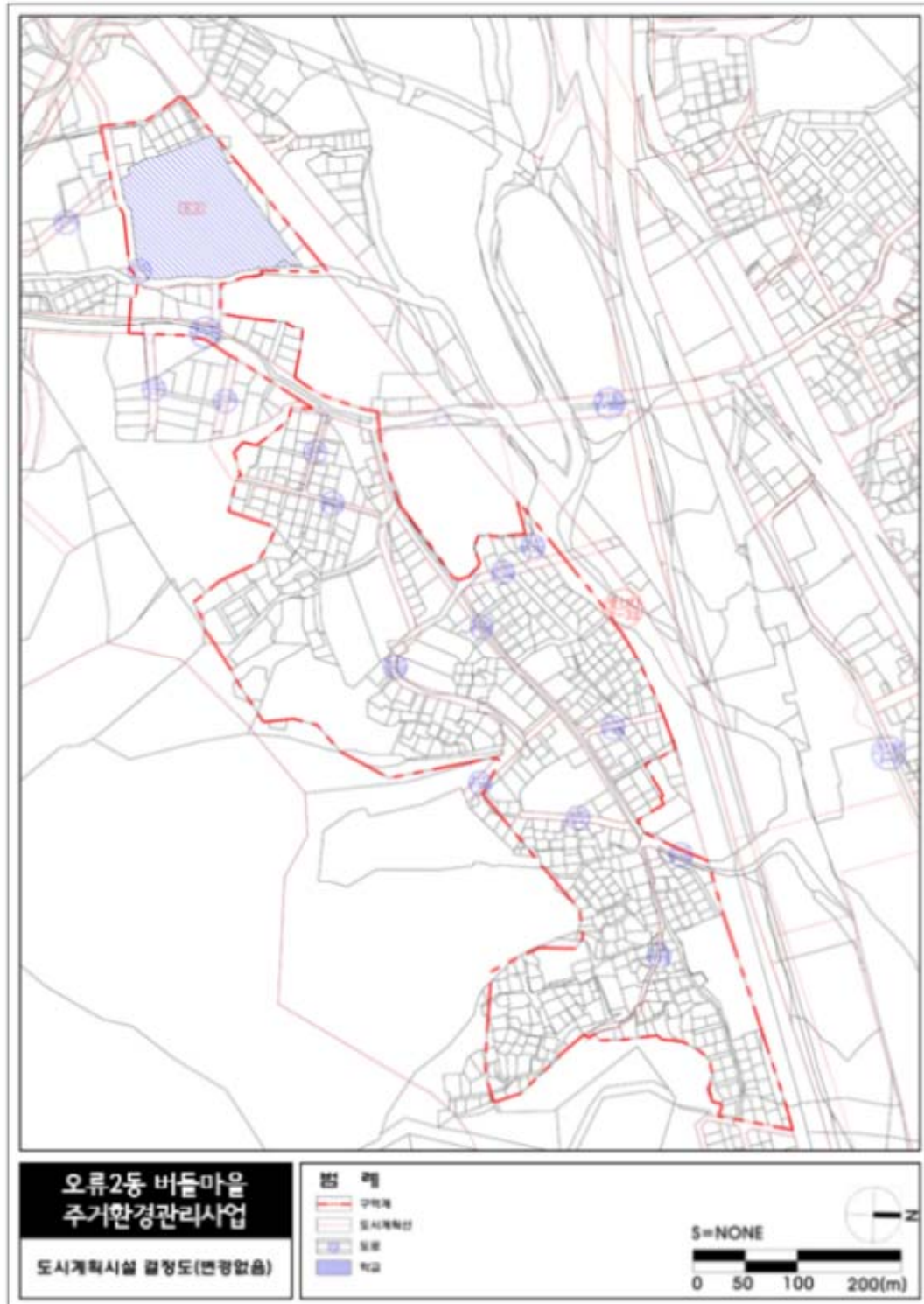
■ 정비계획구역 결정(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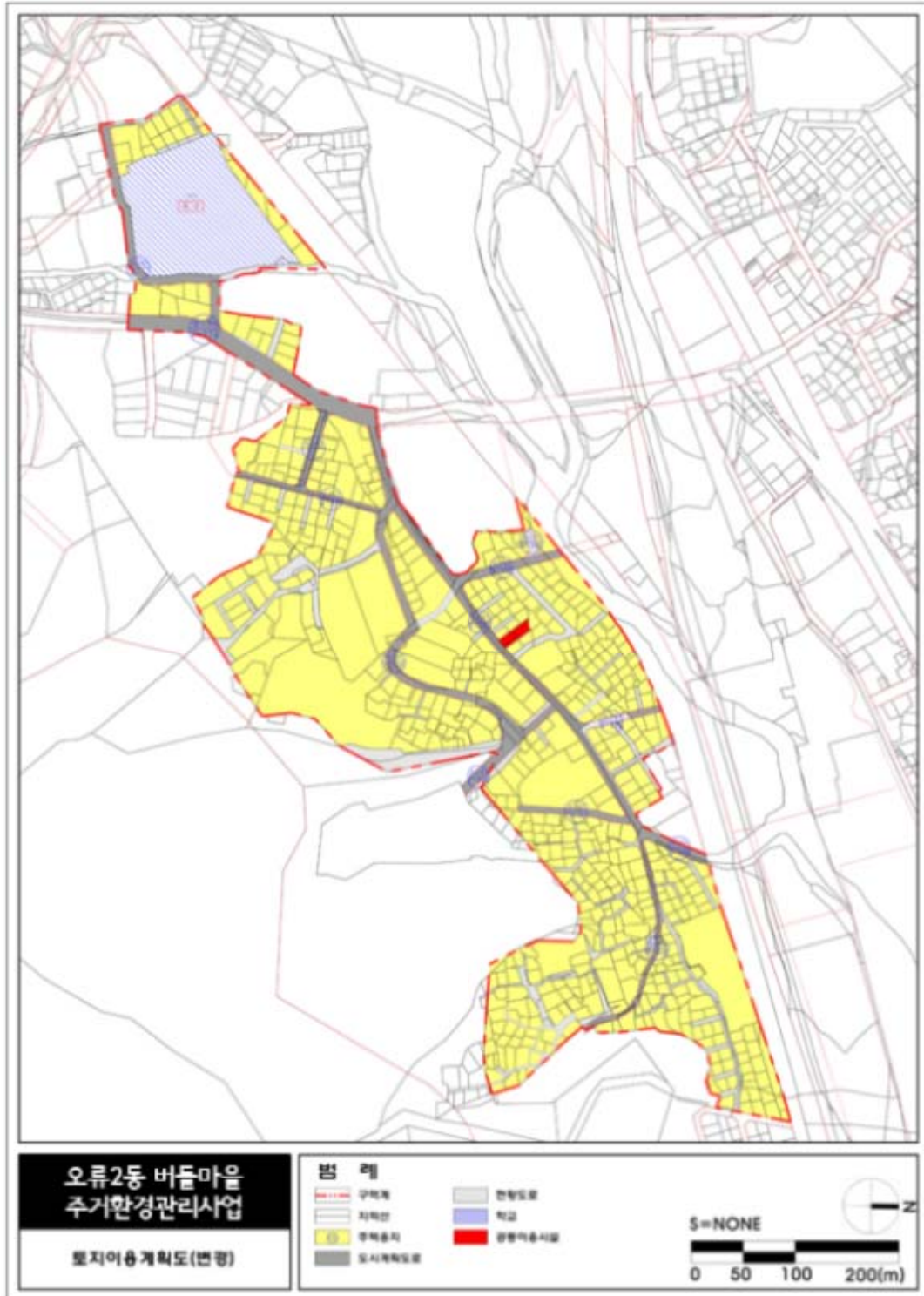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6.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6호(201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1호(2011.1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3호(2012.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1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1호(2013.5.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0호(2014.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5호(2015.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9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6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3(2017.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2(2017.9.1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자양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자양5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I.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광진구 구의동246번지, 자양동680번지 일대	385,356.7	-	385,356.7	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 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업무·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II.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년도 (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15년
- 목표년도 : 2025년

III.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IV.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85,356.7	—	385,356.7	100.0	
개발용지	소 계	244,173.5	증) 40.0	244,213.5	63.4	—
	첨단업무복합	73,247.0 [5,684.0]	—	73,247.0 [5,684.0]	19.0	광진구 통합청사 (복합화)
	첨단업무지원	38,551.0	증) 40.0	38,591.0	10.0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상업업무복합	94,995.0	—	94,995.0	24.7	
	주 거 복 합	37,380.5	—	37,380.5	9.7	
공공용지	소 계	141,183.2	감) 40.0	141,143.2	36.6	
	공공문화복합	14,411.0	—	14,411.0	3.7	現 광진구청
	공 원	14,177.7	감) 704.0	13,473.7	3.5	
	광 장	1,897.1		1,897.1	0.5	
	공 공 공 지	543.4	증) 750.0	1,293.4	0.3	
	주 차 장	1,037.0		1,037.0 [2,820]	0.3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입체공공시설	1,500.0	증) 400.0	1,900.0	0.5	복합문화시설
	도 로	107,617.0	감) 486.0	107,131.0	27.8	

※ []는 광진구 통합청사 복합화 대지지분 면적 및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공원부지 지하에 중복결정되는 주차장 면적임

2)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

구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294	증) 406	3,700	8,696	증) 1,071	9,767	—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1,818	증) 840	2,658	4,799	증) 2,217	7,016	세대당 2.64인
	60㎡ 이하	590	증) 563	1,153	1,558	증) 1,486	3,044	
	85㎡ 이하	997	증) 221	1,218	2,632	증) 583	3,215	
	85㎡ 초과	231	증) 56	287	609	증) 148	757	
존치 정비구역	소계	434	감) 434	—	1,146	감) 1,146	—	
	60㎡ 이하	75	감) 75	—	198	감) 198	—	
	85㎡ 이하	106	감) 106	—	280	감) 280	—	
	85㎡ 초과	253	감) 253	—	668	감) 668	—	
존치관리구역	—	1,042	—	1,042	2,751	—	2,751	기존세대 수용

3) 기반시설 설치계획(문화 및 복지시설 등) (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1,183.2	감) 40.0	141,143.2	36.6	
교통시설	소 계	108,654.0	감) 486.0	108,168.0 (2,820.0)	28.1	
	도 로	107,617.0	감) 486.0	107,131.0	27.8	
	주차장	1,037.0	-	1,037.0	0.3	
	(공원이하주차장)		증) (2,820.0)	(2,820.0)	(0.7)	자양5축진구역
공간시설	소 계	16,618.2	증) 46	16,664.2	4.3	
	공 원	14,177.7	감) 704.0	13,473.7	3.5	
	광 장	1,897.1	-	1,897.1	0.5	
	공공공지	543.4	증) 750.0	1,293.4	0.3	유치원 예비용지
공공·문화 체육시설	소 계	15,911.0 (5,684)	증) 400	16,311.0 (5,684)	4.2	
	입체공공시설 (복합문화시설)	1,500.0	증) 400	1,900.0	0.5	
	광진구청	14,411.0	-	14,411.0	3.7	現 광진구청
	입체적공공시설 (공공청사)	(5,684)	-	(5,684)	(1.4)	광진구 통합청사

※ ()는 공원부지 지하에 중복결정되는 주차장 면적 및 공공청사(광진구 통합청사)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 면적임

※ 공공공지(유치원 예비용지)는 사업시행 인가전 교육청과 협의하여 필요시 위치 변경 등을 검토하도록 할 것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변경)

구분	명칭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	1	10	16,618.2	증) 46.0	16,664.2	자양축진5구역 (공원일부 ⇒ 문화시설 및 공공공지)
공원	소계	5	－	5	14,177.7	감) 704.0	13,473.7	
	소공원	2	－	2	1,118.0	－	1,118.0	
	주제공원	3	－	3	13,059.7	감) 704.0	12,355.7	
광장		2	－	2	1,897.1	－	1,897.1	
공공공지		2	1	3	543.4	증) 750.0	1,293.4	

5) 교통계획 : 「구의·자양재정비축진지구재정비축진계획공람도서(Ⅰ.교통계획)에 명시」

6) 경관계획 : 「구의·자양재정비축진지구재정비축진계획공람도서(Ⅰ.경관계획)에 명시」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변경)

지구명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정비수법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재정비촉진구의 자양진지구	기정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63번지 일원	78,147	-	78,147	전면개발	
	기정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778-6번지 일원	10,816.4	-	10,816.4	전면개발	
	기정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구의동 244-5번지 일원	9,871.6	-	9,871.6	전면개발	
	신설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	증) 55,151	55,151	전면개발	

○ 구역별 계획 (변경)

구역명	위 치	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용도	사업방식
		기정	변경	변경후		기준	최대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63번지 일원	78,147.0	-	78,147.0	60 이하	173	492.9	업무, 주거	도시환경 정비사업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778-6번지 일원	10,816.4	-	10,816.4	60 이하	321	500	주거	도시환경 정비사업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	증)55,151	증)55,151	60 이하	164	399	업무, 주거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구의동 244-5번지 일원	9,871.6	-	9,871.6	60 이하	250	400	주거	도시환경 정비사업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			구성비 (%)	사업방식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385,356.7	—	385,356.7	100.0		
재정비 촉진 구역	소 계	—	114,101.0	증) 55,151	169,252.0	43.9	—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63번지 일원	78,147.0	—	78,147.0	20.3	도시환경정비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777번지 일원	15,266.0	—	15,266.0	4.0	도시계획시설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778-6번지 일원	10,816.4	—	10,816.4	2.8	도시환경정비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	증) 55,151	55,151.0	14.3	도시환경정비 신규지정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구의동 244-5번지 일원	9,871.6	—	9,871.6	2.5	도시환경정비
존치 정비 구역	소 계	—	55,151.0	감) 55,151	—	—	—
	자양1 존치정비구역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55,151.0	감) 55,151	—	—	도시환경정비 촉진구역 결정
존치 관리 구역	소 계	—	151,091.0	—	151,091.0	39.2	—
	자양1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769-10번지 일대	1,133.0	—	1,133.0	0.3	—
	자양2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779-11번지 일대	1,805.0	—	1,805.0	0.5	—
	자양3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779-5번지 일대	9,506.0	—	9,506.0	2.5	—
	자양4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9-35번지 일대	5,823.0	—	5,823.0	1.5	—
	자양5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9-2번지 일대	1,098.0	—	1,098.0	0.3	—
	자양6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26-4번지 일대	2,024.0	—	2,024.0	0.5	—
	자양7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27-3번지 일대	6,100.0	—	6,100.0	1.6	—
	자양8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80-68번지 일대	3,491.0	—	3,491.0	0.9	—
	자양9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80-65번지 일대	47,824.7	—	47,824.7	12.3	—
	자양10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9-28번지 일대	2,649.0	—	2,649.0	0.7	—
	자양11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6-11번지 일대	7,821.9	—	7,821.9	2.0	—
	자양12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80-88번지 일대	7,331.4	—	7,331.4	1.9	—
	구의1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52-14번지 일대	7,718.0	—	7,718.0	2.0	—
	구의2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52-16번지 일대	7,593.0	—	7,593.0	2.0	—
	구의3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6-14번지 일대	10,611.0	—	10,611.0	2.8	—
	구의4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6-36번지 일대	8,379.0	—	8,379.0	2.2	—
	구의5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3-4번지 일대	17,706.0	—	17,706.0	4.6	—
	구의6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4-15번지 일대	2,068.0	—	2,068.0	0.5	—
	구의7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4-6번지 일대	409.0	—	409.0	0.1	—
	기타 존치구역(도로)	—	65,013.7	—	65,013.7	16.9	—

※ 변경사유 : 자양1 존치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에 따른 변경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

-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없음
-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없음
-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없음
-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5,151	-	55,151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	39,448	감) 39,448	-	-
	제2종일반주거	15,703	감) 15,703	-	-
	준주거	-	증) 55,151	55,151	100.0

-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

- 기정

구분	구역명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비 고
				기준	최대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 (m)	
재정비 촉진구역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업무,주거	60이하	173	492.9	- / -	150	-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공공업무	60이하	400이하		- / -	100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주거	60이하	321	500 (444)	- / -	100	-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주거	60이하	250	400	- / -	100	-

※()는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안) 미 적용시 최대용적률

- 변경

구분	구역명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비 고
				기준	최대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 (m)	
재정비 촉진구역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업무,주거	60이하	173	492.9	- / -	150	변경없음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공공업무	60이하	400이하		- / -	100	변경없음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주거	60이하	321	500 (444)	- / -	100	변경없음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업무,주거	60이하	164	399	- / -	100	신규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주거	60이하	250	400	- / -	100	변경없음

※()는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안) 미 적용시 최대용적률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 (변경)

○ 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계획 (기정)

구역명	구역면적 (㎡)	획지면적 (㎡)	계획기반시설(㎡)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	순부담 률 (%)
			합 계	도 로	공 원 및 광 장	공공 공지	공공 청사	입체 공공시설	계획 기반 시설내	기존 기반 시설내		
합 계	169,252	113,373.8	61,562.2	30,387.7	9,036.1	543.4	20,095 [5,646]	1,500 [4,028]	972.6 (18,550.6)	14,482.4 (57,291.4)	46,107.2 (-14,279.8)	27.2 (-8.4)
촉진 구역	소 계	114,101	74,822.8	44,962.2	18,811.7	5,512.1	543.4	20,095 [5,646]	-	972.6 (5,084.6)	29,507.2 (13,001.2)	25.8 (11.3)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78,147	58,614	25,217 {26,584}	15,401	4,132	-	5,684 [5,646] {7,051}	-	- (4,112)	25,217 (8,711) {26,584}	32.2 (11.1) {34.0}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15,266	-	15,266	855	-	-	14,411	-	948	-	-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10,816.4	8,315.4	2,501	1,566	862	73	-	-	24.6	164.4	21.4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9,871.6	7,893.4	1,978.2	989.7	518.1	470.4	-	-	-	1,978.2	20.04
	존치 정비 구역	소 계	55,151	38,551	16,600	11,576	3,524	-	-	1,500 [4,028]	16,600 (-27,281)	30.1 (-49.5)
	자양1 존치정비구역	55,151	38,551	16,600	11,576	3,524	-	-	-	1,500 [4,028]	16,600 (-27,281)	30.1 (-49.5)

주1) []:입체공공시설 연면적

주2) ():공공청사(동부지원, 우편집중국, 지식정보센터)를 기존 국공유지로 간주하여 산정한 순부담률

주3) { }:자양1촉진구역 입체공공시설 건립비용 중 기부채납에 대한 부지환산 면적(1,367㎡)을 포함한 면적임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을 인센티브 운영 기준, 서울특별시, 2014.8)

○ 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계획 (변경)

구역명	구역면적 (㎡)	획지면적 (㎡)	계획기반시설(㎡)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	순부담 률 (%)
			합 계	도 로	공 원 및 광 장	공공 공지	공공 청사	입체 공공시설	계획 기반 시설내	기존 기반 시설내		
합 계	169,252	113,413.8	61,522.2	29,901.7	8,332.1	1,293.4	20,095 [5,646]	1,900 [5,900]	972.6 (18,550.6)	14,482.4 (57,291.4)	46,067.2 (-14,319.8)	27.2 (-8.5)
촉진 구역	소 계	169,252	113,413.8	61,522.2	29,901.7	8,332.1	1,293.4	20,095 [5,646]	1,900 [5,900]	972.6 (18,550.6)	46,067.2 (-14,319.8)	27.2 (-8.5)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78,147	58,614	25,217 {26,584}	15,401	4,132	-	5,684 [5,646] {7,051}	-	- (4,112)	25,217 (8,711) {26,584}	32.2 (11.1) {34.0}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15,266	-	15,266	855	-	-	14,411	-	948	-	-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10,816.4	8,315.4	2,501	1,566	862	73	-	-	24.6	164.4	21.4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55,151	38,591	16,560 {20,406}	11,090	2,820 [5,640] {4,327}	750	-	1,900 [5,900] {4,239}	- (13,466)	16,560 (-27,321) {20,406}	30.0 (-49.5) {37.0}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9,871.6	7,893.4	1,978.2	989.7	518.1	470.4	-	-	-	1,978.2	20.04

주1) []:입체공공시설, 공공청사, 지하주차장의 건축 연면적

주2) ():공공청사(동부지원, 우편집중국, 지식정보센터)를 기존 국공유지로 간주하여 산정한 순부담률

주3) { }:자양1촉진구역 입체공공시설(1,367㎡), 자양5촉진구역 입체공공시설(2,339㎡) 및 지하주차장(1,507㎡) 건립비용 중
기부채납에 대한 부지환산 면적을 포함한 면적임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을 인센티브 운영 기준, 서울특별시, 2014.8)

- 구역별 기반시설 비용분담 계획 : 재정비촉진구역내 기반시설은 해당 구역별 사업시행자가 설치

※ 계획기반시설 면적중 개발용지내 입체복합화 시설은 대지지분면적임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

- 기 정

구분		계획 세대수	일반주택 (세대)	임대주택(세대)				장기 전세주택 (세대)
				소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용면적 85㎡초과	
합계		2,252	1,256	696	407	275	14	300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1,818	1,017	501	329	172	-	300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1,357	625	432	289	143	-	300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	-	-	-	-	-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264	215	49	40	9	-	-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197	177	20	-	20	-	-
존치정비 구역	소계	434	239	195	75	106	14	-
	자양1존치정비구역	434	239	195	75	106	14	-

- 변 경

구분		계획 세대수	일반주택 (세대)	임대주택(세대)				장기 전세주택 (세대)
				소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용면적 85㎡초과	
합계		2,658	1,555	803	562	241	-	300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2,658	1,555	803	562	241	-	300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1,357	625	432	289	143	-	300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	-	-	-	-	-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264	215	49	40	9	-	-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840	538	302	233	69	-	-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197	177	20	-	20	-	-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

○ 기정

구 분	사업기간			해당구역	비 고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2009년	2011년	2017년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010년	2013년	2017년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2단계	2018년	2019년	2024년	자양1,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 변경

구 분	사업기간			해당구역	비 고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2009년	2011년	2017년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010년	2013년	2017년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2단계	2018년	2019년	2024년	자양1,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3단계	2019년	2020년	2025년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단계별 추진계획은 각 단계의 총량의 범위 및 토지소유자들의 사업추진의지에 따라 조정이 가능

14) 광고물 관리계획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I. 17 광고물관리계획)에 명시(변경없음)

1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I. 18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에 명시(변경없음)

16) 방재계획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I. 19 방재계획)에 명시(변경없음)

17) 정보화계획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I. 20 정보화계획)에 명시(변경없음)

18) 에너지 순환계획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I. 21 에너지순환계획)에 명시(변경없음)

19)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나)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다)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라)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신설)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	증) 55,151	55,151	-

(2)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5,151	-	55,151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16,600	감) 40 (증 2,780)	16,560 (19,380)	30.0 (35.1)	
	도 로	11,576	감) 486	11,090	20.1	
	문화공원	3,524	감) 704	2,820	5.1	문화공원 지하에 주차장 중복결정(2,820㎡)
	주차장	-	- (증 2,820)	- (2,820)	- (5.1)	
	입체공공시설	1,500	증) 400	1,900	3.4	
	공공공지	-	증) 750	750	1.4	
택지 (획지)	소계	38,551	증) 40	38,591	70.0	
	획 지	38,551	증) 40	38,591	70.0	

※ ()는 공원부지 지하에 중복결정되는 주차장 포함시 면적임

○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 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1	16	35	주간선도로	5,910 (377)	자양동219-18	자양동680-70	(1972.9.1)	부분확폭 및 시설결정 연장
변경	대로	1	16	35~38	주간선도로	5,910 (664)	자양동219-18	자양동680-72		
기정	중로	1	450	25	보조간선도로	575 (435)	자양동680-72	구의동592-39	-	선형변경
변경	중로	1	450	25	보조간선도로	575 (433)	자양동680-72	구의동592-39		
기정	중로	2	479	14~18	집산도로	434	자양동 716	구의동 591-29	(2009.6.4)	폭원축소
변경	중로	2	479	14	집산도로	434	자양동 716	구의동 591-29		
기정	중로	2	480	18	집산도로	408	자양동683-6	자양동 781-4	(2009.6.4)	

※()는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 공 원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④	-	문화 공원	자양동 680-81 일대	3,524	감)704	2,8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5호 (2009.6.4)	중복결정 • 지상 : 문화공원 • 지하 : 주차장 - 지하1층 ~ 지하2층

■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⑦	공공공지	자양동 680-81 일대	-	증)750	750	-

■ 주차장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②	주차장	노외 주차장	자양동 680-81 일대	-	증)2,820	2,820	-	중복결정 • 지상 : 문화공원 • 지하 : 주차장 - 지하1층 ~ 지하2층

■ 공간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입체공공시설 (복합문화시설)	자양동 680-81 일대	1,457	증) 443	1,900	

■ 공공청사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②	공공청사	-	자양동 680-81 일대	15,557	감) 15,557	-	서고 제1985-847호 (1985.12.13)	우정사업 정보센터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자양5 재정비 촉진구역	55,151	-	38,591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57	-	-	57	-	-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최대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자양5 재정비 촉진구역	55,151	-	38,591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153,843 이하	주거	60 이하	399 이하	100 이하
건축물 용도별 지상연면적			주거	상업	업무			직장보육시설		
					합계	일반업무	오피스텔			
			50.0%	8.1%	41.4%	25.0%	16.4%	0.5%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일반주택: 538세대 - 전용면적 85㎡ 초과 : 56세대 - 전용면적 60㎡ ~ 85㎡ : 152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 : 330세대 ●임대주택: 302세대 - 전용면적 60㎡ ~ 85㎡ : 233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 : 69세대 ○ 건설비율 ●일반주택: 64% ●임대주택: 36% ○ 건립예정세대수: 840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구의·자양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주택의 규모는 사업시행인가 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거용도 중 임대주택의 연면적은 24,165㎡ 이상 확보(2017년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17.12.12) 조치내용 반영

※ 업무시설 중 500㎡ 이상은 청년창업지원 관련 시설(창업지원센터, 벤처창업지원센터, 청년일자리 카페, 숙박형창업센터, 성장지원센터등)로 확보할 것

(4)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2019년	토지등소유자, 조합등	증) 602	이상없음	현황세대 (238세대)

마)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20) 존치정비구역의 정비 및 정비계획(변경)

가) 존치정비구역 - “변경”

○ 자양1존치정비구역 - “변경”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해제	자양1 존치정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55,151	감) 55,151	-	-

○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음”

2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구의자양재정비 촉진지구	광진구 구의동246번지, 자양동 680번지 일대	385,356.7	-	385,356.7	서울시고시 제2006-357호 (2006.10.19)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85,356.7	-	385,356.7	100.0
주거지역	소 계	314,312.7	-	314,132.7	81.5
	제1종일반주거지역	89,732.0	감) 39,448.0	50,284.0	13.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953.0	-	2,953.0	0.8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22,933.0	감) 15,703.0	7,230.0	1.9
	제3종일반주거지역	53,359.2	-	53,359.2	13.8
	준주거지역	145,155.5	증) 55,151.0	200,306.5	52.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71,224.0	-	71,224.0	18.5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제1종일반주거	준주거	39,448	•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촉진구역내 용 도지역 변경
-	자양동 680-24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 (15층)	준주거	15,703	•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촉진구역내 용 도지역 변경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아차산 로	중심지 미관지구	성동교 ~ 잠실교 (자양동219-18 ~ 자양동779-7)	141,600 (4,560)	5,900 (190)	양측12	서고시 164호 (1982.4.22)	-
변경	-	자양로	중심지 미관지구	구의동220 ~ 구의동234 (자양동769-8 ~ 구의동246-15)	24,000 (16,260)	1,000 (동측535 서측820)	양측12	서고시 164호 (1982.4.22)	선형 변경
기정	-	아차산 로	일반 미관지구	자양동 ~ 구의동 (구의동246-19 ~ 구의동 244-6)	67,200 (16,320)	1,400 (680)	양측12	서고시 164호 (1982.4.22)	-

※ ():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내 면적 및 연장

※ 대로1-16호선(자양로) 완화차로 확보에 따른 미관지구 선형 변경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246-1 일대	181,187.9	-	181,187.9	서울시고시 제1996-154호 (1996.6.7)
기정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9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65 일대	47,824.7	-	47,824.7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기정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1존치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81 일대	55,151	-	55,151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마) 특별계획구역 지정 (변경)

-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양12특별계획가능구역 특별계획구역 결정: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자양12특별계획가능구역	자양동 216-4일대	7,331.4	-	7,331.4	2017.4.27

-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9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결정: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자양9존치관리 특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65일대	48,952	-	48,952	2009.6.4

-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1존치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결정 (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해제	자양1존치정비 특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81일대	55,151	감)55,151	-	2009.6.4

■ 특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폐지	자양1존치정비 특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81일대	55,151	자양5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해제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1) 도 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 능	연장 (m)	위치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대로	1	16	35	주간선 도로	5,910 (377)	성동교 (자양동219-18)	자양동 강변 (자양동680-70)	1972.9.1	부분확폭 및 시설결정 연장
변경	대로	1	16	35~38	주간선도로	5,910 (664)	성동교 (자양동219-18)	자양동 강변 (자양동680-72)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90	29~34	보조간선 도로	1,650 (310)	모진동 (자양동779-7)	능동 (자양동769-8)	1971.4.7	자양로
기정	대로	3	54	25~38	보조간선 도로	1,200 (675)	구의동 (자양동216-26)	광장동 (구의동244-6)	1966.6.21	
기정	중로	1	450	25	보조간선 도로	575 (435)	자양동680-72 (자양동680-72)	구의동593-20 (구의동592-39)	서고 제2009-225호 (2009.6.4)	뚝섬로 (동서울 길)
변경	중로	1	450	25	보조간선 도로	575 (433)	자양동680-72 (자양동680-72)	구의동593-20 (구의동592-39)		
기정	중로	1	451	20	집산도로	423	구의동 592-39	자양동 781-1	서고 제2009-225호 (2009.6.4)	아차산로 58길
기정	중로	2	479	14~18	집산도로	434	자양동 716	구의동 591-29	서고 제2009-225호 (2009.6.4)	
변경	중로	2	479	14	집산도로	434	자양동 716	구의동 591-29		
기정	중로	2	480	18	집산도로	408	자양동 683-6	자양동 781-4	"	
기정	중로	3	470	12	국지도로	270	자양동 680-86	자양동 680-83	"	
기정	소로	2	구의1	8	국지도로	170	자양동 779-2	자양동 779-24	"	
기정	소로	2	구의2	8	국지도로	70	구의동246-104	구의동 246-25	"	
기정	소로	2	구의3	8	국지도로	70	구의동 246-63	구의동 246-25	"	
기정	소로	2	구의4	8	국지도로	72	구의동 246-3	구의동 246-1	"	
기정	소로	3	구의1	6~8	국지도로	346	자양동 778-18	자양동 777-1	"	

※ ()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연장을 의미함

※ 중로2-450호선은 대로1-16호선의 완화차로 확보에 따른 기점부분 선형 변경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16	대로 1-16	- 구역내 폭원변경 B : 35m ⇒ 38m -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 연장 L = 377m ⇒ 664m	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량 증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양로변 완화차로 확보
중로 1-450	중로 1-450	선형변경	대로1-16 확폭에 따른 기점부 소폭 조정
중로 2-479	중로 2-479	폭원변경 B : 14 ~ 18m ⇒ 14m	자양촉진1구역 내 도로선형과 연계하여 선형 축소 (일부 보도 단지내 확보)

(2) 주차장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노외 주차장	구의동 243-78 일대	1,037.4	-	1,037.4	서고 제2002-162호 2002.5.8	-
신설	②	주차장	노외 주차장	자양동 680-81 일대	-	증)2,820	2,820	-	중복결정 • 지상 : 문화공원 • 지하 : 노외주차장 - 지하1층 ~ 지하2층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	- 중복결정 - 지상 : 문화공원 - 지하 : 노외주차장 (120면)	문화공원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효율적 토지 이용 및 주민의 주차편의 불편을 해소 도모

(3) 철도 (변경없음)

(4) 광장 (변경없음)

(5) 공원 (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공원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①	-	소공원	자양동 776-5일대	862	-	862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기정	②	-	소공원	자양동 216-1일대	256	-	256	"	
기정	③	-	소공원	자양동 680-83일대	605	-	605	서울시고시 제2017-332호 (2017.9.14)	
변경	④	-	문화공원	자양동 680-81일대	3,524	감)704	2,820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중복결정 • 지상 : 문화공원 • 지하 : 주차장 - 지하1 ~ 2층
기정	⑤	-	문화공원	자양동 680-63일대	3,271	-	3,271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④	-	- 면적 축소 3,524㎡ ⇒ 2,820㎡ 감) A= 704㎡ - 중복결정 - 지상 : 문화공원 - 지하 : 노외주차장 (120면)	- 문화시설 추가 확보 및 공공공지(유치원 부지) 확보를 위한 공원 축소 - 문화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여 효율적 토지이용 및 주 민의 주차편의 불편을 해소 도모

(6) 공공공지 (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⑤	공공공지	구의동 244-4일대	467	-	467	서고제2009-225호 (2009.6.4)	
기정	⑥	공공공지	자양동 776-25일대	73	-	73	서고제2012-143호 (2012.5.31)	
신설	⑦	공공공지	자양동 680-81 일대	-	증)750	750	-	

■ 공공공지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⑦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750㎡)	• 향후 유치원부지로 확보 할 수 있도록 예비용지 확보 개념의 공간 마련

(7) 공공청사 (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자양동 680-65일대	44,728	-	44,728	서울시고시 제1985-847호 1985.12.13	우편집중국
폐지	②	공공청사	자양동 680-81일대	15,557	감) 15,557	-		우정사업 정보센터
기정	③	공공청사	구의동 777일대	14,318	-	14,318	2009.6.4	現광진구청

■ 건축물의 범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①	50%이하		150%이하		4층이하		우편집중국
②	50%이하	-	150%이하	-	4층이하	-	우정사업정보센터
③	60%이하		400%이하		100m이하		現광진구청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공공청사	시설 폐지 감) A= 15,557㎡	우정사업정보센터 지방이전에 따른 공공청사 기능 상실로 시설 해제

(8)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없음)

(9) 문화시설 (변경)

■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②	문화시설	-	자양동 680-81일대	1,457	증) 443	1,900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폐지	③	문화시설	-	자양동 680-63일대	43	감) 43	-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 건축물의 범위(변경없음)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②	60%이하	400%이하	30m 이하	

■ 문화시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문화시설	시설 확장 1,457㎡ ⇒ 1,900㎡, 증) 443	실제 지역주민에 필요한 시설 기부채납 유도 위해 공원 일부를 문화시설로 변경
③	문화시설	시설 폐지 (43㎡)	실제 시설설치가 곤란한 과소한 규모의 문화시설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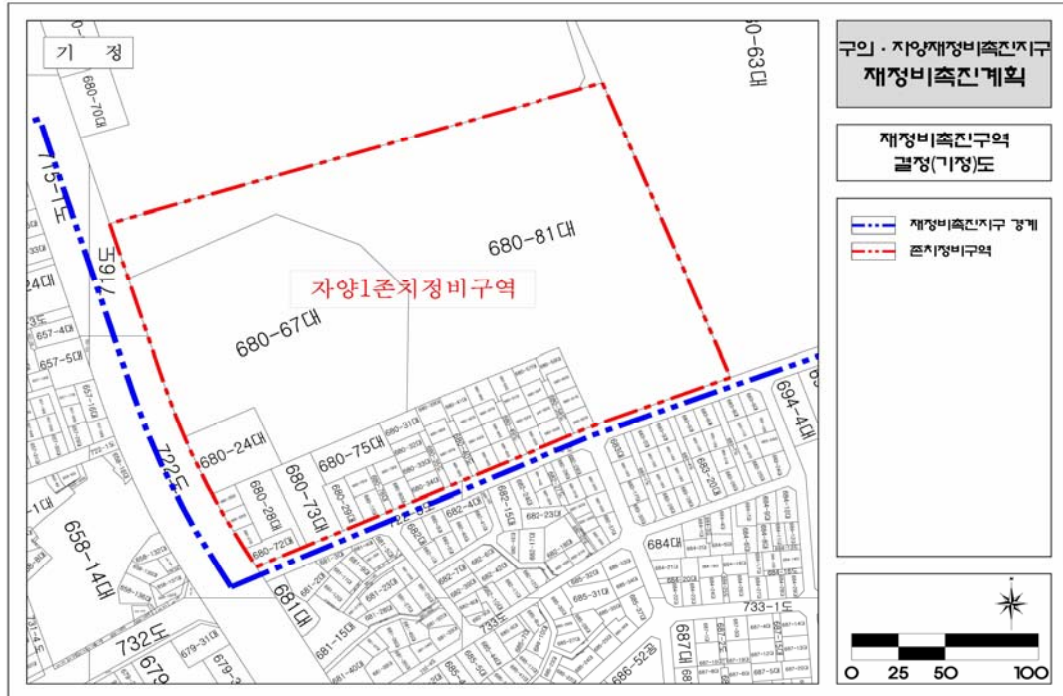
V.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지형도면(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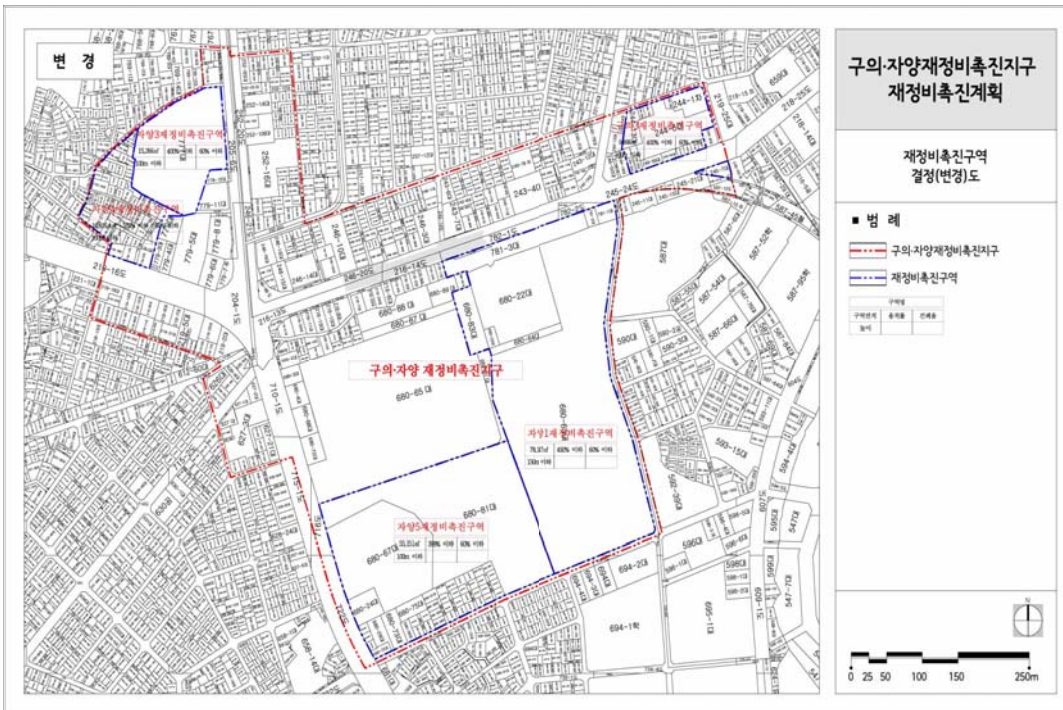
VI.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생략(비치 도서로 같음)

VII.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2) 및 광진구 도시계획과(☎02-450-7694)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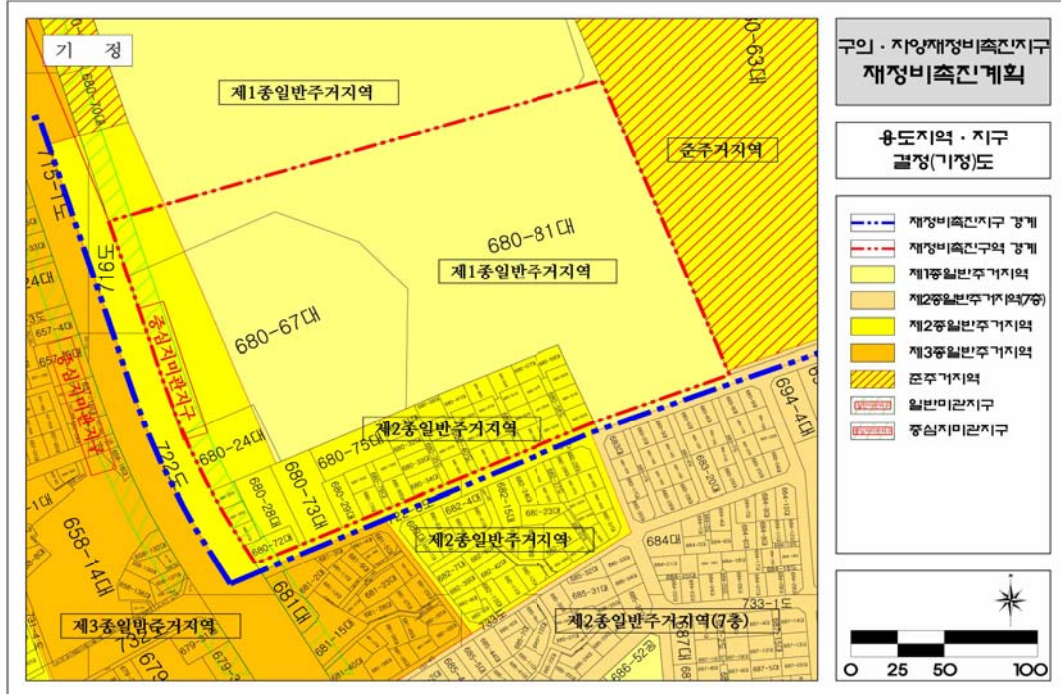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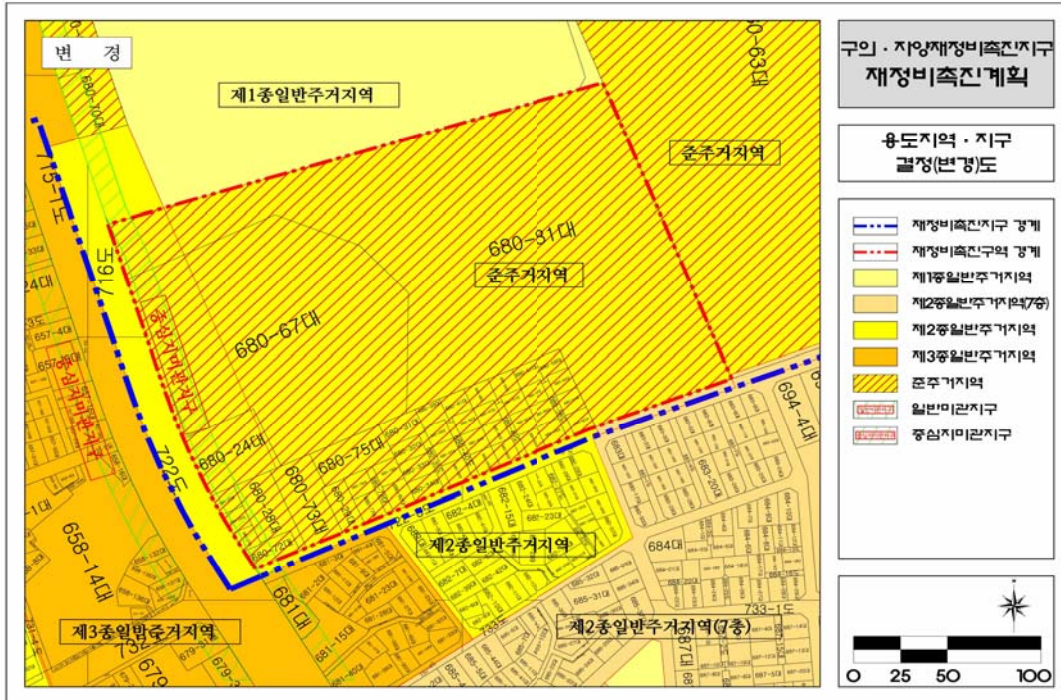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 -지구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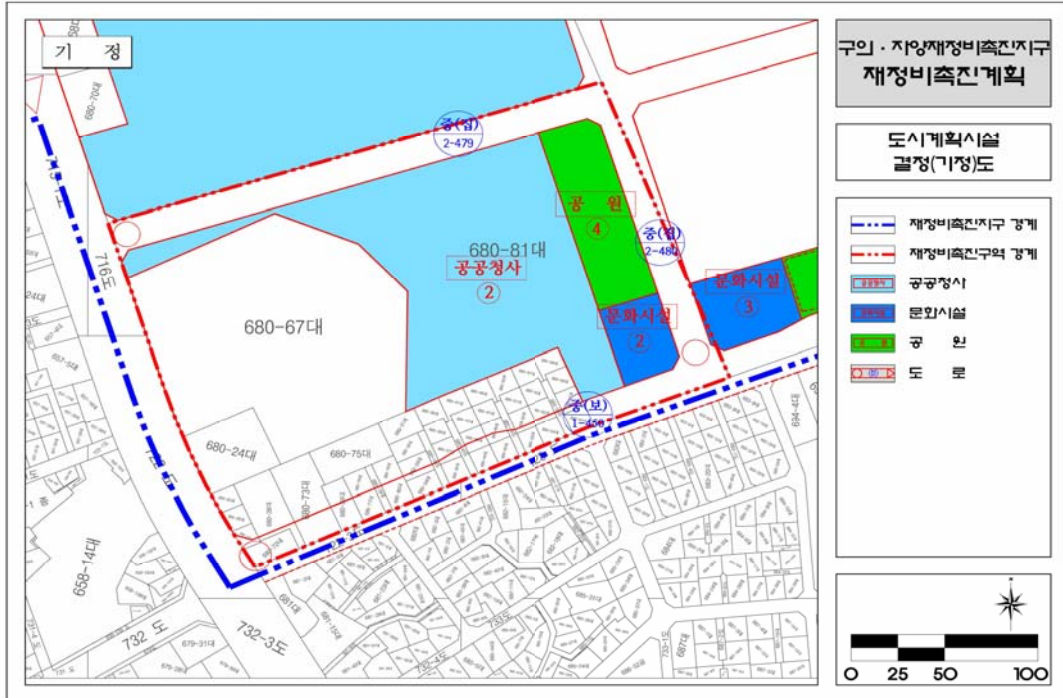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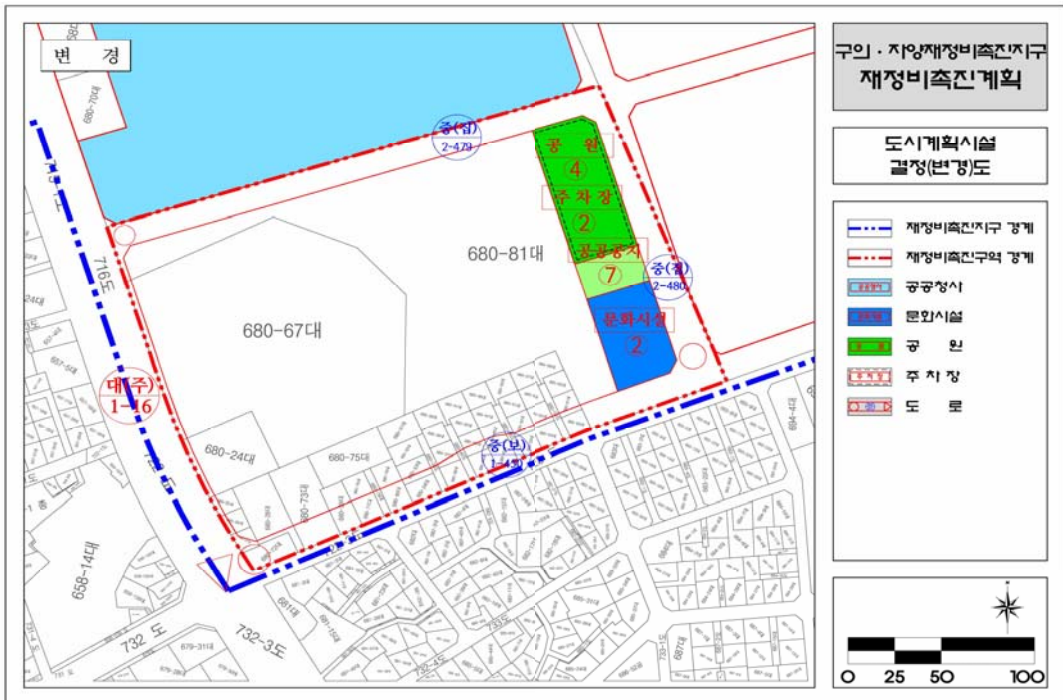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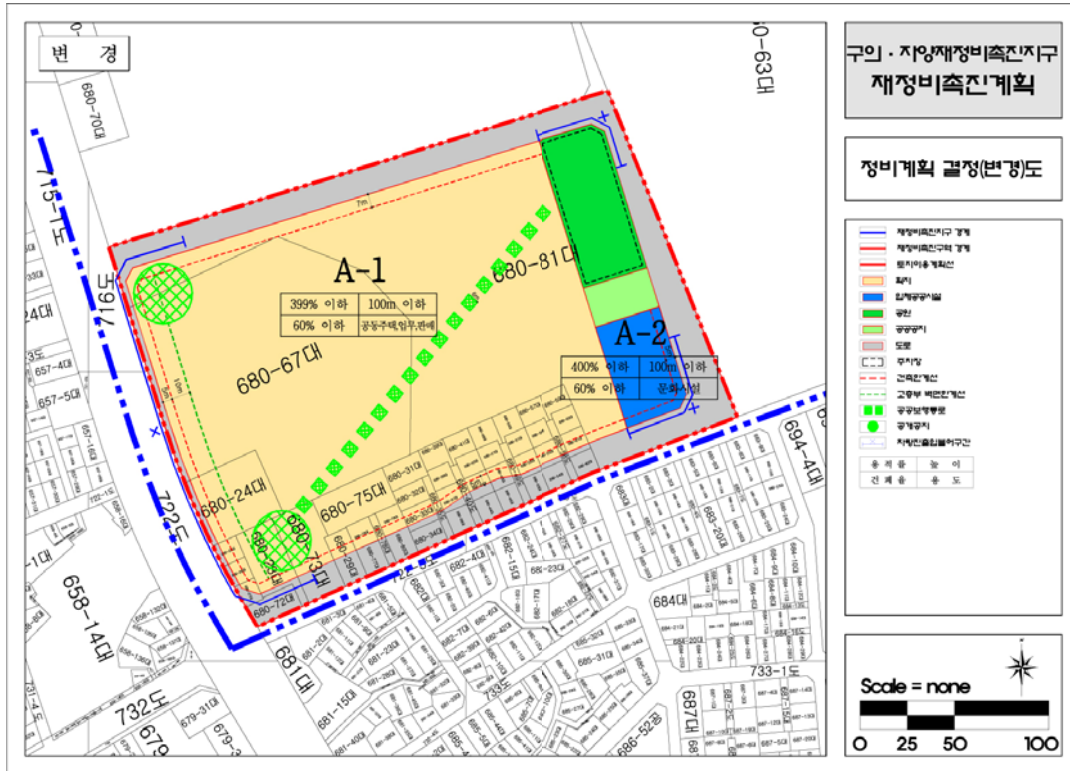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정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6호

도시관리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고시 제5호(1987.2.17.)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44호(2004.12.30.)로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42-1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승신초교 이전 및 각종학교 설치에 따른 학교 시설의 종류 변경과 교내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 연결통로 및 계단실 신설을 위한 건축범위(건폐율) 변경을 위해 승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학교)을 결정(변경)코자 함

II.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송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송인동 200-16 일대	218,280	-	218,280	2004.12.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44호)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없음)

3) 교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학 교	초등학교	각종학교	송인동 242-1일대	13,517	-	13,517	1987.2.1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고 시 제5호)	

■ 건축범위 결정(변경)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30 이하	35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5 이하	5 이하	일반상업지역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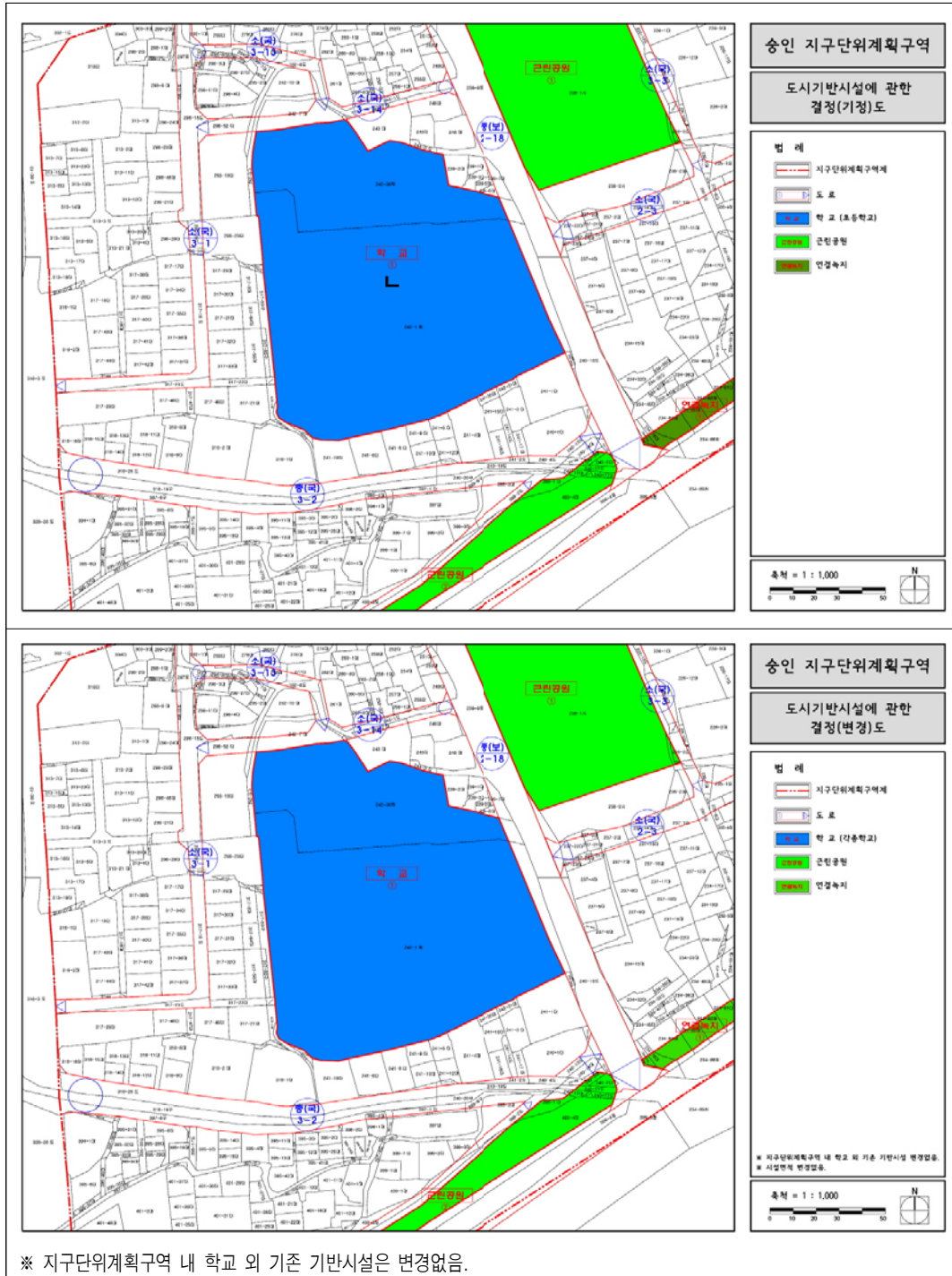
III.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11) 및 종로구 건축과(☎02-2148-281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성북제2 - 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558호(2005.4.21.)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4호(2009.1.2.)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0호(2015.6.11.)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6호(2016.4.14)로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지정 결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I.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없음)

② 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신길음구역 : 변경없음
- 신길음1구역 : 변경없음
- 신월곡2구역 : 변경없음
- 강북2구역 : 변경없음
- 강북5구역 : 변경없음
- 강북6구역 : 변경없음
- 강북7구역 : 변경없음
- 신월곡1구역 : 변경

1.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성북구 하월곡동 88-142 일대	55,112.0	-	55,112.0	고밀개발구역 (역세권)

2.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3.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분	명칭	면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5,112.0	－	55,112.0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13,867.0	－	13,867.0	25.2	－
	도로	9,081.0	－	9,081.0	16.5	중로2-506호선과 주차장 중복결정
	문화공원	3,247.0	－	3,247.0	5.9	주차장과 중복결정
	어린이공원	1,539.0	－	1,539.0	2.8	－
	(주차장)	(3,975.8)	－	(3,975.8)	(7.2)	문화공원, 중로2-506호선과 중복결정
획지	소계	41,245.0	－	41,245.0	74.8	－
	획지-1	40,600.0	－	40,600.0	73.7	판매, 주거, 업무 또는 숙박
	획지-2	645.0	－	645.0	1.1	종교시설

※ 주차장은 중로2-506호선, 문화공원 지하에 중복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55	35 ~45	주간선 도로	3,550 (252)	(하월곡동 104-127)	(하월곡동 88-16)	일반 도로	—	—	미아로
기정	대로	3	56	25 ~63	주간선 도로	1,750 (455)	(하월곡동 104-5)	(하월곡동 104-217)	일반 도로	—	—	정릉로
기정	중로	2	506	15	집산 도로	45	하월곡동 104-421	하월곡동 88-90	일반 도로	—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과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512	18~ 19	집산 도로	274 (229)	하월곡동 88-16	하월곡동 88-909	일반 도로	—	서고2002-263 (2002.7.2)	—
기정	중로	2	513	15	국지 도로	185	하월곡동 104-5	하월곡동 88-909	일반 도로	—	서고2007-198 (2007.6.21)	—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59	하월곡동 88-529	하월곡동 88-959	일반 도로	—	서고2002-263 (2002.7.2)	—

※()는 구역내 사항임.

(2) 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	—	하월곡동 104-130 일대	3,975.8	—	3,975.8	—	문화공원 및 중로 2-506호선과 중복결정

(3) 공간시설(공원·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어린이 공원	하월곡동 88-958호	1,539.0	-	1,539.0	서고2008-494 (2009.1.2)	-
기정	공원	문화 공원	하월곡동 104-130 일대	3,247.0	-	3,247.0	서고2008-494 (2009.1.2)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과 중복결정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기정]

구분	면 적(㎡)		설치계획 (㎡)
	관계법령	기준	
관리사무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10㎡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500㎡를 더한 면적.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을 100㎡로 할수 있다.	196㎡
휴게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제2항	삭제	해당없음
근린생활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특례)3항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없음
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주민공동시설) 서울시 주택조례 8조의4(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총량 1,000세대이상: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x 1.25 - 500세대이상 포함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6,781㎡
유치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제1항1호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특례)3항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없음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이상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

※ 건립예상세대수 : 2,444세대 (성북제2구역에서 이전하는 세대수 포함)

[변경]

구분	면 적(㎡)		설치계획 (㎡)
	관계법령	기준	
관리사무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10㎡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500㎡를 더한 면적.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을 100㎡로 할수 있다.	159.82㎡
휴게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제2항	삭제	해당없음
근린생활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특례)3항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없음
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주민공동시설) 서울시 주택조례 8조의4(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총량 1,000세대이상: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x 1.25 - 500세대이상 포함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 터,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8,086.61㎡
유치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2조제1항1호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특례)3항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없음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이상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

※ 건립예상세대수 : 2,213세대 (성북제2구역에서 이전하는 세대수 포함)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없음)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신월곡1 도시환경 정비구역	55,112.0	-	-	하월곡동 88-142 일대	358	-	-	358	-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준	허용	상한		
기정	신월곡1 도시환경 정비구역	55,112.0	획지1	40,600.0	하월곡동 88-142 일대	판매, 주거, 업무 또는 숙박	60% 이하	350% 이하	580% 이하	680% 이하	155m이하	-
			획지2	645.0	하월곡동 88-350일대	종교시설	해당 용도지역에 부합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적용					-
임대주택			○건설규모 : 전용면적 40㎡이상 ○건설비율 : (당해구역에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17%또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의 10%) x (당해구역에 건설하는 전체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으로 산정된 비율 이상 ※ 의무연면적 산정시 결합개발분은 제외하여 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거비율 : 전체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비율 85% 미만 (오피스텔 제외) ○규모별 건설비율 : 해당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정릉로 건축한계선 : 5m ○미아로 및 기타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 3m									

■ 건축물의 용도 (지정/불허)

구 분		내 용		비 고
획지 1	지 정 용 도	▶판매, 주거, 업무 또는 숙박시설 - 본 계획상 지정용도는 모두 도입되어야 함 - 주용도(연면적이 가장 큰 용도)가 지정용도로 설정되어야 함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밀도 계획 (서고 2008-112호, 2008.4.3)
	불 허 용 도	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중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자동차정비관련 단, 판매시설의 부속 용도로서 지하층 설치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단, 전신전화국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조례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중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아파트형공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획지 2	지 정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의 건축물		-

5)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기 확보된 도로 및 신규 확보될 도로도 녹화와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완전한 보차분리를 원칙으로 함. - 시야 확보가 가능한 지점에 공원 또는 휴게공간을 확보토록 함. - 건축물의 충분한 이격으로 통경축 확보 - 주변지역과 연계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유도	-
환경보전	- 환경 친화적인 조경시설물 및 포장재료를 이용 - 불투수 포장면을 최소화하여 토양오염 방지 - 단지내 풍부한 녹지와 순환형 보행자 전용노드를 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선택 및 식재	-
재난방지	- 굴토공사시 안전한 흙막이 공법 선정으로 침하 등의 방지 - 공사소음 및 진동대책 : 저소음 무진동 발파 대안 마련, 법적 규제 이내의 소음관리 - 비산분진 대안 마련 : 방진망, 세륜세차시설 설치 등으로 분진발생 최소화, 주기적인 살수 - 공사안전 대안 마련 : 안전사고 및 화재 등 공사안전 무사고 실시	-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건축물의 용도 :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정화구역의 설정)에 따른 제6조(학교환경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준수 2.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 환경성검토결과 참조(별첨) : 환경영향평가 대상구역으로서 환경영향평가 주변 환경 영향 추가검토 예정 → 사업시행인가시 사업계획서 협의 예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8조3항)
※ 학교(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정화구역도 (자료출처:성북교육청)	

7)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 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4년 이내	조합	현황 : 733세대 계획 : 2,251세대 증) 1,518세대	집중호우시 저지대의 침수우려 및 화재시 소방통로 미확보에 따른 참사우려로 인한 정비사업시행 필요	성북제2구역의 이전 세대수 제외
변경				현황 : 733세대 계획 : 2,021세대 증) 1,288세대		성북제2구역으로의 이전 세대수 제외

■ 세대수 계획

- 기존세대수 : 733세대 (세입자 622세대 포함)
- 계획세대수 : 2,021세대 (증 1,288세대)

8)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결합정비구역의 지정 내용에 따름

9)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환경성검토결과 (변경없음)

1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1	1	-	하월곡동 88-142 일대	40,600.0	-	40,600.0	판매, 주거, 업무 또는 숙박
2			하월곡동 88-350 일대	645.0	-	645.0	종교시설

1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 수	연 면 적 (㎡)	세대수 (세대)	세대규모(전용) (㎡)	비 고
기정	하월곡동 88-142 일대	-	-	24,997.25	261	59.5 : 25세대 44.8 : 199세대 40.0 : 37세대	
변경	하월곡동 88-142 일대			24,997.34	217 감) 44	50㎡초과 : 84세대 40~50㎡ : 133세대	

13)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수정가결)

○ 심의일자 : 2015.6.3(수)

○ 주요내용

- 성북제2정비구역과 신월곡1정비구역을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

※ 권고사항 : 신월곡1구역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시 획일적 경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층수변화 및 스카이라인계획 변경 검토

※ 변경사유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계획 변경

II. 결합정비구역 지정 및 결합정비계획 수립

① 결합정비구역지정 및 결합정비계획 수립

1. 결합정비구역의 지정

- 1) 정비구역의 명칭 : 성북제2 - 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 정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사업	성북구 성북동 226-103 일대 성북구 하월곡동 88-142 일대	129,866.4	결합개발

2. 정비구역의 결합에 관한 계획

저밀관리구역	고밀개발구역	비고
- 구역명칭 : 성북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위치 : 성북구 성북동 226-103 일대 - 면적 : 74,754.4㎡	- 구역명칭 : 신월곡1도시환경정비구역 - 위치 : 성북구 하월곡동 88-142 일대 - 면적 : 55,112.0㎡	-

3. 사업시행지구 분할에 관한 계획 : 결합 후 분할시행

구분	시행지구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	-	129,866.4	결합개발
저밀관리구역	성북제2구역	성북구 성북동 226-103 일대	74,754.4	구릉지
고밀개발구역	신월곡1구역	성북구 하월곡동 88-142 일대	55,112.0	역세권

4. 결합정비사업 용적률에 관한 계획

구분	저밀관리구역 (성북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고밀개발구역 (신월곡1도시환경정비구역)	비고
기본계획 용적률	저밀관리구역 단독으로 정비사업시 필요한 용적률(구역면적 기준)	-	-
	128%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적률 ⇒ 54,754.4㎡ × 128% = 70,085.6㎡ : ①	-	

구분	저밀관리구역 (성북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고밀개발구역 (신월곡1도시환경정비구역)	비고
관리목표 용적률	도시경관,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저밀관리구역의 새로이 정한 용적률 (정비기반 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기준)	—	—
	90%이하 ⇒ $33,775.1\text{m}^2 \times 90\% = 30,397.5\text{m}^2$: ②	—	
이전대상 연면적	기본계획용적률과 관리목표용적률의 차에 해당 하는 지상층 건축물 총면적	—	—
	$39,688.1\text{m}^2$: ③ = (①-②) ⇒ $70,085.6\text{m}^2 - 30,397.5\text{m}^2 = 39,688.1\text{m}^2$	—	
이전대상 용적률 ④	—	이전대상연면적을 고밀개발구역 획지면적으로 나눈 용적률	—
	—	97.7% : ④ ⇒ $(39,688.1\text{m}^2 \div 40,600.0\text{m}^2) \times 100\% = 97.7\%$	
인센티브 용적률 ⑤	—	결합정비사업 시행시, 도시경관 또는 문화재 보호 등의 공공기여를 인정하여 완화하는 용적률	—
	—	20% : ⑤ ⇒ 인센티브용적률 = 이전대상용적률 $\times 0.5$ = $97.7\% \times 0.5 = 48.8\%$ ($5\% \leq \text{인센티브용적률} \leq 20\%$)	
결합 용적률	—	80% ⇒ 결합용적률(④+⑤) = 이전대상용적률+인센티브용적률 = $97.7\% + 20\% = 117.7\%$이나, ※ 고밀개발구역의 과밀화방지를 위해 결합용적률은 80%이하로 제한	—

※ 성북제2구역(저밀관리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결합정비사업에 따른 용적률 배분에 관한 계획

■ 배분용적률

- 성북제2구역 : 결합용적률 80% 중 48.5% 결정
- 신월곡1구역 : 결합용적률 80% 중 31.5% 결정

6.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비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부터 4년 이내	조합	결합개발 (분할시행)

7. 기타사항

- 신월곡1구역 최초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성북제2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총회동의 포함)를 이행하여 정비계획 결정고시 할 예정임.
- 다만, 신월곡1구역 최초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성북제2구역의 정비계획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월곡1구역의 정비계획 변경(결합용적률 등 환원), 환수방법 등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분할시행은 구역별 정비계획 내용에 따름

8.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수정가결)

- 심의일자 : 2015.6.3(수)
- 주요내용
 - 성북제2정비구역과 신월곡1정비구역을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
 - 성북2구역
 - 결합정비구역내 사업방식의 변경을 위한 추진절차를 이행하되, 사업방식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시행 할 것
 - 결합개발로 배분된 용적률(48.5%)의 수입을 토대로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건을 고려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문화유산 보존,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 정비계획 변경 필요
- ※ 권고사항 : 신월곡1구역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시 획일적 경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층수 변화 및 스카이라인계획 변경 검토

② 성북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없음)

③ 신월곡1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1.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성북구 하월곡동 88-142 일대	55,112.0	-	55,112.0	고밀개발구역 (역세권)

2.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3.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분	명칭	면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5,112.0	－	55,112.0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13,867.0	－	13,867.0	25.2	－
	도로	9,081.0	－	9,081.0	16.5	중로2-506호선과 주차장 중복결정
	문화공원	3,247.0	－	3,247.0	5.9	주차장과 중복결정
	어린이공원	1,539.0	－	1,539.0	2.8	－
	(주차장)	(3,975.8)	－	(3,975.8)	(7.2)	문화공원, 중로2-506호선과 중복결정
획지	소계	41,245.0	－	41,245.0	74.8	－
	획지-1	40,600.0	－	40,600.0	73.7	판매, 주거, 업무 또는 숙박
	획지-2	645.0	－	645.0	1.1	종교시설

※ 주차장은 중로2-506호선, 문화공원 지하에 중복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55	35 ~45	주간선 도로	3,550 (252)	(하월곡동 104-127)	(하월곡동 88-16)	일반 도로	—	—	미아로
기정	대로	3	56	25 ~63	주간선 도로	1,750 (455)	(하월곡동 104-5)	(하월곡동 104-217)	일반 도로	—	—	정릉로
기정	중로	2	506	15	집산 도로	45	하월곡동 104-421	하월곡동 88-90	일반 도로	—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과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512	18~ 19	집산 도로	274 (229)	하월곡동 88-16	하월곡동 88-909	일반 도로	—	서고2002-263 (2002.7.2)	—
기정	중로	2	513	15	국지 도로	185	하월곡동 104-5	하월곡동 88-909	일반 도로	—	서고2007-198 (2007.6.21)	—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59	하월곡동 88-529	하월곡동 88-959	일반 도로	—	서고2002-263 (2002.7.2)	—

※()는 구역내 사항임.

(2) 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	-	하월곡동 104-130 일대	3,975.8		3,975.8	-	문화공원 및 중로 2-506호선과 중복결정

(3) 공간시설(공원·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어린이 공원	하월곡동 88-958호	1,539.0	-	1,539.0	서고2008-494 (2009.1.2)	-
기정	공원	문화 공원	하월곡동 104-130 일대	3,247.0	-	3,247.0	서고2008-494 (2009.1.2)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과 중복결정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기정]

구분	면 적(㎡)		설치계획 (㎡)
	관계법령	기준	
관리사무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10㎡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500㎡를 더한 면적.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을 100㎡로 할수 있다.	196㎡
휴게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제2항	삭제	해당없음
근린생활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특례)3항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없음
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서울시 주택조례 8조의4(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총량 1,000세대이상: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x 1.25 - 500세대이상 포함시설 :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6,781㎡
유치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2조제1항 1호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특례)3항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없음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이상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

※ 건립예상세대수 : 2,444세대 (성북제2구역에서 이전하는 세대수 포함)

[변경]

구분	면 적(㎡)		설치계획 (㎡)
	관계법령	기준	
관리사무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10㎡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500㎡를 더한 면적.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을 100㎡로 할수 있다.	159.82㎡
휴게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제2항	삭제	해당없음
근린생활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특례)3항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없음
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서울시 주택조례 8조의4(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총량 1,000세대이상: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x 1.25 - 500세대이상 포함시설 :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8,086.61㎡
유치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2조제1항1호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특례)3항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없음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이상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

※ 건립예상세대수 : 2,213세대 (성북제2구역에서 이전하는 세대수 포함)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없음)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신월곡1 도시환경 정비구역	55,112.0	-	-	하월곡동 88-142 일대	358	-	-	358	-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준	허용	상한		
기정	신월곡1 도시환경 정비구역	55,112.0	획지1	40,600.0	하월곡동 88-142 일대	판매, 주거, 업무 또는 숙박	60% 이하	350% 이하	580% 이하	680% 이하	155m이하	-
			획지2	645.0	하월곡동 88-350 일대	종교시설	해당 용도지역에 부합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적용					-
임대주택			○건설규모 : 전용면적 40㎡이상 ○건설비용 : (당해구역에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17%또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의 10%) x (당해구역에 건설하는 전체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으로 산정 된 비율 이상 ※ 의무연면적 산정시 결합개발분은 제외하여 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주거비용 : 전체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비율 85% 미만 (오피스텔제외) ○규모별 건설비용 : 해당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정릉로 건축한계선 : 5m ○미아로 및 기타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 3m									

■ 건축물의 용도 (지정/불허)

구 분		내 용	비 고
획 지 1	지 정 용 도	▶판매, 주거, 업무 또는 숙박시설 - 본 계획상 지정용도는 모두 도입되어야 함 - 주용도(연면적이 가장 큰 용도)가 지정용도로 설정되어야 함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밀도 계획 (서고 2008-112호, 2008.4.3)
	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자동차정비관련 단, 판매시설의 부속 용도로서 지하층 설치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단, 전신전화국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조례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아파트형공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획 지 2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불허용도	▶지정용도의 건축물	-

5)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기 확보된 도로 및 신규 확보될 도로도 녹화와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완전한 보차분리를 원칙으로 함. - 시야 확보가 가능한 지점에 공원 또는 휴게공간을 확보토록 함. - 건축물의 충분한 이격으로 통경축 확보 - 주변지역과 연계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유도	-
환경보전	- 환경 친화적인 조경시설물 및 포장재료를 이용 - 불투수 포장면을 최소화하여 토양오염 방지 - 단지내 풍부한 녹지와 순환형 보행자 전용녹도를 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선정 및 식재	-
재난방지	- 굴토공사시 안전한 흙막이 공법 선정으로 침하 등의 방지 - 공사소음 및 진동대책 : 저소음 무진동 발파 대안 마련, 법적 규제 이내의 소음관리 - 비산분진 대안 마련 : 방진망, 세물세차시설 설치 등으로 분진발생 최소화, 주기적인 살수 - 공사안전 대안 마련 : 안전사고 및 화재 등 공사안전 무사고 실시	-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건축물의 용도 :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정화구역의 설정)에 따른 제6조(학교환경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준수 2.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 환경성검토결과 참조(별첨) : 환경영향평가 대상구역으로서 환경영향평가 주변 환경 영향 추가검토 예정 → 사업시행인가시 사업계획서 협의 예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8조3항)
※ 학교(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정화구역도 (자료출처:성북교육청)	

7)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 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4년 이내	조합	현황 : 733세대 계획 : 2,251세대 (증) 1,518세대	집중호우시 저지대의 침수우려 및 화재시 소방통로 미확보에 따른 참사우려로 인한 정비사업시행 필요	성북제2구역의 이전 세대수 제외
변경				현황 : 733세대 계획 : 2,021세대 (증) 1,288세대		성북제2구역으로의 이전 세대수 제외

■ 세대수 계획

- 기존세대수 : 733세대 (세입 622세대 포함)
- 계획세대수 : 2,021세대 (증 1,288세대)

8)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결합정비구역의 지정 내용에 따름

9)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환경성검토결과 (변경없음)

1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1	1	-	하월곡동 88-142 일대	40,600.0	-	40,600.0	판매, 주거, 업무 또는 숙박
2			하월곡동 88-350 일대	645.0	-	645.0	종교시설

1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 수	연 면 적 (㎡)	세대수 (세대)	세대규모(전용) (㎡)	비 고
기정	하월곡동 88-142 일대	-	-	24,997.25	261	59.5 : 25세대 44.8 : 199세대 40.0 : 37세대	
변경	하월곡동 88-142 일대			24,997.34	217 갑) 44	50㎡초과 : 84세대 40~50㎡ : 133세대	

13)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수정가결)

○ 심의일자 : 2015.6.3.(수)

○ 주요내용

- 성북제2정비구역과 신월곡1정비구역을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

※ 권고사항 : 신월곡1구역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시 획일적 경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층수변화 및 스카이라인계획 변경 검토

III. 관계도면 : 불임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성북제2구역은 변경사항 없음 : 도면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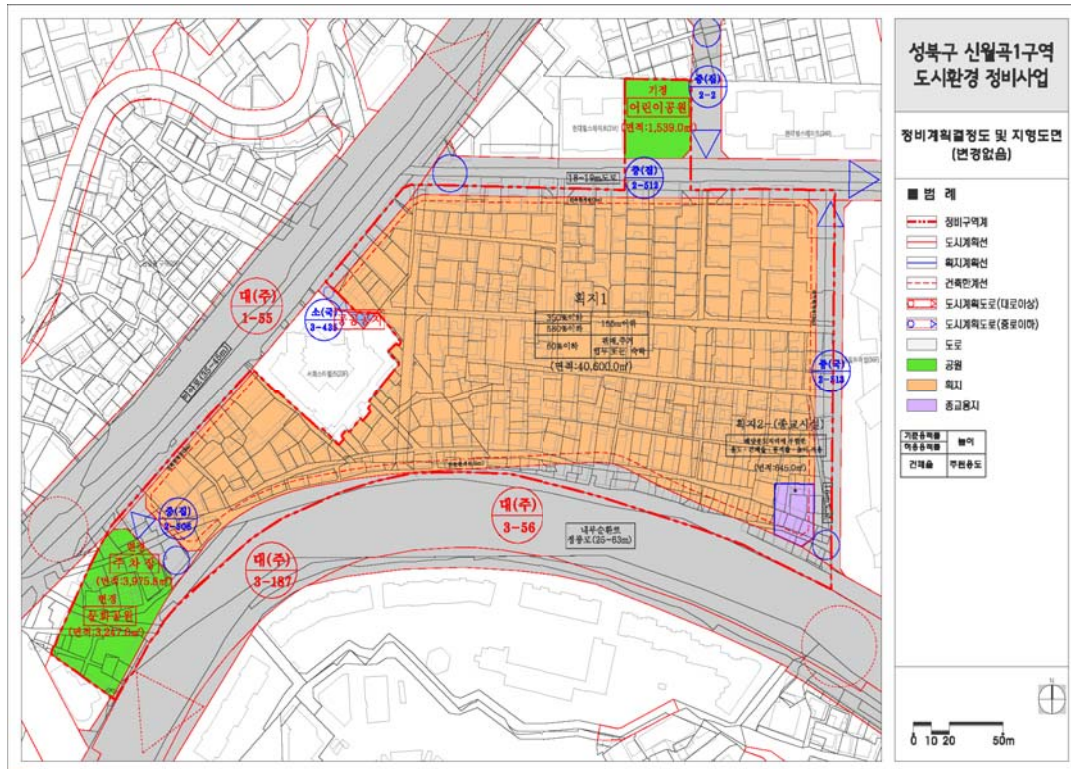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02)2133-7217)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
(02)2241-2855)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관계도면

[정비계획결정도 및 지형도면]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8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고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수수료와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시 소요되는 현장 출장 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가. 2018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 붙임

나. 현장 출장 경비

- 1)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 : 1,490,660원
2)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 468,610원
745,330원(외부전문가합동점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02-3462-6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에서 지정된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일대, 도봉구 쌍문동 333번지 일대,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에 의거 해제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 3개소 (1.7ha)
○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기정	A	4	쌍문1동	480	1.0	170%	5층 이하	60%	2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복 (전면)	2004.6.25. (서고시 2004-204)
변경	해 제											

○ 도봉구 쌍문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기정	A	5	쌍문3동	333	0.4	190%	12층 이하	60%	3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면	2004.6.25. (서고시 2004-204)
변경	해 제											

○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기정	A	10	창신동	143-27	0.3	210%	-	50%	1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면	2004.6.25. (서고시 2004-204)
변경	해 제											

2. 해제사유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위 법률 제11293호 부칙 제12조에 따라 2012.2.1.)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관할 구청장이 주민공람 등 해제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 해제 함.

3. 해제도면 : 붙임과 같음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02-2133-7187) 및 관할 구청에(도봉구 주택과:02-2091-3514, 종로구 주택과:02-2148-2612)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 정비예정구역 위치도

○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도봉구 쌍문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0호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제공되는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시장)

○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시장		은평구 응암동 74-7번지	1,793	감)1,793	-	서고39호 ('73.3.24)	

○ 결정 사유서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녹번시장	○시장 폐지 - 면적 : 1,793㎡	○ 시장기능 상실로 대규모점포 폐업(2017.4) 처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4	국지 도로	55	응암동 64-1	응암동 74-7	일반 도로	-	-	

○ 결정 사유서

변경전 노선명	변경후 노선명	결정 내용	결 정 사 유
-	소로3류	○도로 신설 - 폭 4m, 연장 55m	○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지역주민의 도로이용 편의 제공

다. 지형도면 : 붙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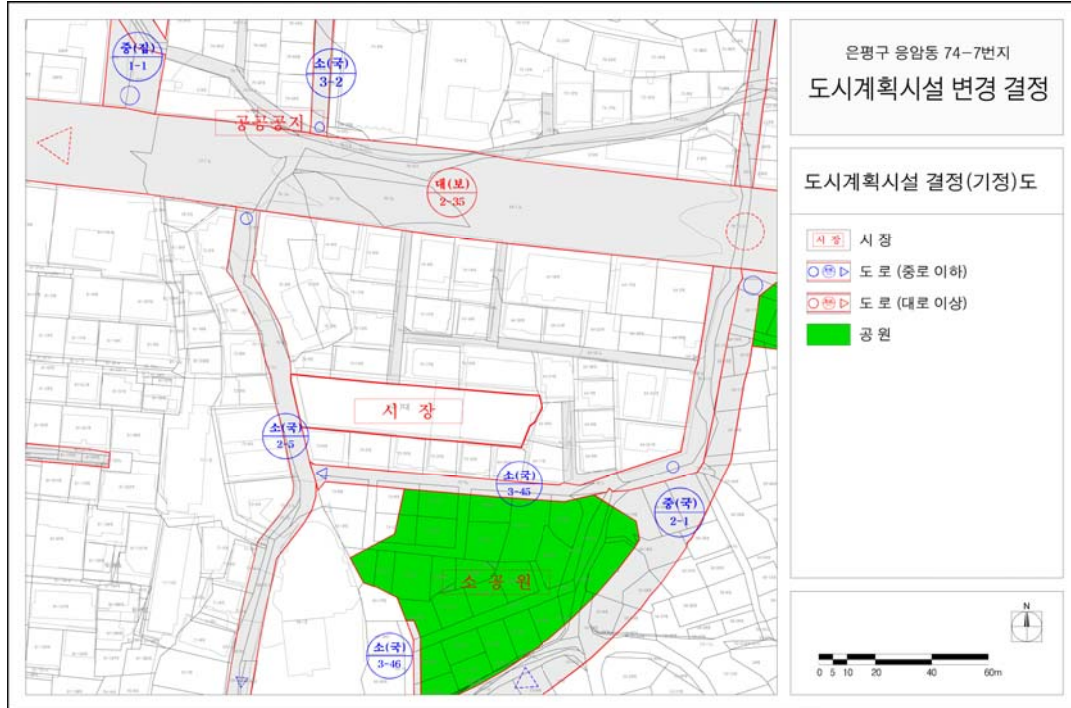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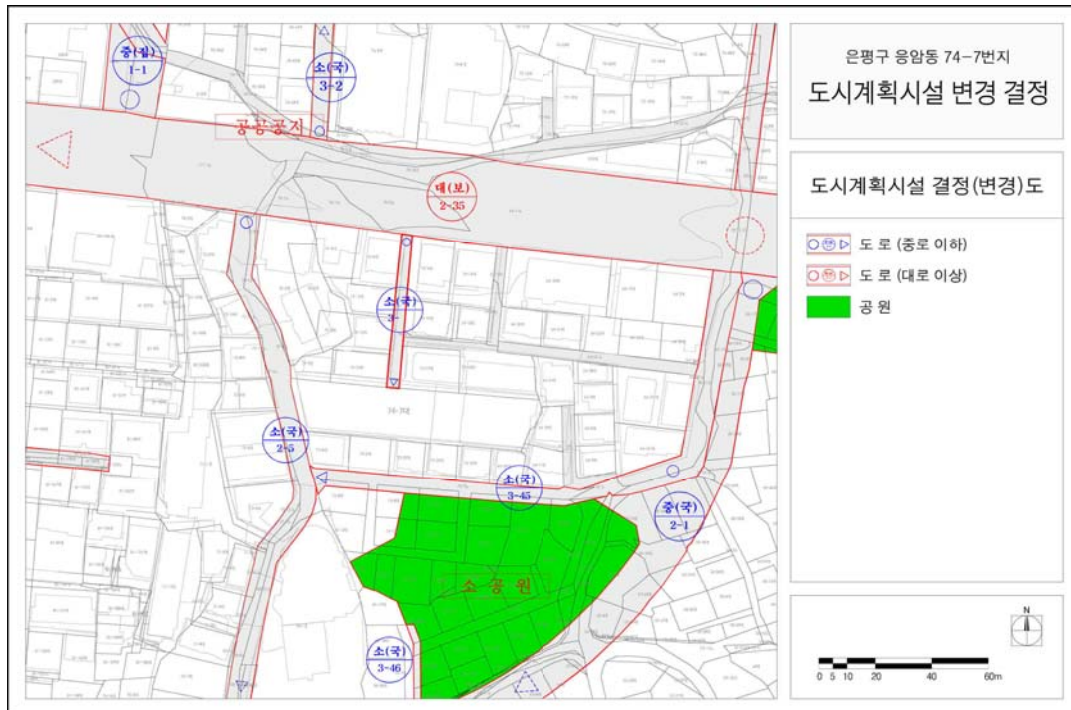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08) 및 은평구 도시계획과(☎ 351-7403)에 각각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1호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제5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3호(2009.9.28.)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결정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13호(2013.8.30.)로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제5호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제5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종택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변경하여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07 일대

3. 면 적 : 21,560㎡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 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76) 및 강남구 공원녹지과(☎3423-6243)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제5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 (서울특별시 자곡동 607)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1,560.00	8,243.69	3	366.73	366.73	110	21,560.00	8,619.80	3	366.73	366.73	308	
기반 시설	소 계	5,331.17	5,331.17					5,559.26	5,559.26					(증)228.09㎡
	도 로	3,067.49	3,067.49					3,295.58	3,295.58					(증)228.09㎡
	광 장	2,263.68	2,263.68					2,263.68	2,263.68					
조 경 시 설		342.02	342.02				72	921.1	921.1				85	(증)579.08㎡
휴 양 시 설		441.04	441.04				11	441.04	441.04				11	
교 양 시 설		1,907.35	1,907.35	3	366.73	366.73		1,605.09	1,605.09	3	366.73	366.73		(감)302.26㎡
편 의 시 설		222.11	222.11				11	93.31	93.31					(감)128.8㎡
관 리 시 설		-	-				16	-	-				212	
녹지 및 기타		13,316.31	13,316.31					12,940.2	12,940.2					(감)376.11㎡
시설율 (법정40%)		(8,243.69 / 21,560.0) x 100 = 38.23%						(8,619.80 / 21,560) x 100 = 39.98%						
건폐율 (법정20%)		(366.73 / 21,560.0) x 100 = 1.7%						(366.73 / 21,560.0) x 100 = 1.7%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21,560.00	8,243.69	110		3동	366.73	366.73			308		3동	366.73	366.73	
	계			5,331.17	5,331.17	-							-					(증)228.09㎡
	소계			3,067.49	3,067.49	-							-					(증)228.09㎡
	도로			3067.49	3,067.49	-							-					(증)228.09㎡
	소계			2,263.68	2,263.68	-							-					
	광장			2,263.68	2,263.68	-							-					
	광장1	가-1	607공	258.85	258.85	-					가-1	607공	258.85	258.85	-			-
	광장2	가-2	607공	204.03	204.03	-					가-2	607공	204.03	204.03	-			-
	광장3	가-3	607공	246.06	246.06	-					가-3	607공	246.06	246.06	-			-
	광장4	가-4	607공	46.73	46.73	-					가-4	607공	46.73	46.73	-			-
	광장5	가-5	607공	302.09	302.09	-					가-5	607공	302.09	302.09	-			-
	광장6	가-6	607공	139.99	139.99	-					가-6	607공	139.99	139.99	-			-
	광장7	가-7	607공	225.86	225.86	-					가-7	607공	225.86	225.86	-			-
기반시설	광장8	가-8	607공	113.87	113.87	-					가-8	607공	113.87	113.87	-			-
	광장9	가-9	607공	65.49	65.49	-					가-9	607공	65.49	65.49	-			-
	광장10	가-10	607공	41.69	41.69	-					가-10	607공	41.69	41.69	-			-
	광장11	가-11	607공	236.9	236.9	-					가-11	607공	236.9	236.9	-			-
	광장12	가-12	607공	10.9	10.90	-					가-12	607공	10.9	10.90	-			-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구조	건축물(㎡)		규모	구조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반시설	광장13	가-13	607공	191.36	191.36	-				가-13	607공	191.36	191.36	-			-
	광장14	가-14	607공	128.19	128.19	-				가-14	607공	128.19	128.19	-			-
	광장15	가-15	607공	51.67	51.67	-				가-15	607공	51.67	51.67	-			-
조경시설	소계			342.02	342.02	72						921.1	921.1	85			(증)579.08㎡
	죽림원	①	607공	34.75	34.75	-				①	607공	34.75	34.75	-			-
	캐스케이드A	②	607공	40.7	40.7	1				②	607공	40.7	40.7	1			-
	캐스케이드B	③	607공	46.3	46.3	1				③	607공	46.3	46.3	1			-
	캐스케이드C	④	607공	57.6	57.6	1				④	607공	57.6	57.6	1			-
	POND	⑤	607공	-	-	1				⑤	607공	50.0	50.0	1			(증)50.0㎡
	청연지	⑥	607공	-	-	1				⑥	607공	21.0	21.0	1			(증)21.0㎡
	자연형수로	⑦	607공	-	-	1				⑦	607공	150.91	150.91	1			(증)150.91㎡
	조형폴딩(02-04)	⑧	607공	-	-	1				⑧	607공	-	-	1			-
	조형폴딩(02-05)	⑨	607공	-	-	1				⑨	607공	-	-	1			-
	돌담-1	⑩	607공	70.08	70.08	87.6m				⑩	607공	70.08	70.08	87.6m			-
	경관석놀이	⑪	607공	-	-	55				⑪	607공	-	-	55			-
	조형가벽A-1, A-3	⑫		42.5	42.5	1				⑫		42.5	42.5	1			-
	조형가벽A-2	⑬	607공	31.59	31.59	1				⑬	607공	31.59	31.59	1			-
	조형가벽B	⑭	607공	-	-	1				⑭	607공	-	-	1			-
	조형가벽C	⑮	607공	-	-	1				⑮	607공	-	-	1			-
조형가벽D	⑯	607공	18.5	18.5	1				⑯	607공	18.5	18.5	1			-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조 경 시 설	조형파고라A	㉗	607공	-	-	1				㉗	607공	-	-	1						-
	조형파고라B	㉘	607공	-	-	1				㉘	607공	-	-	1						-
	셀터파고라	㉙	607공	-	-	2				㉙	607공	-	-	2						-
	사모정									㉚	607공	16	16	1						신설
	돌담-2									㉛	607공	119.06	119.06	1						신설
	목재데크(02-02)									㉜	607공	74.51	74.51	1						신설
	데크로(02-01)									㉝	607공	-	-	1						신설
	데크로(02-02)									㉞	607공	-	-	1						신설
	데크로(02-03)									㉟	607공	-	-	1						신설
	데크로(02-04)									㊱	607공	-	-	1						신설
	데크난간(수평형)									㊲	607공	-	-	37.32M						신설
	데크난간(계단형)									㊳	607공	-	-	7.32M						신설
	스탠드									㊴	607공	19.81	19.81	11.00M						신설
	목재스탠드A									㊵	607공	18.64	18.64	1						신설
	목재스탠드B									㊶	607공	47.26	47.26	1						신설
	목재스탠드C									㊷	607공	61.89	61.89	1						신설
	수변스탠드									㊸	607공	-	-	11.20M						신설
	계단(02-05)									㊹	607공	-	-	1						신설
	석교A									㊺	607공	-	-	1						신설
	석교B									㊻	607공	-	-	1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구조	규모	건축물(㎡)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소계			441.04	441.04	11					441.04	441.04	11						-
	쉼터1	다-1	607공	35.9	35.9	-				다-1	607공	35.9	35.9	-					-
	쉼터2	다-2	607공	51.98	51.98	-				다-2	607공	51.98	51.98	-					-
	쉼터3	다-3	607공	48.73	48.73	-				다-3	607공	48.73	48.73	-					-
	쉼터4	다-4	607공	57.93	57.93	-				다-4	607공	57.93	57.93	-					-
	쉼터5	다-5	607공	140.25	140.25	-				다-5	607공	140.25	140.25	-					-
	쉼터6	다-6	607공	106.25	106.25	-				다-6	607공	106.25	106.25	-					-
	그리드벤치	㉑	607공	-	-	3				㉑	607공	-	-	3					-
	모바일벤치	㉒	607공	-	-	2				㉒	607공	-	-	2					-
	무직벤치	㉓	607공	-	-	2				㉓	607공	-	-	2					-
	블라드벤치	㉔	607공	-	-	4				㉔	607공	-	-	4					-
	앉음벽B	㉕	607공	-	-	17.59M				㉕	607공	-	-	17.59M					-
앉음벽C	㉖	607공	-	-	32.09M				㉖	607공	-	-	32.09M					-	
교양시설	소계			1,907.35	1,907.35		일반목 구조, 단층	3동	366.73	366.73		1,605.09	1,605.09		일반 목구조	3동	366.73	366.73	(감)302.26㎡
	종택	바-1		1,907.35	1,907.35		일반목 구조, 단층	3동	366.73	366.73									폐지
	도서관										바-2		1,605.09	1,605.09		일반 목구조	3동 /1층	366.73	366.73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구 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건축물(㎡)				
								바닥면 적	연면 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 의 시 설	소 계			222.11	222.11	11						93.31	93.31	-			(감)128.8㎡		
	목제데크 (02-02)	㉕	607공	74.51	74.51	1											폐지		
	데크로 (02-01)	㉖	607공	-	-	1											폐지		
	데크로 (02-02)	㉗	607공	-	-	1											폐지		
	데크로 (02-03)	㉘	607공	-	-	1											폐지		
	데크로 (02-04)	㉙	607공	-	-	1											폐지		
	데크난간 (수평형)	㉚	607공	-	-	37.32M											폐지		
	데크난간 (계단형)	㉛	607공	-	-	7.32M											폐지		
	스텐드	㉜	607공	19.81	19.81	11.00M											폐지		
	목제스탠드A	㉝	607공	18.64	18.64	1											폐지		
	목제스탠드B	㉞	607공	47.26	47.26	1											폐지		
	목제스탠드C	㉟	607공	61.89	61.89	1											폐지		
	수변스탠드	㊱	607공	-	-	11.20M											폐지		
	볼라드웬스	㊲	607공	-	-	60개소											폐지		
	계단(02-05)	㊳	607공	-	-	1											폐지		
	석교A	㊴	607공	-	-	1											폐지		
	석교B	㊵	607공	-	-	1											폐지		
	철제웬스	㊶	607공	-	-	136경간											폐지		
	주차장										나-1	607공	93.31	93.31	-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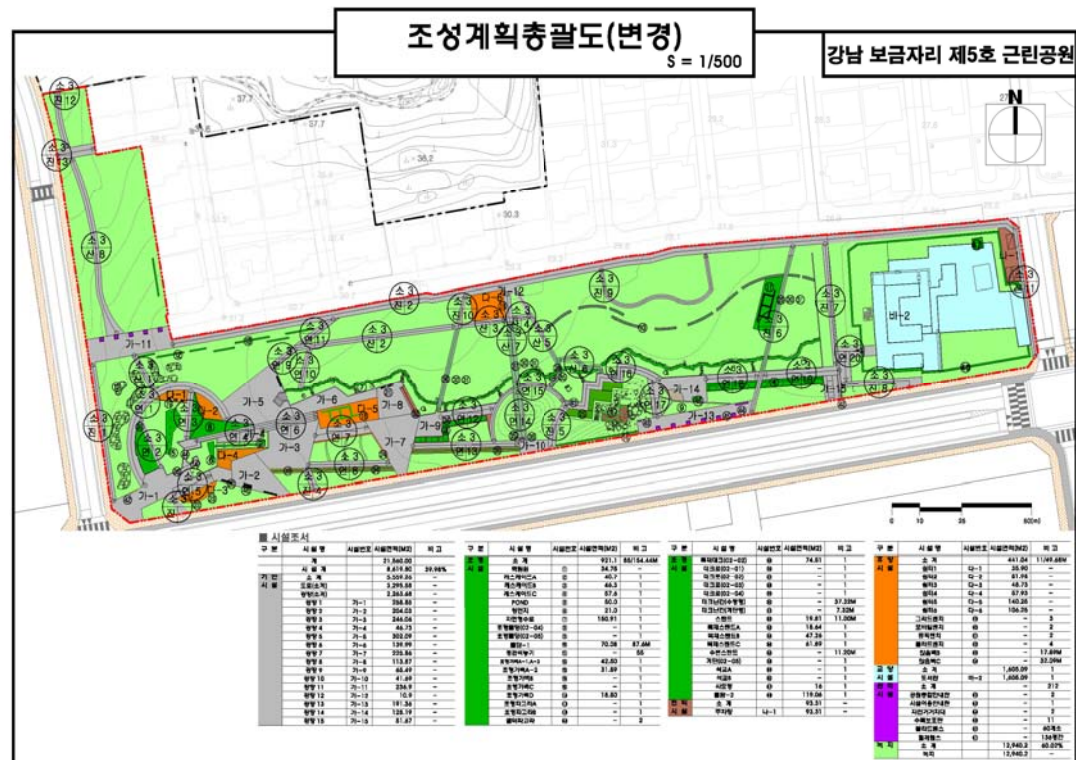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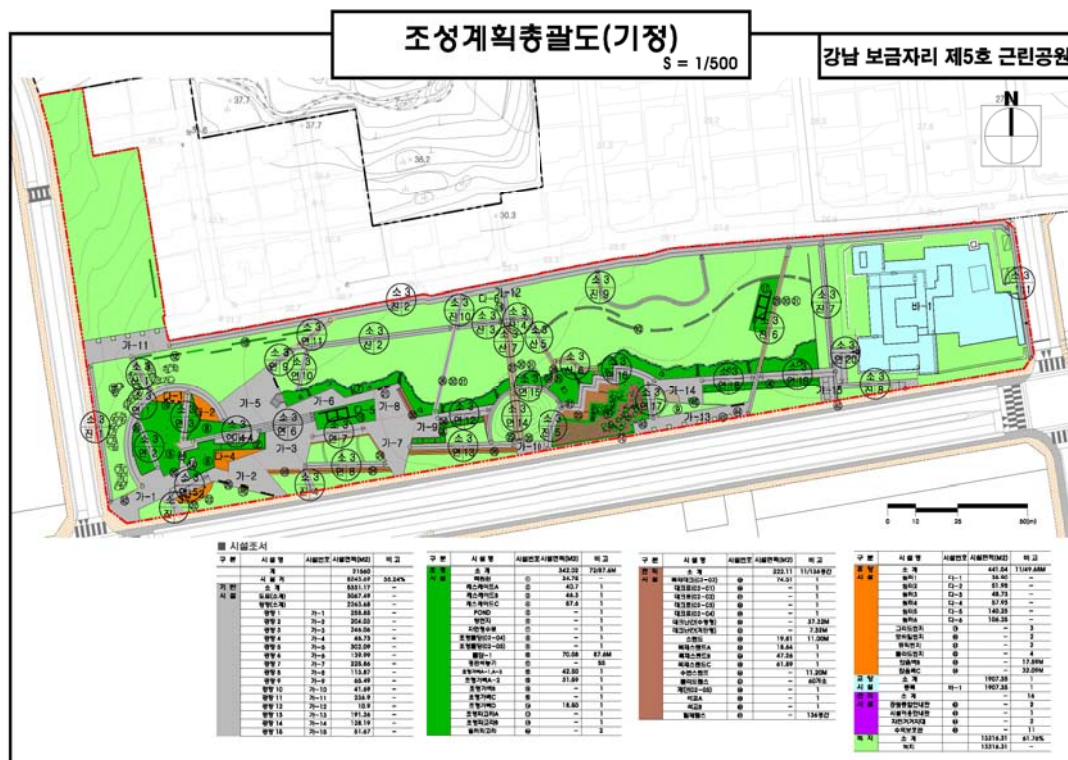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구조	규모	건축물(㎡)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소계				-	16								-	212						-
	시설이용안내판	㉔	607공		-	2					㉔	607공		-	2						-
	공원종합안내판	㉕	607공		-	1					㉕	607공		-	1						-
	자전거거치대	㉖	607공		-	2					㉖	607공		-	2						-
	수목보호판	㉗	607공		-	11					㉗	607공		-	11						-
	볼라드웬스										㉘	607공	-	-	60개소						신설
	철제웬스										㉙	607공	-	-	136경간						신설
	소계			13,316.31	1,3316.31								12,940.2	12,940.2							(감)376.11㎡
녹지	녹지		607공	13,316.31	13,316.31							607공	12,940.2	12,940.2							(감)376.11㎡

다. 공원시설계획도로

○ 도로총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총괄	합 계			1,415.5	3,067.49				
변경					1,512.47	3,295.58				
당초	소로	소 계			1,415.5	3,067.49				
변경					1,512.47	3,295.58				
당초	소로	3	진-1	2	43.09	94.18	진입로	동측경계부	진-2	
		3	진-2	1.5	13.68	20.63	진입로	서측경계부	산-1	
		3	진-3	1.8	304.49	823.19	진입로	남측경계부	가-1	
		3	진-4	2.5	8.13	20.34	진입로	남측경계부	가-3	
		3	진-5	2.7	15.66	42.27	진입로	가-10	연-16	
		3	진-6	1.5	58.65	87.97	진입로	북측경계부	남측경계부	
		3	진-7	2	41.33	81.99	진입로	북측경계부	연-19	
		3	진-8	1.8	64.45	65.97	진입로	남측경계부	가-15	
		3	진-9	1.2	61.59	73.86	진입로	북측경계부	㉔	
		3	진-10	1.5	40.39	60.59	진입로	북측경계부	가-9	
		3	진-11	2	47.12	94.24	진입로	남측경계부	북측경계부	
변경	소로	3	진-12	2	19.27	38.51	진입로	북측경계부	진-13	신설
		3	진-13	3.5	13.7	47.94	진입로	서측경계부	동측경계부	신설
당초	소로	3	연-1	2.8	66.62	195.49	연결로	가-1	㉔	
		3	연-2	1.5	18.17	27.23	연결로	가-1	연-1	
		3	연-3	2.2	16.54	36.36	연결로	연-1	가-1	
		3	연-4	1.5	44.32	66.48	연결로	가-1	다-5	
		3	연-5	3.6	14.52	56.22	연결로	가-1	가-2	
		3	연-6	1.5	20.42	30.63	연결로	가-4	다-5	
		3	연-7	4.1	19.27	80.75	연결로	가-3	가-7	
		3	연-8	2	29.24	58.47	연결로	가-3	가-7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로	3	연-9	1.8	8.51	17.01	연결로	가-5	산-2	
		3	연-10	1.8	14.09	25.27	연결로	㉔	산-2	
		3	연-11	2	13.54	29.03	연결로	북측경계부	산-2	
		3	연-12	3.2	19.14	65.26	연결로	가-9	연-15	
		3	연-13	2	38.03	76.06	연결로	가-7	가-10	
		3	연-14	2.5	17.09	55.59	연결로	가-10	연-15	
		3	연-15	1.5	40.99	61.49	연결로	연-13	진-7	
		3	연-16	2.5	47.6	128.46	연결로	진-7	가-14	
		3	연-17	3	12.63	42.19	연결로	가-13	연-16	
		3	연-18	2.8	18.92	56.75	연결로	가-14	진-8	
		3	연-19	2.8	27.35	82.13	연결로	녹지	진-8	
		3	연-20	3	40.4	65.02	연결로	바-1	진-9	
		3	산-1	1.8	13.77	24.78	산책로	북측경계부	연-1	
		3	산-2	1.8	67.17	120.91	산책로	녹지	진-13	
		3	산-3	1.8	16.44	29.59	산책로	진-3	산-12	
		3	산-4	1.8	5.77	10.38	산책로	산-10	산-12	
		3	산-5	1.5	37.19	55.91	산책로	가-12	연-15	
		3	산-6	1.5	18.31	27.46	산책로	산-11	연-16	
		3	산-7	2.5	30.92	77.34	산책로	가-12	연-15	
변경	소로	3	산-8	2	63.96	141.64	산책로	가-11	진-13	신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호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한국종합무역센터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제안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과 한국종합무역센터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17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11.22.)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I. 결정(변경) 취지

코엑스 일대 광고시설물 설치 제안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특별가로구역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 내 장소성 강화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한국종합무역센터 남측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함.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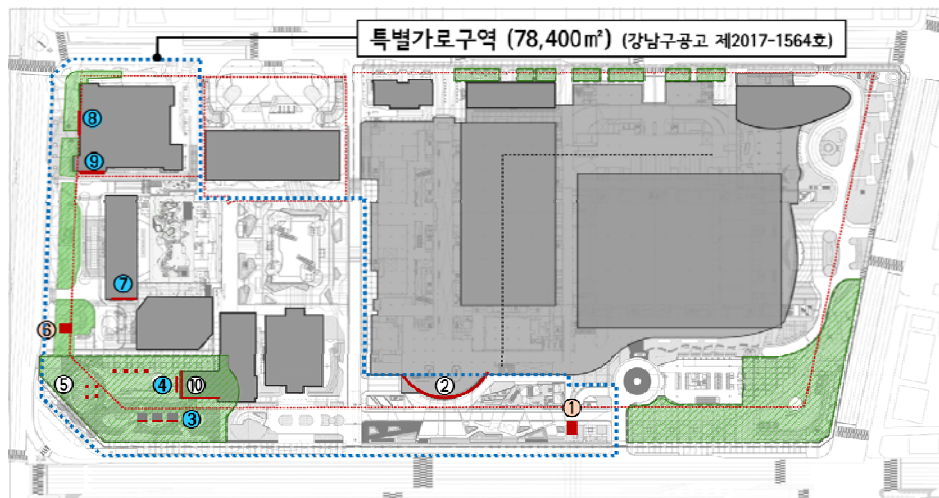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6.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 등에 관한 완화사항’ 신설 (그 외 변경없음)

6.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 등에 관한 완화사항 (신설)

1) 적용 대상

- 특별가로구역 (‘17. 8. 25. 강남구 공고 제2017-1564호) 내 옥외광고물 ※ 지주형 광고물 (①, ⑥) 은 제외



2) 완화 내용

- ③ K-POP 광장 배기구 미디어 : 환기구에 부착 (공개공지 내 허용)
- ④ SM타운 입구 LED 전광판 : 필로티 상부에 설치 (공개공지 내 허용)
- ⑧ 현대백화점 정면 LED 전광판 : 건축물 벽면에 부착 (건축한계선 밖 허용)
- ⑦ 인터컨티넨탈 벽면 L/B : 10층 이상의 건축물 벽면에 부착
- ⑨ 현대백화점 동측 LED 전광판 : 10층 이상의 건축물 벽면에 부착

3)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 내 옥외광고물 설치 면적은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

4) 설치 지침 (유의사항)

가) 설치 위치

-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
- 옥외광고물 인근의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 · 전면공지와의 유기적 기능연계를 고려하여 설치

나) 설치 형태

- 옥외광고물의 부속 기자재 등은 주변 가로와 유사한 색채와 재료를 사용하여 가로 전체의 통일감 구현
- 미디어 형태는 건축물의 입면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입면과 일체감 유도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III.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남권계획반(☎02-2213-8229), 강남구 도시계획과(☎02-3423-6112)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철도, 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공원)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동북권체육공원, 대전차방호시설 평화문화진지, 서울창포원의 접근성을 향상하여 이용시민의 보행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공원)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389	12	집산 도로	435	도봉동 4-8	도봉동 38	일반 도로	-	도봉구고시 제1994-44호 (1994.11.10.)	
변경	중로	3	389	12	집산 도로	435	도봉동 4-8	도봉동 38	일반 도로	-		창포원 경계 조정 (폭원: 0.85m, 연장: 88m)

■ 도로 변경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389		• 도로폭 일부 축소 (폭원: 0.85m, 연장: 88m)	• 버스 회차로 조성을 위한 공원 해제에 따라 도로폭 일부 축소하여 공원 편입

나) 철도

■ 철도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	철도	도시철도	도봉동 4-8일대	5,790	53	5,843	서울시고시 제1992-420호 (1992.12.21.)	• 도봉산역 - 출입구신설 - 도로 중복 결정 (47㎡)

■ 철도 변경결정 사유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철도	• 면적 변경 및 도로와 중복결정 - 5,790㎡ → 5,843㎡ (증 53㎡)	• 역사 출입구 신설로 인한 면적 변경 및 도로 중복결정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	공원	근린공원	도봉동 1-18일대	51,486	-	51,486	서울시 제2010-180호 (2010.5.13.)	구역계 변경

■ 공원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	서울창포원	• 구역계 변경 (면적 변경 없음)	• 버스 회차로 조성으로 인한 구역계 변경

3. 지형도면 :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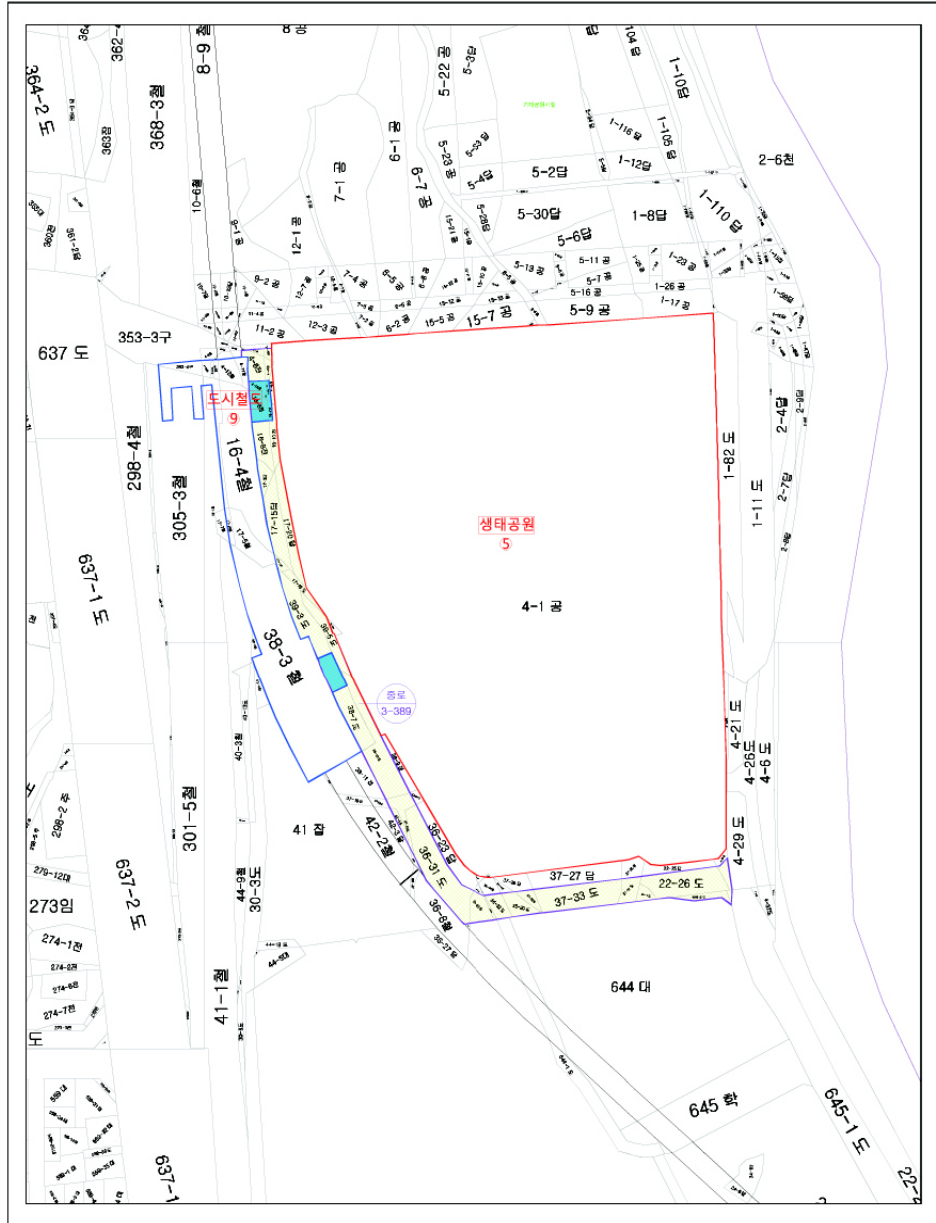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15) 및 동북권사업반(☎ 2133-8441)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철도, 도로) 결정(변경)도 - 지정



지정일자	서울시장
지정일자	2017년 1월 1일
교사연도	2017년
교사번호	제2017- 00
직 성 자	(주)동원기술공사
작성년월일	2017년 1월 1일
지각원소 및 발자	서울시장

구분	입양결과			결혼결과	
	각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소속	-	-	-	-	-
직위	-	-	-	-	-
직명	-	-	-	-	-
성명	-	-	-	-	-
확인원					

서울 377050619	서울 377050620
서울 377050629	서울 37705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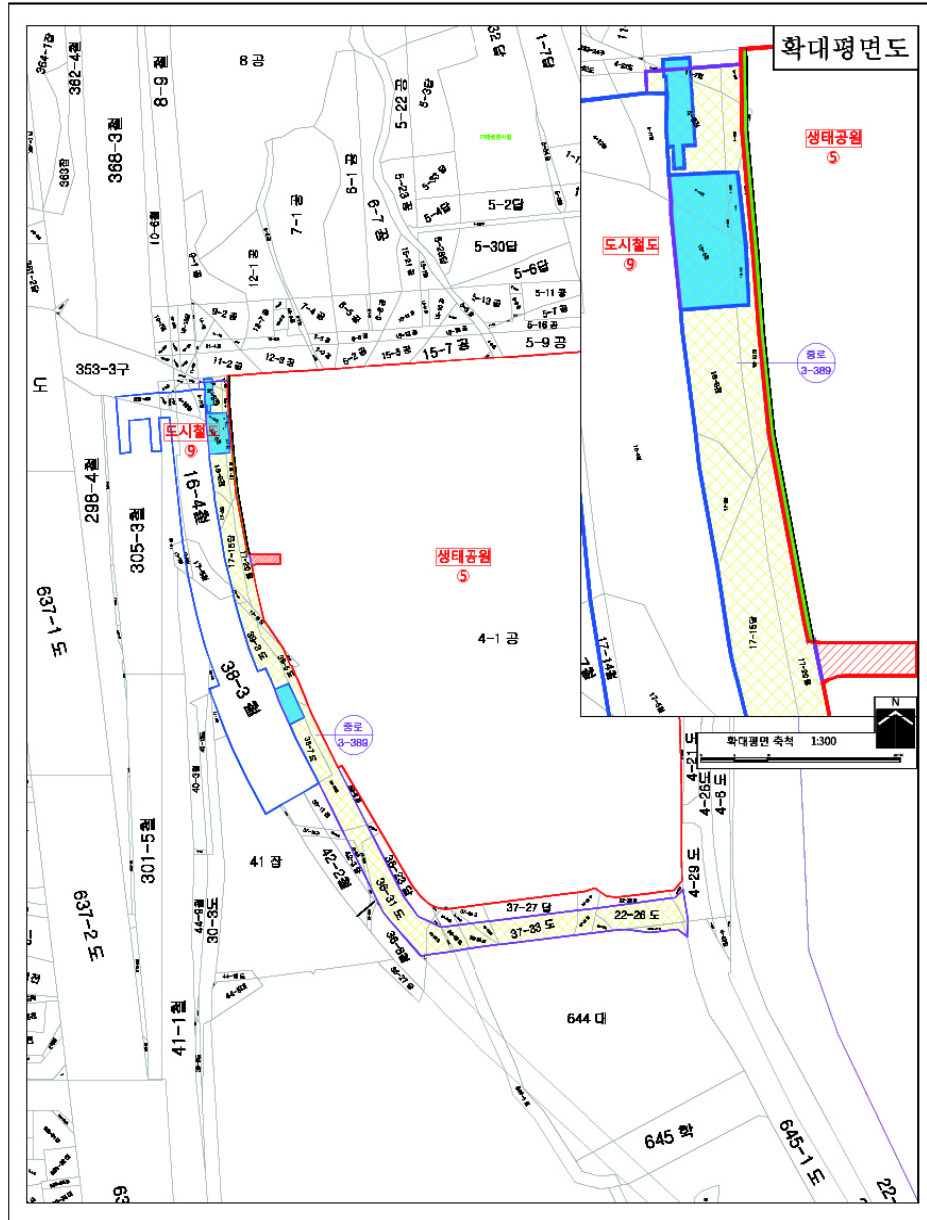
□ 범례

-  도로
 공원
 철도
 철도·도로 중첩

축척 1:1,000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철도, 도로) 결정(변경)도 - 변경



재판장	서문서당
재판장보	2017년 월 일
교사대표	2017년
교사대표	제 2027, 회
국선자	CPA협회 기술공과사
작성인원	2017년 월 일
지적필수 발명자	서문서당

구분	일반과목		필수과목	
	학점	1차 합격자	2차 합격자	1차 합격자
소속	*	*	*	*
직위	-	-	-	-
연령	*	*	*	*
성별	*	*	*	*
특성				

서울 377050619	서울 377050620
서울 377050629	서울 377050630

□ 범례

	도로
	공원
	철도
	공원권립
	공원제외
	철도도로 중복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71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공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예고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1. 예 고 일 : 시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종별	종목 명칭	인정 대상자		
		성 명(분야)	성별	생년월일
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제20호 남이장군사당제	한영서(악사)	남	1947.10.5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4. 예고사유

○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0호 남이장군사당제(악사) 인정 대상자 : 한영서

- 악사 한영서는 오랫동안 남이장군사당제에 악사로 참가하여 서울마을굿 음악의 계보를 잇고 있으며 기량 또한 뛰어남. 남이장군사당제의 전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후진 양성 및 전수교육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 남이장군사당제 보존회 회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며 신뢰도가 높음. 현재 서울굿판에 뛰어난 악사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20호 남이장군사당제 보유자로 충분하다고 판단됨.

5. 의견제출 : 방문제출, 팩스, 또는 우편 제출(공고일부터 30일간)

① 전화 : (02)2133-2616(오문선 주무관) ② 팩스 : (02)768-8873

③ 우편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4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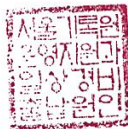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81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칙 제 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장

1. 등록 직인(등록사유 : 2018. 1.4. 字 조직신설에 따른 직인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서울기록원 재무관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2018.1.10	
	서울기록원 지출원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2018.1.10	
	서울기록원 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2018.1.10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18.1.10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18.1.10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18.1.10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18.1.10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18.1.10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18.1.1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84호

설계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 설계업 등록 신고사항

등록번호(업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전문설계업1종 (E-2-529)	새늘엔지니어링(주) (110111-617797)	김진택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58, 417호(성수동1가, 서울숲포휴)	2018.01.1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8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14.3.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27호('15.5.1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종로~대림상가 간 도로개량(세운상가 재생사업)」에 대하여
2. 도로개량(정비) 공사가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완료 공고하고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종로3가 45-4 ~ 충무로4가 125(서측도로)
- 장사동 116-9 ~ 충무로4가 116-2(동측도로)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의 명칭: 종로~대림상가 간 도로개량(세운상가 재생사업)

라. 사업의 규모: 도로개량 폭 4~19m, 연장 460m

- 종로~퇴계로 중 세운상가(가동)~청계·대림상가 구간 공중보행교 신설, 도로(테크)상,하부 보수·보강(정비) 등 도로개량 정비

마.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주소: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바. 사업의 기간: 2015. 5.14.~ 2017.12.25

사. 관계도서: 생략(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95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가.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근거	처분일자
1	서울080019	한호건설(주) (등기상:엘케이디컴퍼니(주))	선권수	강남구 테헤란로 322, 306호 (역삼동)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18.1.11.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근거	처분일자
2	서울080115	송산종합개발(주)	이형원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7(방배동)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18.1.11.
3	서울080390	로빈주택(주)	이태일 (등기상: 함종희)	강남구 언주로174길 30, 지하107호 (신사동)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18.1.11.
4	서울080423	(주)리온자산개발	윤종순	용산구 백범로90길 48, 1층(문배동)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18.1.11.
5	서울120092	나영종합건설(주)	홍영규	마포구 삼개로 16(도화동)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18.1.11.
6	서울130055	(주)정훈종합건설	김재훈	금천구 서부샛길 606, 에이동 206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18.1.11.
7	서울150017	(주)서연건설	장덕수 (등기상: 유제)	금천구 벚꽃로 286, 806호(가산동)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18.1.11.
8	서울150032	퍼스트민서(주)	서민지	강남구 언주로 619, 5층(논현동, 아이올리그린타워) (등기상 : 제주도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470)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18.1.11.
9	서울150072	(주)성신지앤씨	조광재	강남구 언주로30길 13, 2716호(도곡동, 대림아크로텔)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18.1.11.

나. 처분내용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다. 처분사유 : 등록요건(전문인력 미충족) 미달

라. 등록증 반납 :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반납

마. 부동산개발업 계속 수행 :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은 등록취소 처분 후에도 계속 수행 다만, 부동산개발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부동산개발업법 제26조 제1항)

바. 부동산개발업 제한 : 등록취소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원인행위자와 대표자 포함)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이나 등록업체의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부동산개발업법 제6조 제5호)

사.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2133-4684~4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99호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7호(2009.5.28)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00호(2010.7.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8호(2010.1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7호(2011.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9호('12.10.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3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5호(2013.10.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7호(2014.8.1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87호(2015.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3호(2015.1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2017.2.1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3호(2017.9.18.)로 사업계획변경 승인된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계획 개요
가. 도시철도 부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

구분	노선명	가중점	위치 및 주요 경과지	비 고
기정	9호선 3단계	송파구 잠실동~강동구 둔촌동(보훈병원) (L=9.192km)	서울특별시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송파동, 방이동, 오륜동, 하남시 감북3동, 둔촌동	

나. 면적(변경없음) : 200,956.98㎡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철도건설사업
- 2) 명 칭 :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1)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2) 성 명 : 서울특별시장

마.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 기간 : 2009.12.31 ~ 2018.12.31.

바. 사업계획 변경 내용[923공구]

- 토지 분할측량에 의한 지번 조정
- 일시사용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변경

2. 9호선 3단계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변경없음)

- 본선 : 2-1단계(강남구 논현동~송파구 잠실동) 구간 사업완료('15.5월)에 따른 구간분리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모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철도	도시철도 (9호선)	강남구 역삼동 800번지 일대	강동구 둔촌동 566번지 일대	선정릉역(분당선) 종합운동장역(2호선) 석촌역(8호선) 올림픽공원역(5호선) 한국체육대학교 동북중고등학교 서울보훈병원	연장:13,753 *하남시구간 230m포함 폭 :11~42m	190,237.68 *하남시구간 1,491㎡ 포함	'08.11.20	
변경	철도	도시철도 (9호선)	송파구 잠실동 289번지 일대	강동구 둔촌동 566번지 일대	석촌역(8호선) 올림픽공원역(5호선) 한국체육대학교 동북중고등학교 서울보훈병원	연장:9,192 *하남시구간 230m포함 폭 :11~42m	138,949.68 *하남시구간 1,491㎡ 포함	'08.11.20	3단계 구간 만 표기

※ 본선 면적산출은 정거장 부분을 뺀 부분임.

- 정거장 : 2-1단계(926~930정거장) 사업완료('15.5월)에 따른 구간분리(3단계 구간만 표기)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철도	도시철도 (931정거장)	송파구 잠실동 289번지 일대	8,213	-	8,213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932정거장)	송파구 잠실동 157번지 일대	6,002	-	6,002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933정거장)	송파구 석천동 209번지 일대	9,536.4	-	9,536.4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934정거장)	송파구 방이동 95번지 일대	7,986	-	7,986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935정거장)	송파구 방이동 88-17번지 일대	8,644.2	-	8,644.2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936정거장)	송파구 방이동 88-2번지 일대	6,884.8	-	6,884.8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937정거장)	강동구 둔촌동 227-7번지 일대	7,268.9	-	7,268.9	국토부고시 758 ('10.11.04)	
기정	철도	도시철도 (938정거장)	강동구 둔촌동 8-1번지 일대	7,472	-	7,472	국토부고시 758 ('10.11.04)	
계				62,007.3	-	62,007.3		

3.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20일간

4. 열람도서 : 토지 및 물건조서, 용지도, 종·평면도 등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도시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772-7131)

강동구청 도시계획과(☎2147-2995)

※ 공사관련 문의처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지하철923공구 담당(☎772-723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항 1
7. 기타사항 :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수용)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23공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이외 관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 초	강동구 둔촌동 신23-4	임	31	31		이용규	중구 순화동 1-71	강동구 제주시 국민건강보험공 단	세무관리과 세무2과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 의료보험회관(종로지사)	임류 임류 임류	
	1 번 경				31							
2	당 초	강동구 둔촌동 116-10	도	42.0	15		시	서울특별시				
	2 번 경				15							
3	당 초	강동구 둔촌동 105-36	전	61.0	61		에드워드윤 윤석호	312 13번가 스트리트 유닛 비팔리세이드스파크, 뉴저지076 50미합중국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2지구아파트 106-307호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대치동지점)	근저당	
	3 번 경				61							
4	당 초	강동구 둔촌동 신17-5	임	71.0	71		사회복지법인원 주키텔릭사회복 지회 장원기	강원도원주시인동242-16 중구 신당동 644				
	4 번 경				71							
5	당 초	강동구 둔촌동 신16-5	도	2,150.0	22		시	서울특별시				
	5 번 경				22							
6	당 초	강동구 둔촌동 6-16	도	317.0	58		구	강동구				
	6 번 경				58							
7	당 초	강동구 둔촌동 6-3	도	2,251.0	44		시	서울특별시				
	7 번 경				44							
8	당 초	강동구 둔촌동 6-18	도	994.0	29		구	강동구				
	8 번 경				29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9	당 초 변 경	강동구 둔촌동 6-2	대	66,234.0	441		한국보훈 복지공단	서초구 반포동 723-26				토지분할
				65,793.0	0							
10	당 초 변 경	- 둔촌동 6-23	대	-	-		한국보훈 복지공단	서초구 반포동 723-26				토지분할
				333.0	333							
11	당 초 변 경	- 둔촌동 6-24	대	-	-		한국보훈 복지공단	서초구 반포동 723-26				토지분할
				94.0	94							
12	당 초 변 경	- 둔촌동 6-25	대	-	-		한국보훈 복지공단	서초구 반포동 723-26				토지분할
				12.0	12							
13	당 초 변 경	- 둔촌동 6-26	대	-	-		한국보훈 복지공단	서초구 반포동 723-26				토지분할
				2.0	2							
14	당 초 변 경	강동구 둔촌동 산18-1	공	3,136.0	29		시	서울특별시				
					29							
15	당 초 변 경	강동구 둔촌동 산16-3	공	1,984.0	63		시	서울특별시				
					63							
16	당 초 변 경	강동구 둔촌동 8-2	공	630.0	5		시	서울특별시				
					5							
17	당 초 변 경	강동구 둔촌동 산15-1	도	528.0	3		시	서울특별시				
					3							
18	당 초 변 경	강동구 둔촌동 7-4	임	32.0	32		대한불교조계종 보성사	강동구 둔촌동 7				
					32							
19	당 초 변 경	강동구 둔촌동 6-21	도	24.0	24		김차숙	강동구 둔촌동 7	대한불교조계종 보성사	강동구 둔촌동 7	가등기	
					24							
20	당 초 변 경	강동구 둔촌동 산125	공	69,336.0	25		시	서울특별시				
					25							
21	당 초 변 경	강동구 둔촌동 6-14	공	453.0	75		시	서울특별시				
					75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제한 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소		
22	당 초	강동구 둔촌동 6-13	공	631.0	79		시	서울특별시						
	변 경				79									
23	당 초	강동구 둔촌동 6-12	공	976.0	12		시	서울특별시						
	변 경				12									
24	당 초	강동구 둔촌동 산107	도	4,824.0	12		시	서울특별시						
	변 경				12									
25	당 초	강동구 둔촌동 산119	공	21,388.0	86		시	서울특별시						
	변 경				86									
26	당 초	강동구 둔촌동 산17-4	도	631.0	35		구	강동구						
	변 경				35									
합계					1,252									
					1,252									

토 지 조 서 (지하사용)

- 공 구 명 : 지하철 9호선 923공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기도 하남시
○ 사용기간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도시철도 존속시까지

연번	구 분	지 번	지 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성 명	주 소	이해관계인		소유권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 ~ () m 까지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1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신29-8	임	5,656.0	117		영인관광 농원(주)	둔촌동 신32-1				18.88	21.45 ~ 2.11	
					117									
2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신29-7	임	14,014.0	313		영인관광 농원(주)	둔촌동 신32-1				15.34	22.91 ~ 2.36	
					313									
3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신29-3	임	1,293.0	339		영인관광 농원(주) 우재병	둔촌동신32-1 서울중구신당동52-232	영인관광개발	서울강동구 둔촌동 신32-1	근저당	15.34	22.91 ~ 2.11	
					339									
4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214	대	1,006.0	116		기림전자 (주)	강동구 둔촌동 214	조민호 중소기업은행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4-1 주공아파트 205-406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삼전동지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3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3	가임류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16.50	23.32 ~ 3.97	
					116									
5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213-4	도	67.0	15		송종권	강동구 둔촌동 213-5				16.60	23.52 ~ 4.17	
					15									
6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214-1	도	596.0	68		시	서울특별시				14.50	25.32 ~ 2.37	
					68									
7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213-2	전	1,212.0	226		구민서	하남시 동남로 516(갑북동)	㈜세티은행	서울 중구 다동39 (명일동 지점)	근저당 지상권	16.09	24.92 ~ 4.36	
					226									
8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214-2	도	459.0	385		시	서울특별시				16.09	24.92 ~ 3.56	
					385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m 까지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9	당초	강동구 문촌동 산29-20	도	207.0	132		서울특별시 이종국 한종식	서울특별시 성동구중곡동138-1 송파구신천동17-6크로바아파트1-906				16.65	26.16 ~ 5.57	
	변경				132									
10	당초	강동구 문촌동 산29-2	임	190.0	80		이종국 이영신 한종식	성동구 중곡동 138-10 강북구 수유동 56-65 송파구신천동17-6크로바아파트1-906	이정신	서울 도봉구 수유동 56-65	근저당	16.65	26.16 ~ 5.57	
	변경				80									
11	당초	강동구 문촌동 산29-11	임	1,984.0	24		이석진 이차웅 임경선 유애숙	송파구 방이동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112-502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광정아파트 6동 105호 송파구 가락동 478 가락주공아파트 5-206 송파구 오금동 44 현대아파트 36-101	도정열	부산 남구 대연동 1808 대연비치 202동 105호	근저당	17.82	25.92 ~ 6.57	
	변경				24									
12	당초	강동구 문촌동 산29-1	임	3,157.0	2		전주남	강동구 문촌동 203				17.89	26.16 ~ 6.81	
	변경				2									
13	당초	강동구 문촌동 산29-18	도	138.0	115		문태웅 서울특별시	서초구반포동1172반포APT62-30 7호 서울특별시				17.40	26.89 ~ 6.58	
	변경				115									
14	당초	강동구 문촌동 산24-3	도	140.0	72		국	건설부				17.64	26.88 ~ 6.80	
	변경				72									
15	당초	강동구 문촌동 산18-29	임	41.0	10		안철중	문촌동 182				17.88	26.64 ~ 7.28	
	변경				10									
16	당초	강동구 문촌동 산18-28	도	155.0	103		시	서울특별시				17.61	27.12 ~ 7.76	
	변경				103									

연번	구 분	지 번	지 목	편면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관리의 종류 및내용	토파 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m 까지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7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8-26	도	1,435.0	84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한 국기독교장 로회총회유 지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연지동136-46				16.62	28.09 ~ 7.29	
	변경				845									
18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24-2	도	63.0	40		시	서울특별시				16.28	28.09 ~ 8.73	
	변경				40									
19	당초	강동구 둔촌동 116-5	도	4,340.0	2,800		시	서울특별시				5.02	30.71 ~ 8.97	
	변경				2,800									
20	당초	강동구 둔촌동 118-2	도	509.0	35		시	서울특별시				5.25	30.48 ~ 16.29	
	변경				35									
21	당초	강동구 둔촌동 116-10	도	42.0	21		시	서울특별시				4.59	30.71 ~ 16.76	
	변경				21									
22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8-24	도	1,172.0	539		시	서울특별시				7.97	27.89 ~ 17.73	
	변경				539									
23	당초	강동구 둔촌동 105-9	도	8,578.0	4,409		시	서울특별시				8.18	30.39 ~ 19.61	
	변경				4,409									
24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7-4	임	631.0	237		구	강동구				3.59	37.57 ~ 21.67	
	변경		도		237									
25	당초	강동구 둔촌동 6-16	도	317.0	27		구	강동구				3.59	37.57 ~ 21.67	
	변경				27									
26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6-5	도	2,150.0	2,047		시	서울특별시				3.50	37.65 ~ 17.42	
	변경				2,047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 ~ () m 까지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7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6-3	공	1,984.0	111		시	서울특별시				2.86	37.64 ~ 21.66	
					111									
28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8-2	공	630.0	243		시	서울특별시				1.43	37.77 ~ 21.77	
					243									
29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8-1	도	1,546.0	1,546		시	서울특별시				1.39	37.81 ~ 21.75	
					1,546									
30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6-7	임	441.0	106		대한불교조 계종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1.88	36.96 ~ 21.06	
					106									
31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7-1	임	427.0	122		대한불교조 계종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0.94	37.81 ~ 21.90	
					122									
32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7	중	898.0	4		대한불교조 계종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1.86	36.83 ~ 20.93	
					4									
33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4-2	임	1,264	12		김치숙	강동구 둔촌동 산7	대한불교조 계종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가등기	1.86	36.83 ~ 20.93	
					12									
34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6-17	도	13	13		김치숙	강동구 둔촌동 산7	대한불교조 계종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가등기	1.86	36.83 ~ 20.93	
					13									
35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6-20	도	4.0	4		김치숙	강동구 둔촌동 산7	대한불교조 계종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가등기	1.86	36.83 ~ 20.93	
					4									
36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25	공	69,336.0	2		시	서울특별시				0.89	37.87 ~ 21.97	
					2									
37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6-14	공	453.0	177		시	서울특별시				0.93	37.91 ~ 22.01	
					177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m 까지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38	단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6-13	공	631.0	95		시	서울특별시				2.73	36.16 ~ 22.35	
					95									
39	단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6-12	공	976.0	7		시	서울특별시				2.75	36.18 ~ 22.37	
					7									
40	단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5-1	도	528.0	525		시	서울특별시				0.94	37.81 ~ 21.91	
					525									
41	단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6-18	도	994.0	298		구	강동구				0.76	37.93 ~ 21.67	
					298									
42	단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6-3	도	2,251.0	2,162		시	서울특별시				0.90	37.93 ~ 21.89	
					2,162									
43	단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5	도	2,383.0	1,743		시	서울특별시				7.29	31.90 ~ 21.39	
					1,743									
44	단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5-1	도	506.0	314		시	서울특별시				8.40	30.92 ~ 22.71	
					314									
45	단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4	도	1,276.0	817		시	서울특별시				8.41	31.04 ~ 22.75	
					817									
46	단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1-2	도	1,931.0	1,076		시	서울특별시				7.99	31.67 ~ 22.25	
					1,076									
47	단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3-8	도	38.0	18		시	서울특별시				8.76	31.00 ~ 23.19	
					18									

연번	구 분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관리의 종류 및 내용	토 피 심 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 ~ () m 까지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48	당초	강동구 둔촌동 572	도	1,208.0	555		시	서울특별시				8.77	31.13 ~ 23.20	
	변경				555									
49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46	도	403.0	256		시	서울특별시				8.77	31.13 ~ 23.32	
	변경				256									
50	당초	강동구 둔촌동 570	도	1,053.0	443		시	서울특별시				8.21	31.24 ~ 23.43	
	변경				443									
51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39	도	987.0	414		시	서울특별시				7.65	31.28 ~ 23.47	
	변경				414									
52	당초	강동구 둔촌동 567	도	1,504.0	775		시	서울특별시				6.66	31.56 ~ 22.82	
	변경				775									
53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23	도	1,665.0	586		시	서울특별시				6.54	31.48 ~ 22.82	
	변경				586									
54	당초	강동구 둔촌동 566	도	2,214.0	687		시	서울특별시				8.12	31.20 ~ 22.88	
	변경				687									
55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17	도	136.0	29		시	서울특별시				9.28	31.01 ~ 23.20	
	변경				29									
56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07	도	4,824.0	801		시	서울특별시				4.42	36.70 ~ 18.94	
	변경				801									
57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19	공	21,388.0	72		시	서울특별시				4.42	36.70 ~ 18.94	
	변경				72									
58	당초	하남시 김북동 491	도	714.0	95		국	건설부				14.50	25.32 ~ 2.37	
	변경				95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m 까지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59	당초	하남시 감북동 457-2	도	1,061.0	223		국	건설교통부				15.72	22.92 ~ 2.77	
	변경				223									
60	당초	하남시 감북동 458-2	도	982.0	641		국	건설부				15.91	24.52 ~ 3.57	
	변경				641									
61	당초	하남시 감북동 458-3	도	583.0	37		시	서울특별시				16.49	24.52 ~ 4.37	
	변경				37									
62	당초	하남시 감북동 459-10	도	162.0	45		시	서울특별시				17.26	24.92 ~ 5.57	
	변경				45									
63	당초	하남시 감북동 459-2	도	317.0	237		국	건설부				16.46	25.72 ~ 5.17	
	변경				237									
64	당초	하남시 감북동 459-9	도	23.0	5		국	건설부				17.26	24.92 ~ 5.57	
	변경				5									
65	당초	하남시 감북동 459-8	도	229.0	68		시	서울특별시				17.49	25.32 ~ 5.97	
	변경				68									
66	당초	하남시 감북동 산119-8	임	216.0	46		전대옥 전수정 전소영	남양주시주안면능래리617 용산구이촌동395대림아파트103-904 대전유성구전민동464-1엑스포APT30 5-1003				17.35	26.39 ~ 6.16	
	변경				46									
67	당초	하남시 감북동 산119-10	도	66.0	21		시	서울특별시				17.72	25.72 ~ 6.37	
	변경				21									
68	당초	하남시 감북동 산119-9	도	164.0	73		시	서울특별시				17.89	26.16 ~ 6.81	
	변경				73									
합계	당초				28,621									
	변경				28,621									

토 지 조 서 (일시사용)

○ 공 구 명 : 지하철 9호선 923공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사용기간(변경없음) : 본선box 및 본선환기구 구조물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17.10.30까지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이외 관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지적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 초	강동구 둔촌동118-7	답	146	3		재단법인한국기독교 교장포회총회유지 재단	종로구 연지동 136-46				본선환기구 (937S2)
	변 경				3							
2	당 초	강동구 둔촌동18-24	도	1,172	149		시	서울특별시				
	변 경				149							
3	당 초	강동구 둔촌동118-2	도	509	39		시	서울특별시				
	변 경				39							
4	당 초	강동구 둔촌동 산23-3	임	99	16		이용구	종구순화동 1-71	강동구 제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무관리과 세무2과 서울 마포구 영리동 168-9 의료보험화관 (종로지사)	임류 임류 임류	본선환기구 (937S2)
	변 경				16							
5	당 초	강동구 둔촌동117-2	도	661	2		시	서울특별시				
	변 경				2							
6	당 초	강동구 둔촌동116-11	도	967	4		시	서울특별시				
	변 경				4							
7	당 초	강동구 둔촌동116-10	도	42	5		시	서울특별시				
	변 경				5							
8	당 초	강동구 둔촌동116-5	도	4,340	234		시	서울특별시				
	변 경				234							
9	당 초	강동구 둔촌동105-9	도	8,578	970		시	서울특별시				
	변 경				970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지적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0	당 초	강동구 둔촌동105-32	전	330	2		김태수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57길 16 1005호(마천동금호아파트)	마천새마을금고	서울 송파구 마천로 45길 13(마천동)	근저당	본선BOX
	변 경				2				마천새마을금고	서울 송파구 마천로 45길 13(마천동)	지상권	
11	당 초	강동구 둔촌동105-33	전	433	5		(당초)김성연 (변경)주용성	서울시 강동구 둔남로 588 1층호(둔촌동)	주)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근저당	본선BOX
	변 경				5				주)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지상권	
12	당 초	강동구 둔촌동105-34	차	200	14		(당초)김성연 (변경)주용성	서울시 강동구 둔남로 588 1층호(둔촌동)	주용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52 흥덕마을 11단지 경남아너스빌 1103-1103	지상권	본선BOX
	변 경				14							
13	당 초	강동구 둔촌동105-12	대	330	6		(당초)김성연 (변경)주용성	서울시 강동구 둔남로 588 1층호(둔촌동)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	본선BOX
	변 경				6				㈜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근저당	
14	당 초	강동구 둔촌동105-1	전	2,197	30		에드워드윤 윤석호	312 13번가 스트리트 유닛 비 팔라세이드스파크, 뉴저지0765 0미합중국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2지구아파트 106-307호	국	반포세무서	가처분 결정	본선환기구 (937E2)
	변 경				30						근저당	
15	당 초	강동구 둔촌동 산17-2	임	1,722	49		사회복지법인원주 기톨릭사 회복지회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753-1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근저당	본선환기구 (937E2)
	변 경				49							

○ 사용기간(변경없음) : 정거장구조물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17.12.31까지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관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6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7-4	도	631	87		구	강동구				
	변경				87							
17	당초	강동구 둔촌동6-16	도	317	12		구	강동구				
	변경				12							
18	당초	강동구 둔촌동6-2	대	66,234	370		한국보훈복지공단	서초구 반포동 723-26				938정거장
	변경			65,793	370							
19	당초	강동구 둔촌동산16-5	도	2,150	62		시	서울특별시				
	변경				62							
20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8-1	공	3,136	68		시	서울특별시				
	변경				68							
21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6-3	공	1,984	80		시	서울특별시				
	변경				80							
22	당초	강동구 둔촌동8-2	공	630	61		시	서울특별시				
	변경				61							
23	당초	강동구 둔촌동 산16-7	임	441	135		대한불교조계종 보성사 대표자 김차숙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서울시		구분 지상권	938정거장
	변경				135							
24	당초	강동구 둔촌동7-1	임	427	167		대한불교조계종보 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서울시		구분 지상권	938정거장
	변경				167							
25	당초	강동구 둔촌동7	죽	898	9		대한불교조계종보 성사	강동구 둔촌동 7	서울시		구분 지상권	938정거장
	변경				9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6	당 초	강동구 둔촌동 산14-2	임	1,264	30		김치숙	강동구 둔촌동 산 7	대한불교조계종 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가등기 구분 지상권	938정거장
	변 경				30							
27	당 초	강동구 둔촌동 산125	공	69,336	18		시	서울특별시				
	변 경				18							
28	당 초	강동구 둔촌동 6-17	도	13	13		김치숙	강동구 둔촌동 산7	대한불교조계종 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가등기 구분 지상권	938정거장
	변 경				13							
29	당 초	강동구 둔촌동 6-20	도	4	4		김치숙	강동구 둔촌동 산7	대한불교조계종 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가등기 구분 지상권	938정거장
	변 경				4							
30	당 초	강동구 둔촌동6-14	공	453	73		시	서울특별시				
	변 경				73							

○ 사용기간(변경없음) : 본선BOX 및 본선환기구 구조물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17.12.31까지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31	당 초	강동구 둔촌동6-13	공	631	43		시	서울특별시				
	변 경				43							
32	당 초	강동구 둔촌동6-12	공	976	15		시	서울특별시				
	변 경				15							
33	당 초	강동구 둔촌동 산125	공	69,336	7		시	서울특별시				
	변 경				7							
34	당 초	강동구 둔촌동6-3	도	2,251	30		시	서울특별시				
	변 경				30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35	당 초 변 경	강동구 둔촌동6-18	도	994	91 91		구	강동구				
36	당 초 변 경	강동구 둔촌동 산11-5	도	2,383	304 304		시	서울특별시				
37	당 초 변 경	강동구 둔촌동5-1	도	506	42 42		시	서울특별시				
38	당 초 변 경	강동구 둔촌동 산11-4	도	1,276	166 166		시	서울특별시				
39	당 초 변 경	강동구 둔촌동 산125	공	69,336	3 3		시	서울특별시				
40	당 초 변 경	강동구 둔촌동1-2	도	1,931	230 230		시	서울특별시				
41	당 초 변 경	강동구 둔촌동3-8	도	38	8 8		시	서울특별시				
42	당 초 변 경	강동구 둔촌동572	도	1,208	153 153		시	서울특별시				
43	당 초 변 경	강동구 둔촌동 산146	도	403	71 71		시	서울특별시				
44	당 초 변 경	강동구 둔촌동570	도	1,053	123 123		시	서울특별시				
45	당 초 변 경	강동구 둔촌동 산139	도	987	119 119		시	서울특별시				
46	당 초 변 경	강동구 둔촌동567	도	1,504	143 143		시	서울특별시				

연번	구분	지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역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7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23	도	1,665	236		시	서울특별시				
					236							
48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566	도	2,214	183		시	서울특별시				
					183							
49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19	공	21,388	77		시	서울특별시				
					77							
50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17	도	136	13		시	서울특별시				
					13							
51	당초 변경	강동구 둔촌동 산107	도	4,824	148		시	서울특별시				
					148							
합계	당초				4,922							
	변경				4,922							

별첨 1 물건조서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23공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면 표시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종 류	수 량	소유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당초 면적	둔촌동 산16-7	임	헨스	메쉬헨스	6.1m	대한불교조계종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938 정거장
2	당초 면적	둔촌동 105-26	차	화 단		9.6㎡	강귀옥	영등포구 도림동 144-18	본선 환기구 937E2
3	당초 면적	둔촌동 6-2	대			91㎡	한국보훈복지공단	서초구 반포동 733-26	938정거장 출입구
4	당초 면적	둔촌동 105-26	차	정원수		4그루	강귀옥	영등포구 도림동 144-18	본선 환기구 937E2
5	당초 면적	둔촌동 6-2	대			23그루	한국보훈복지공단	서초구 반포동 733-26	938 정거장
6	당초 면적	둔촌동 산16-7	임			117그루	대한불교조계종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7	
7	당초 면적	둔촌동 6-2	대	소각로 배기구	PVC 배기덕트	2개	한국보훈복지공단	서초구 반포동 733-26	938 정거장
8	당초 면적	둔촌동 105-26	차	공원등		1개	강귀옥	영등포구 도림동 144-18	본선 환기구 937E2
9	당초 면적	둔촌동 6-2	대			3개	한국보훈복지공단	서초구 반포동 733-26	938 정거장
10	당초 면적								
11	당초 면적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02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1. 업 체 명 : 주식회사 조인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한봉규(1963. 2. 7.)
3. 영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407호
(구로동, 대륭포스타워3차)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27호
6. 등록일자 : 2018. 1.11.
7. 전화번호 : 02-2028-016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06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지정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으로 지정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1. 휴면조합

연번	조합명	이사장	설립일	주사무소(등기)	지정사유
1	서울도봉강북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정희	2012.12.13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17길 51 (쌍문동 120-1)	· 소재지 불분명 · 목적사업 부재
2	잠실올림픽로 사업협동조합	(공석)	2010.11.12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1 2층 (잠실동 250-13 2층)	· 소재지 불분명 · 목적사업 부재
3	한국합성수지 사업협동조합	(공석)	2007. 4.21	서울 중구 마른내로 138 한국프라스틱회관 5층 (쌍림동 146-2)	· 목적사업 부재 ·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 휴면조합 지정일 : 2018년 1월 12일

2. 문의처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02-2133-5241,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3. 유의사항

- 휴면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휴면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접수 후 활동을 재개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 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0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공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공무원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복무관리 및 부서별 정원조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부서별 정원조정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및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 전부개정 계획(인사과-35623, 2017.12.22.)을 반영하여 총 정원 2,198명을 1,696명으로 조정(안 제7조 및 별표1)

※ 청원경찰 정원은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으로 이관

- 나. 청원경찰 관련규정의 이관에 따른 관련내용 삭제(안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4조제8호, 제13조제1항, 제35조, 별표1)

- 무기계약직과 구별되는 청원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 내 청원경찰 관련규정을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으로 이관

- 무기계약직과 구별되는 청원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 내 청원경찰 관련규정을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으로 이관

※ 공무원 관리규정 적용대상 ; (기존)무기계약직+청원경찰

→ (변경)무기계약직

- 다. 임용예정자의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제출하도록 명시(안 제9조제5항)

- 사용부서의 채용신체검사 제출 안내 시, 혼선 방지
 - 라. 채용결격사유외 지방공무원법 준용으로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회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10조)
 - 신원조회 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근거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이용
 - 마. 공무원 근무성적평가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안 제15조제2항)
 - 호봉제로 운영 중인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활용도가 공무원 보다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평가횟수 조정함
 - 바. 정원표의 부서별 구분 정비(안 별표 1)
 - 푸른도시국, 안전총괄본부 및 산하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실 사용부서로 재배정
 - 사. 근로계약서 용어 정비(안 별지 제4호서식)
 - 계약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서 상의 ‘갑을(甲乙)’ 용어를 ‘사용자 및 근로자’로 대체
3. 의견제출
-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8. 2. 7.(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 2133-6735, FAX 2133-0822, E-mail : ramen777@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이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 개정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09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계획 및 보호구역 조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계획 및 보호구역 조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계획

- 지정예정 종별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 지정예정 명칭 : 봉은사 판전(奉恩寺 板殿)

○ 문화재 지정계획 대상 : 판전 건물 1동, 토지 1필지(총 210.7㎡)

지정대상	지번	지적(㎡)	지정 수량 · 면적(㎡)	소유자
봉은사 판전	강남구 삼성동 73	-	1동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토지 (판전 점유 부분)	"	61,428.0	210.7	
	합계	총 1필지	210.7	

○ 보호구역 지정계획 대상 : 토지 총 4필지(총 65,675.3㎡)

지번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강남구 삼성동 73	61,428.0	60,873.0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강남구 삼성동 73-1	1,722.2	1,722.2	
강남구 삼성동 73-2	2,765.4	2,765.4	
강남구 삼성동 73-3	314.7	314.7	
합계	총 4필지	65,675.3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64호 “봉은사 선불당”의 보호구역과 같음

○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계획도면 : <별첨1> 참조

○ 공고 사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봉은사 판전(奉恩寺 板殿)”은 1856년에 창건되고 1878년 중수된 단층 맞배집 목조 건축물로, 봉은사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 건물 내에 봉안되어 있는 ‘경기좌도광주수도산봉은사화엄판전신건기(京畿左道廣州修道山奉恩寺華嚴板殿新建記)’ 및 ‘화엄판전번와축장중수록(華嚴板殿燔瓦築牆重修錄)’과 2012년 수리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화엄판전상량문(華嚴板殿上樑文)’ 등을 통해 창건 및 중수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하다.
- 본 건물은 경관을 보관하는 장경각(藏經閣)인 동시에 예불을 드리는 불전(佛殿)으로, 경관보관 및 예불 기능을 병용하기 위하여 독특한 창호 구성을 갖추는 등 건축적 희소성이 있다.
- 정면 어칸 처마에 걸려 있는 현판에는 ‘판전(板殿)’ 두 글자가 양각되어 있는데 추사 김정희(1786~1856)의 글씨이며 현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83호로 지정되어 있다.
- 상기의 사유로 “봉은사 판전(奉恩寺 板殿)”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

2.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계획

- 지정종별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64호
- 지정명칭 : 봉은사 선불당(奉恩寺 選佛堂)
- 문화재 지정 현황 : 선불당 건물 1동, 토지 1필지(총 344.3㎡)

지정대상	지번	지적(m ²)	지정 수량 · 면적(m ²)	소유자
봉은사 선불당	강남구 삼성동 73	-	1동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토지 (선불당 점유 부분)	"	61,428.0	344.3	
	합계	총 1필지	344.3	

- 보호구역 조정계획 대상 : 토지 총 4필지(총 65,675.3㎡)

조정 전				조정 후			
지 번	지 적 (단위:㎡)	지정면적 (단위:㎡)	소유자	지 번	지 적 (단위:㎡)	지정면적 (단위:㎡)	소유자
강남구 삼성동 73	61,428.0	61,083.7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강남구 삼성동 73	61,428.0	60,873.0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강남구 삼성동 73-1	1,722.2	1,722.2		강남구 삼성동 73-1	1,722.2	1,722.2	
강남구 삼성동 73-2	2,765.4	2,765.4		강남구 삼성동 73-2	2,765.4	2,765.4	
강남구 삼성동 73-3	314.7	314.7		강남구 삼성동 73-3	314.7	314.7	
합계	총 4필지	65,886.0		합계	총 4필지	65,675.3	

-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계획도면 : <별첨1> 참조
- 공고 사유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64호 “봉은사 선불당”의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봉은사 판전”이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계획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조(정의) 1항 3호에 의거 기존 보호구역 지정면적에서 “봉은사 판전”의 점유면적을 제외함

3. 문화재 지정 시 주요 법적 제약사항

- 문화재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준용규정) 제2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0조(허가사항) · 제21조(허가기준) · 제22조(허가사항의 취소) · 제24조(신고사항) · 제25조(행정명령 및 조치), 제49조(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 · 제50조(문화재수리 등의 시행계획 수립),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허가신청) · 제19조(경미한 행위의 범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규정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함)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함. 다만, 지정문화재 등 중 시장이 지정한 동산문화재, 일반묘역, 일반묘역 안의 신도비와 보호구역지정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정문화재 등은 제외함

4. 의견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담당자 : 김기훈)

① 전화 : (02) 2133-2631

② 팩스 : (02) 768-8873

③ 우편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 강남구청 문화체육과

① 전화 : (02) 3423-5938

② 팩스 : (02) 3423-8839

③ 우편 :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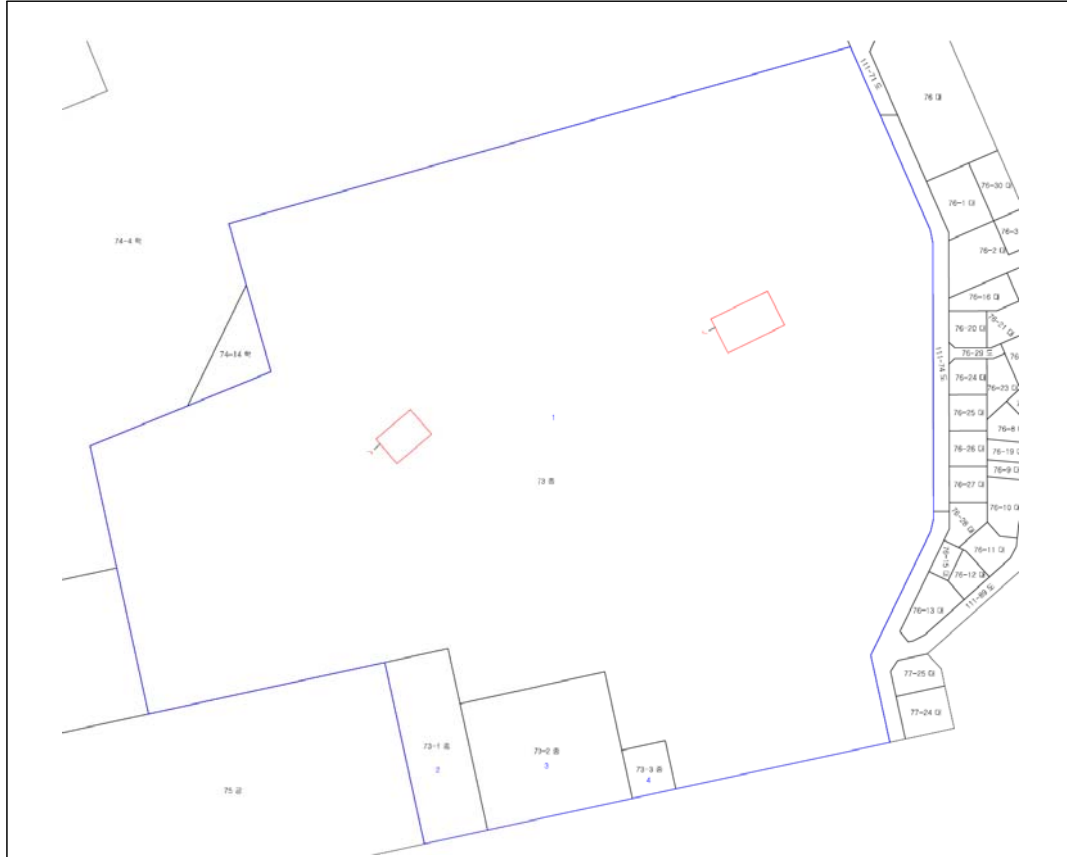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유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계획도면



범례	명칭
	봉은사 판전
	봉은사 선불당
	보호구역

구분	소재지	지적(㎡)	지정면적(㎡)
문화재	강남구 삼성동 73 ㄱ	61,428.0	210.7
	강남구 삼성동 73 ㄴ	61,428.0	344.3
보호구역	강남구 삼성동 73 1	61,428.0	60,873.0
	강남구 삼성동 73-1 2	1,722.2	1,722.2
	강남구 삼성동 73-2 3	2,765.4	2,765.4
	강남구 삼성동 73-3 4	314.7	314.7
	총계	총 4필지	65,675.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11호
시민의 숲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758호(1983.07.06.)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64호(1987.09.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1호(2008.11.06.)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초구 양재동 236번지 일대 시민의 숲 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1. 공 원 명 : 시민의 숲 근린공원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6번지 일원
3. 공원조성계획변경(안)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58,991.5	56,115.17	15	4,652.7	6,841.64	206	258,991.5	56,225.42	15동	4,252.94	6,441.88	207	
기 반 시 설	소계	23,239.35	23,239.35					23,239.35	23,239.35					
	도로	20,060	20,060					20,060	20,060					
	광장	3,179.35	3,179.35					3,179.35	3,179.35					
조경시설		7,618.4	7,618.4				5	7,618.40	7,618.40				5	
휴양시설							1						1	
유희시설														
운동시설		11,917.02	11,917.02	1	2,154.6	2,154.6		11,917.02	11,917.02	1	2,154.6	2,154.6		
교양시설		8,709.79	8,709.79	3	1,571.75	3,384.85	5	8,820.04	8,820.04	3	1,682	3,495.1	6	증)110.25㎡
편익시설		3,381.56	3,381.56	8	410.8	410.8	9	3,381.56	3,381.56	8	410.8	410.8	9	
관리시설		1,249.05	1,249.05	3	515.55	891.39	186	1,249.05	1,249.05	3	515.55	891.39	186	
녹지·기타		202,876.33						202,766.08						감)110.25㎡
시설율(40%이하)		(56,115.17 / 258,991.50) x 100 = 21.67%						(56,225.42 / 258,991.50) x 100 = 21.71%						증)0.04%
건폐율(10%이하)		(4,652.7 / 258,991.50) x 100 = 1.80%						(4,252.94 / 258,991.50) x 100 = 1.64%						증)0.16%

4.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무교동 별관 8층 산지방재과(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7. 안내사항 :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작성하시어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산지방재과 (☎ 02-2133-218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1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석유판매업 등록취소)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1. 공고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01.18. ~ 2018.02.01. (15일간)
3. 공고대상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일시	위반사항	처분내용
제이에이치 에너지그룹	김정환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320, 101동 1103호(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	2017. 11.17.	신고사유(폐업 등)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신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자진납부 800천원, 부과예정금액 1,000천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석유판매업 등록취소)

4. 법적근거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제2항

나.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제49조, 제40조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견제출 기한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감경)

5. 청문일시/장소 : 2018.02. 01.(목) 10:00~11:00/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

6. 과태료 납부기한 : 2018.02.01.까지

7. 유의사항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체납된 과

태료에 대해 5%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이후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증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의견질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15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등록 직인(등록사유 : 2018. 1.4. 字 조직신설에 따른 직인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서울기록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재무관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2018.1.15	
	서울기록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출원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2018.1.15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서울기록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2018.1.15	
	서울기록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18.1.1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17호

중랑캠핑숲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26호(2007.11.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호(2009.1.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65호(2015.3.1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랑구 망우동 산 33번지 일대 중랑캠핑숲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중랑캠핑숲근린공원
2. 위 치 : 중랑구 망우동 산 33번지 일대
3. 면 적 : 147,666.00㎡
4. 조성계획 변경(안)
 - 주요(변경) 내용 : 교양시설 (독서실 → 도서관)

시설명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양원 청소년 독서실(변경전)	468.09	485.39	17.3㎡ 증
양원 꿈꾸는 도서관(변경후)	965.64	970.78	5.14㎡ 증

5.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02-3783-5966)
8. 본 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고 시

◆도봉구고시 제2018-6호

도시계획시설[둘리(쌍문)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 8. 6.)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7-22호(2017. 1. 2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둘리(쌍문)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7-123호(2017. 2. 9)로 열람 공고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17-24호(2017. 3. 2)로 도시계획시설[둘리(쌍문)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2017-92호(2017. 8. 3)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한 둘리(쌍문)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2091-37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월 18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산238-1 등 3필지

나.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둘리(쌍문)근린공원 조성

라. 사업의 규모 (변경)

- 규 모 : 기정 22,651㎡
변경 14,805㎡

마. 사업내용(변경 없음)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의 보상

바. 사업기간(변경 없음) : 실시계획 인가일 ~ 2019.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변경) : 따로 붙임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2091-3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변경구 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성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 소	권리의 정류 및 내용
합계	기정				22,651						
	변경				14,805						
1	기정	쌍문동 산238-1	임야	3,463	3,463	홍성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 12동 504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변경	쌍문동 산238-1	임야	1,733	1,733	서울특별시					
2	기정	쌍문동 산249	임야	13,785	13,785	박정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80길 6-23, 102동 702호(도봉동, 동아 에코빌아파트)	1/3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도산로지점)	근저당권
						이은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50길 50, 211동 203호 (고덕동, 레미안힐스테이트고덕)	1/3			
						임영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소래비로 416번길 118	1/3			
						서울특별시					
3	기정	쌍문동 산249-1	임야	3,785	3,785	박정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80길 6-23, 102동 702호(도봉동, 동아 에코빌아파트)	1/3			
						이은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50길 50, 211동 203호 (고덕동, 레미안힐스테이트고덕)	1/3			
						임영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소래비로 416번길 118	1/3			
						전제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79, 504-201 (상현동, 만현마을 5단지 아이파크)				
3	변경	쌍문동 산90-3	임야	1,256	1,256	서울특별시					
						전제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79, 504-201 (상현동, 만현마을 5단지 아이파크)				

◆ 도봉구고시 제2018-7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17-1호(2017.1.5.)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되고, 도봉구공고 제2017-173호(2017.2.16.) 도시계획시설(도로,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하고, 도봉구고시 제2017-31호(2017.3.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창립초교 삼거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로과(☎2091-4054)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월 18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없음

- 도봉구 창2동 609-1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도로)사업
- 명칭 :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창립초교 삼거리)

다. 사업규모 및 내용 : 변경없음

- 공공공지 조성 : 278㎡
- 도로 모퉁이(가각) 정비 : 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720번지)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17.12.31까지
- 변경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18.12.31.까지

바. 토지 및 물건조서 : 별첨(변경 없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도로과(☎02-2091-4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원구고시 제2018-8호

**도시계획시설사업(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활용홍보전시관 건립)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7-100호(2017.9.21.)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노원구고시 제2017-111호(2017.10.26.)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활용홍보전시관 건립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하였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활용홍보전시관)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토지·물건 등의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35-3, 1035-9
2. 사업시행자
 - 성 명 : 노원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701-1)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사업
 - 사업의 명칭 :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 재활용홍보전시관 건립
4. 사업의 내용
 -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9㎡(연면적 1,327㎡, 지하 1층, 지상 4층)
 - 재활용홍보전시관 410㎡(연면적 675㎡, 지상3층)
5. 변경사항 : 사업부지 면적 5㎡ 증가, 토지조서, 물건조서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물건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따로붙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체육청소년과(☎ 02-2116-3188), 자원순환과(02-2116-3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재활용홍보전시관 건립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기정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1	상계동 1035-3	토지	전	·	934	934	934	홍경모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3, 104-0000(도곡동, 삼성래미안(아))				사유지
2	상계동 1035-9	토지	전	·	5	·	5	홍경모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3, 104-0000(도곡동, 삼성래미안(아))				사유지 추가

물 건 조 서

■ 사 업 명 :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재활용홍보전시관 건립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면적㎡)	권리의 종류와내용	
1	상계동 1035-3	영업소실	소백자원	1식		임경순 (소백자원)	상계동 963-5				추가
2	상계동 1035-3	재활용품 선별라인	철재	1식		임경순 (소백자원)	상계동 963-5				
3	상계동 1035-3	재활용품 분류칸막이	철재 4 x 4m, 7EA Channel 8 x 30m	1식	선별기계	임경순 (소백자원)	상계동 963-5				
4	상계동 1035-3	경계담	철재 EGI 25m x 5H	1식	경계담	임경순 (소백자원)	상계동 963-5				
5	상계동 1035-3	바닥	콘크리트 240㎡	1식		임경순 (소백자원)	상계동 963-5				추가

◆ 은평구고시 제2018-1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9.)로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17-281호(2017.8.3.)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신사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신사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7-1508호(2017.12.8.)로 공고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산80-66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건립공사
- 2) 사업의 명칭 :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다. 사업의 규모

- 1) 부지면적 : 1,200㎡
- 2) 건물높이 : 13.25m
- 3) 연면적 : 1,982.58㎡
- 4) 건폐율 : 58.83%
- 5) 용적율 : 133.66%
- 6) 규모 : 지하1층~지상2층

라. 사업시행자

- 1) 성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2)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2016. 11. 28. ~ 2018. 6. 30.

바.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 구로구고시 제2018-15호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9호(2017.2.23)로 고시된 구로구 오류동 38-7번지 일대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오류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추진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구 로 구 청 장

가. 시장정비 사업추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승인

1.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가) 구역명칭 : 오류시장정비구역

2.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오류시장정비구역	구로구 오류동 38-7번지 일원	4,894	

3.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성명	오류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 김승유)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세문)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3길 8, 302호 (오류동, 대서프라자)	좌동

4. 사업추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승인일 : 변경승인 고시일

5. 사업추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승인 개요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변경없음)

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894	—	4,894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895	—	895	18.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999	—	3,999	81.7	

(2)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오류인터체인지~ 오류동	48,000 (468)	2,000 (39)	양측12	서고 제164호 (1982.4.22)	

※ ()는 정비구역내 해당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02	6	국지 도로	1,192 (51)	오류동 81-17	개봉동 61-11 남측	일반 도로	-	서고 제3호 (1969.1.18)	
기정	소로	3	204	6	국지 도로	272 (88)	오류동 37-9	오류동 14-45	일반 도로	-	서고 제3호 (1969.1.18)	
기정	소로	3	A	4	국지 도로	(21)	오류동 25-12	오류동 25-27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B	4	국지 도로	(40)	오류동 25-42	오류동 38-11	일반 도로	-	-	

※ ()는 정비구역내 해당 사항임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획지1	구로구 오류동 38-7번지 일대	3,220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획지2	구로구 오류동 38-30번지 일대	688	보류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물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배치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획지1	획지2	
용도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포함) 및 판매시설	보류지	
건물 면적	건축면적	2,253.00㎡	-	
	연면적	36,871.55㎡	-	
	매장면적	4,930.00㎡	-	
건폐율		69.97%	50%이하	
용적률		758.71%	250%이하	
층수(높이)		21층(65.8m) 이하	-	
세대수		188세대	-	
배치		• 건축한계선 - 경인로 및 북측도로변 : 3m - 동측도로변 : 5m • 벽면한계선(저층부) - 경인로변 : 7m(2층이하)	-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획지1	획지2	
용도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포함) 및 판매시설	보류지	
건물 면적	건축면적	2,253.00㎡	-	
	연면적	36,871.55㎡	-	
	매장면적	4,445.58㎡	-	
건폐율		69.97%이하	50%이하	
용적률		758.71%이하	250%이하	
층수(높이)		21층(65.8m) 이하	-	
세대수		188세대	-	
배치		• 건축한계선 - 경인로 및 북측도로변 : 3m - 동측도로변 : 5m • 벽면한계선(저층부) - 경인로변 : 7m(2층이하)	-	

나. 입점상인 보호대책 (변경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의한 입점상인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나. 조건사항 (변경없음)

- 사업시행전 구역내 획지2부지에 기존 입점상인의 재입점을 지원할 수 있는 임시시장을 마련할 것
- 구청장은 입점상인보호대책 수요조사시 미응답자에 대하여 입점상인보호대책 안내 및 재입점 가능여부 등을 확인후 사업시행인가 처리할 것
- 부지내 설치하는 쌈지공원은 경인로 및 서측4미터 도로에서 상시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

다. 사업추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사유

-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자의 변경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의한 “매장면적 산정방식”적용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라. 관계서류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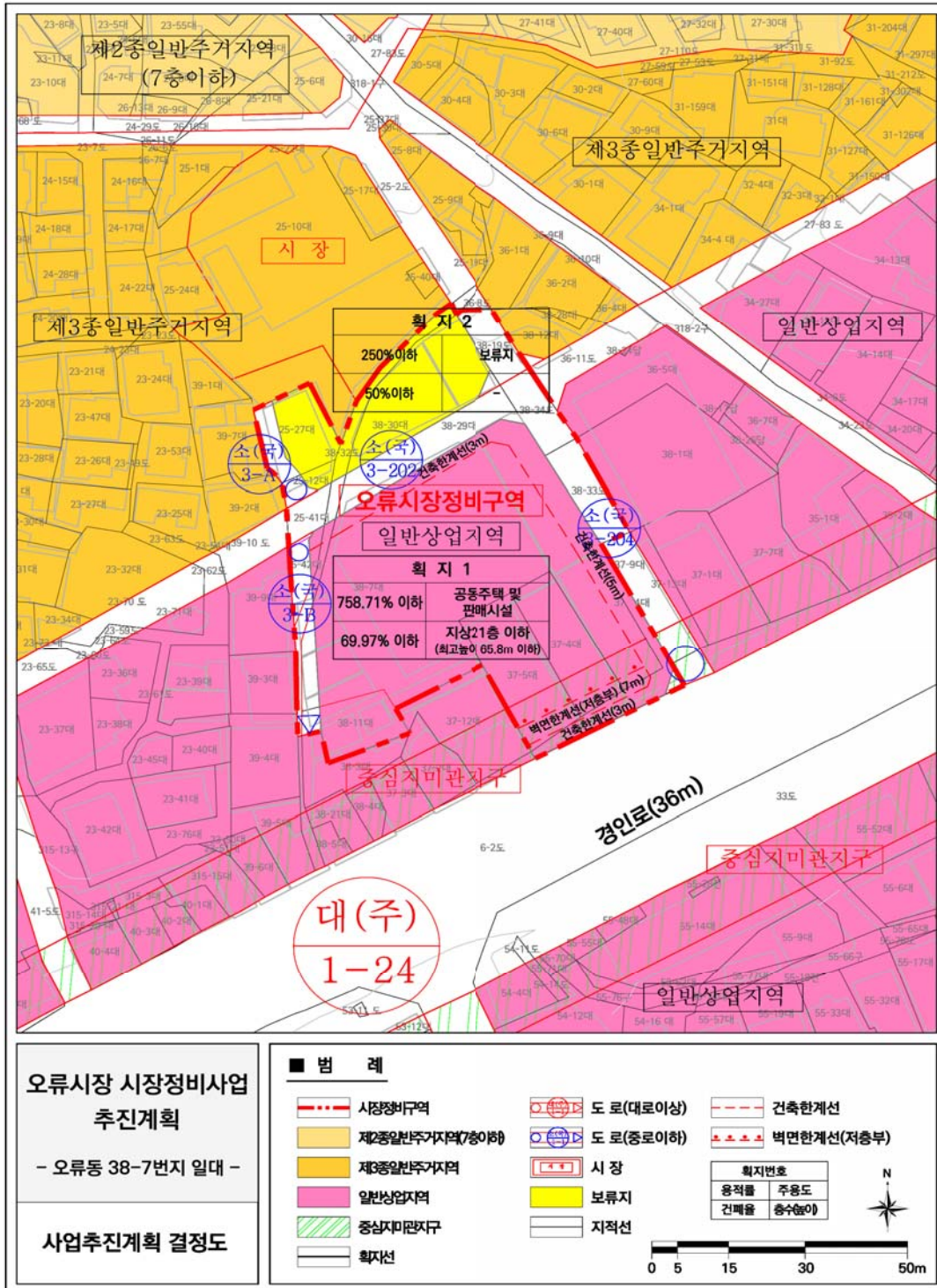
- 시민 열람편의를 위해 구로구 지역경제과(☎02-860-2858) 및 오류1동주민센터(☎2620-7450)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따로 붙임된 관계 도면(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도면

[오류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 결정도]



◆ 구로구고시 제2018-1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구로구 고시 제2017-97(2017.06.22)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한 「개봉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신축공사 RD1」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변경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구로구청장

1. 사업명칭 (변경없음) : 개봉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신축공사 RD1
2. 사업주체 (변경없음)
 - 가. 상호 및 성명 : ㈜케이지엠씨개발 대표 김영만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52 젠빌딩 4층
3. 사업위치·면적 및 규모 (변경)
 - 가. 위 치 :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대
 - 나. 용 도 : 공동주택(민간임대 아파트 1,04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다. 주택의 규모
 - 변경전 : 7개동, 지하2층/지상35층, 연면적 156,976.4437㎡
 - 변경후 : 7개동, 지하2층/지상35층, 연면적 156,965.3528㎡
4. 사업기간 (변경없음) : 2017. 06 ~ 2020. 03.
5. 「주택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처리 사항
6.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9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구로구고시 제2018-1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구로구 고시 제2017-98(2017.06.22)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한 「개봉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신축공사 RD2」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변경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구로구청장

1. 사업명칭 (변경없음) : 개봉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신축공사 RD2
2. 사업주체 (변경없음)
 - 가. 상호 및 성명 : ㈜케이지엠씨개발 대표 김영만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52 젠빌딩 4층
3. 사업위치·면적 및 규모 (변경)

- 가. 위 치 : 구로구 개봉동 168-2번지의 1필지
 나. 용 도 : 공동주택(민간임대 아파트 4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다. 주택의 규모 :
 - 변경전 : 1개동, 지하2층/지상13층, 연면적 6,794.7882㎡
 - 변경후 : 1개동, 지하2층/지상13층, 연면적 6,790.5027㎡
 4. 사업기간 (변경없음) : 2017. 06 ~ 2020. 03.
 5. 「주택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처리 사항
 6.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9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금천구고시 제2018-18호

가산동 148-9,10호(신번지 778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 및 고시

우리 구 아래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어 검토 결과 적정(조건)함에 따라,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변경승인코자 하며, 같은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시보와 구보에 각각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금 천 구 청 장

- 가. 대지위치 : 금천구 가산동 148-9,10호(신지번 : 778번지)
 나. 사업주체 : 방만수, 박완규, 박동구, 삼락종합건설
 다.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라. 건축규모 : 2동, 지하0층/지상6층, 연면적 1,517.19㎡
 마. 건물용도 :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22세대), 근린생활시설
 바. 건 폐 율 : 57.18%, 용 적 륜 : 199%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아. 사업계획승인번호
 - 2017-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2017.06.29.)
 자. 변경승인 내용
 - 지적확정측량결과 대지면적 감소(767.6㎡ → 762.4㎡)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증가
 - 연면적 5.44㎡ 감소, 주차대수 23대에서 22대로 변경, 사업주체 박동구 추가
 - 입면 외장재 일부 변경(화강석 → 벽돌)
 차. 면 허 세 : 67,500원

◆ 동작구고시 제2018-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6-29호(2016. 3.3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되고, 서울특별

시 동작구고시 제2016-73호(2016. 9.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된 『노량진 철도횡단지하보도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노량진동42-18 ~ 16-3간 도로(입체결정 및 기존 지하보도 출입구 신설 포함)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노량진 철도횡단지하보도 개설공사
(노량진 드림스퀘어복합빌딩 신축관련 지하횡단보도 개설공사)

다. 규모(변경없음)

- 도로(지하보도)개설 : 폭 6m ~ 9m, 길이 75m
- 도로(입체결정) : 폭 6m ~ 9m, 길이 30m
- 기존 지하보도 출입구 신설 : 폭 6m, 길이 25m

라. 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법인소재지	법인명칭 (대표자성명)	법인소재지	법인명칭 (대표자성명)
사업시행자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2길 9-3 외 5필지(노량진동)	드림스퀘어 (김현숙 외 108명)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2길 9-3 외 10필지(노량진동)	드림스퀘어 (김현숙 외 106명)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

- (기정) 2016년 10월부터 18개월
- (변경) 2017. 3. 1. ~ 2018. 8.31.(18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따로붙임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에 대해 도로관리청(동작구청)에 기부채납
- 건물 내 입체결정 부분은 건축물 준공 전까지 저축 토지부분에 대해 구분 지상권 설정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9596) 또는 드림스퀘어(☎02-792-06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 사업시행자
(기정) 드림스퀘어(김현숙 외 108명)
(변경) 드림스퀘어(김현숙 외 106명)
- 사업시행자의 주소
(기정)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2길 9-3호 외 5필지(노량진동)
(변경)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2길 9-3호 외 10필지(노량진동)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구 분		주 소		지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지 하 형 단 보 도	①	동작구 노량진동	40-6	공원	226.0	85.7	서울특별시	-	완충 녹지		
	②	동작구 노량진동	40-62	공원	109.0	108.1	서울특별시	-			
	③	동작구 노량진동	42-18	공원	149.0	41.9	서울특별시	-			
	④	동작구 노량진동	14-2	철도	439.0	26.8	국(국토교통부)	-	철도		
	⑤	동작구 노량진동	14-37	철도	45,908.0	243.8	국(국토교통부)	-			
	⑥	동작구 노량진동	16-32	철도	12.0	4.7	국(국토교통부)	-			
	소 계					46,843.0	511.0				
신 설 출 입 구	⑦	동작구 노량진동	40-54	공원	27.0	27.0	서울특별시	-	완충 녹지		
	⑧	동작구 노량진동	40-10 1	공원	178.0	137.2	서울특별시	-			
	⑨	동작구 노량진동	42-22	대지	10.0	2.0	국(국토교통부)	-			
	⑩	동작구 노량진동	42-33	잡종 지	2.0	2.0	국(국토교통부)	-			
		소 계				217.0	168.2				
입 체 적 결 정	기정	⑪	동작구 노량진동	16-3	대지	1505.0	156.1	김현숙 외 108인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예가람저축은행 비락새마을금고 케이미트 이복임 김주홍 김경숙 윤종기	근저 당	
	변경	⑪	동작구 노량진동	16-3	대지	1505.0	156.1	김현숙 외 106인	-	근저 당	
	기정	⑫	동작구 노량진동	13-18	도로	558.0	38.9	에코폴리탄	새마을금고		
	변경	⑫	동작구 노량진동	13-18	도로	558.0	38.9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	수탁	
			소 계				2,063.0	195.0			
	총 계 (지하형단보도+신설출입구+신축건물)					49,123.0	874.2				

◆ 강동구고시 제2018-12호

도시관리계획(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54호(2009.06.25.)로 결정고시 된 강동구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강 동 구 청 장

I. 변경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54호(2009.6.25)로 결정(변경)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강동구 길동 457-4호 외 1필지 공동개발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공동개발(지정)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동 명	지번	필지	계	
기 정	F3	길동	457-3	719	1,442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공동개발)
		길동	457-4	723		
변 경	F3	길동	457-3	719	719	단독개발
		길동	457-4	723	723	단독개발

주) 필지면적은 공부상면적 (소수자리 절삭)

-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III.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 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IV. 열람장소

- 관계서류는 주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33)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18-3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76호(2017.07.27.)로 도시관리계획(동대문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된 창신동 266-2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을 시행하고자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종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8일
종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66-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2) 명 칭: 동묘앞역 사거리 공공공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43.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2)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 146-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따로 붙임

사. 공고방법: 시보게재

아.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종로구청 공원녹지과(☎2148-2862)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사업명: 동묘앞역 사거리 공공공지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종로구 창신동	266-2	대	43.7	김옥주	7분의 2	서울 종로구 창신동 266-2				
					박재범	7분의 3	서울 종로구 창신동 266-2				
					박재현	7분의 2	서울 종로구 창신동 266-2				

건 물 조 서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사업명: 동묘앞역 사거리 공공공지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종로구 창신동	266-2	건물	목조 1층	30.6	김옥주	4분의 2	서울 강남구 일원동 627-6				
						박재범	4분의 1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1				
						박재현	4분의 1	서울 강남구 일원동 627-6				

영 업 권 조 서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사업명: 동묘앞역 사거리 공공공지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영업의 종류	상호명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종로구 창신동	266-2	중개업	신원공인중개사 사무소	1식	김영준	서울 종로구 창신동 266-2				
			음식업	못난이닭강정	1식	김순옥	서울 종로구 창신동 266-2				

◆ 종로구공고 제2018-46호

도시관리계획(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79호(2006.5.11.)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23호(2014.4.3.)로 지구단위계획(지정용도 등)이 변경된 종로5가 138-4번지 지정용도(관광숙박시설) 폐지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8일
종로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종로구 건축과 (☎ 2148-2812, fax : 2148-5830)

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1)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3)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지 번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A	18	소 계		1,387.1	－	1,387.1	－
		종로5가	138-4	1,387.1	－	1,387.1	사업대상지
A	22-1	소 계		－	증) 124.6	124.6	－
		종로5가	138-4	－	증) 124.6	124.6	공공기여
A	22	소 계		319.7	감) 124.6	195.1	－
		종로5가	138-4	124.6	감) 124.6	－	획지분할
		종로5가	138-15	77.4	－	77.4	－
		종로5가	138-24	37.7	－	37.7	－
		종로5가	138-25	80.0	－	80.0	－

■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서
획지계획	사업대상지 138-4번지 토지분할 후 기부채납하는 획지번호 22-1 대지를 도시계획시설내 공공업무시설 (일자리창출 센터 등)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획지계획을 변경함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

(가) 건축물 용도계획

■ 기 정

위 치		구 분	권장 및 지정용도			불허용도(전층)
			지정용도 (전층)	권장용도(전층)	예시용도	
동대문 시장/ 광장시장 블록	시 장	UC-1	-	-	-	• 숙박시설(관광숙박시 설 제외) • 위락시설 (단란주점 및 유흥 업소제외) • 창고,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간 선 가로변	UC-2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 장, 전시장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 시용도	• 광장시장 - 주단, 포목, 전통의류, 도 · 소매업종 - 의류부자재 관련 도 · 소매업종 - 모사 · 실 등을 활용한 제품 등의 도 · 소매업종 • 동대문시장 - 혼수용품 및 의류관련 도 · 소매 업종 - 모사 · 실 등을 활용한 제품 등의 도 · 소매업종 - 의류부자재 관련 도 · 소매업종	
	종로변	UC-3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 장, 전시장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판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청계천변	UC-4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 시용도		
	이면부	UC-5	-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용도, 휴게음식점,, 일 반음식점	-	• 숙박시설(관광숙박시 설 제외) • 위락시설 • 창고, 공장 • 위험물저장및처리시 설
	종로변	UC-6	• 관광숙박시설	-	-	

※ 건축허가시 권장용도 이행을 담보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았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권장용도(예시용도 포함)를 표시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장은 당해 해당용도에 한다

■ 변 경

위 치		구 분	권장 및 지정용도			불허용도(전층)
			지정용도 (전층)	권장용도(전층)	예시용도	
동대문 시장/ 광장시장 블록	시 장	UC-1	-	-	-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 업소제외) • 창고,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간 선 가로변	UC-2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용도	• 광장시장 - 주단, 포목, 전통의류, 도 · 소매업종 - 의류부자재 관련 도 · 소매업종 - 모사 · 실 등을 활용한 제품 등의 도 · 소매업종 • 동대문시장 - 혼수용품 및 의류관련 도 · 소매업종 - 모사 · 실 등을 활용한 제품 등의 도 · 소매업종 - 의류부자재 관련 도 · 소매업종	
	종로변	UC-3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판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청계천 변	UC-4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용도		
	이면부	UC-5	-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용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 건축허가시 권장용도 이행을 담보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았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권장용도(예시용도포함)를 표시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장은 당해 해당용도에 한다

■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서
건축물의 용도	• 관광숙박시설 사업승인 취소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삭제

(나) 용적률 계획 : 변경

구 분	위 치	적용대상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기 정	C-1	청계천변 및 간선가로변	40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
	C-1-1	청계천변 및 간선가로변 (획지 A-18)	400% 이하	600% 이하	1,132% 이하	종로5가138-4번지
변 경	C-1	청계천변 및 간선가로변	40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

※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승인 취소로 인한 종전 용적률 적용

■ 용적률 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비 고
A-18	• 상한용적률 변경 : 1,132%이하→ 800%이하	• 관광숙박시설사업 승인취소로 종전 용적률 적용

(다) 건폐율 계획 : 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높이계획 : 변경없음

(마) 건축물의 배치계획 : 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라. 관련도서(생략) : 열람장소 비치

◆ 중구공고 제2018-44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100호(2016.11.10.)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되고 중구고시 제2016-115호(2016.12. 8.)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고시된 신당동 132-10번지 일대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사회복지과(☎02-3396-53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8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32-10번지 일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다. 대지면적 : 379.4㎡(변경없음)

라. 사업의 내용(변경없음)

-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 소규모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건립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바. 사업기간 : 사업 인가일로부터 2019년 12월(변경)

사. 공고기간 : 공고 게재일로부터 15일간

아. 공고방법 : 시보,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자.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사회복지과(☎02-3396-5363)

※ 변경사항 : 사업기간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6	대지	160.8	160.8	이병*	서울시 중구 다산로42길 51	근저당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종로6가지점)
2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9	대지	28	28	김창*	서울시 중구 다산로42길 55			

국 광 유 지 조 서(토지)

● 사 업 명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편인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 소	종 류	성명	종 류	주 소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8	대	18.2	18.2	국					
2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10	대	153.8	153.8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3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21	대	18.6	18.6	국					

국 광 유 지 조 서(건물)

● 사 업 명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 소	종 류	성명	종 류	주 소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10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층	29.93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층	71.26						
			2층	60.76						
			3층	41.64						

건 물 조 서

● 사 업 명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종 류	성명	주소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6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층	100.71	이병*	서울시 중구 다산로42길 51(신당동)	근저당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종로6가지점)
			1층	86.05					
			2층	86.53					
			3층	72.25					
			4층	72.25					
			옥탑층	9.36					
2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8, -9	시멘트 블록조	1층	48.6	김창*	서울시 중구 다산로42길 55(신당동)			
			2층	48.6					
3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21	시멘트 블록조	1층	18.9	이원*	서울시 중구 퇴계로84길 24-10(신당동)			
			2층	18.9					

영 업 권 조 서

● 사 업 명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연번	소재지	영업의 종 류	상 호 명	수량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종 류	성 명	주 소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6	의류임가공	미주패션	1식	이승*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94가길 20, 2**동 8**호(상계동)			
2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6	기타사업 지원서비스업	한고(GO)	1식	천덕*	서울시 중구 다산로36가길 23 (신당동, 신영빌딩)			
3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6	식내장식	디자인 시우	1식	김종*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1**동 8**호 (하왕십리동,센트라스)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성동구공고 제2018-41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공고

1.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 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계획과(☎2286-5555), 토목과(☎2286-5766), 공원녹지과(☎2286-565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월 18일

성 동 구 청 장

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시 설 별	시 행 기 간									비고
	계			1단계 (1~3년차)			2단계 (4년 이후)			
	건수	면 적 (㎡)	사업비 (백 만원)	건수	면 적 (㎡)	사업비 (백 만원)	건수	면 적 (㎡)	사업비 (백 만원)	
계	24	104,149	77,177	21	100,031	61,745	3	4,118	15,432	
도로	23	40,738	68,280	20	36,620	52,848	3	4,118	15,432	
공원	1	63,411	8,897	1	63,411	8,897				

나.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시 설 명	위 치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실효 시기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지방비			민간	
									계	시비	구비		
도로	성수동1가 26-1~72-14	1	2018	10	290	2,820	900		900		900		2020
도로	사근동 189-1~199-4	2	2018	6	66	627	1,000		1,000		1,000		2020
도로	성수동1가 656-3~656-98	3	2019	6	358	2,172	9,638		9,038		9,038		2020
도로	성수동2가 255-4~269-179	4	2019	6	120	781	1,528		1,528		1,528		2020
도로	마장동 361-6~382-1	5	2019	4	150	773	150		150		150		2020
도로	행당동 19-46~158-91	6	2019	6	191	1,191	1,787		1,787		1,787		2020

시 설 명	위 치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실효 시기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지방비			민간	
									계	시비	구비		
도로	성수동1가 656-1169~656-727	7	2020	4~5	62	292	553		553		553		2020
도로	성수동1가 656-641~656-755	8	2020	12	168	2,358	3,700		3,700		3,700		2020
도로	성수동1가 656-284~656-1608	9	2020	8	96	833	531		531		531		2020
도로	성수동1가 656-1076~656-1027	10	2020	6	120	798	2,064		2,064		2,064		2020
도로	성수동1가 659-9~656-323	11	2020	6	207	1,292	1,932		1,932		1,932		2020
도로	성수동1가 656-504~656-1222	12	2020	8	165	1,475	4,301		4,301		4,301		2020
도로	성수동1가 656-1657~656-28	13	2020	6	140	1,000	1,721		1,721		1,721		2020
도로	성수동1가 33-17~33-5	14	2020	6	150	856	2,716		2,716		2,716		2020
도로	성수동2가 269-115~268-2	15	2020	8	282	2,260	9,422		9,422		9,422		2020
도로	도선동 39-2~35	16	2020	12	127	1,505	568					568	2020
도로	하왕십리동 979-1~행당동300-1	17	2020	4~6	134	726	875		875		875		2020
도로	행당동 191-2	18	2020	6	34	215	200		200		200		2020
도로	마장동 498~439	19	2020	12	630	7,709	2,254		2,254		2,254		2020
도로	마장동 517~501	20	2020	12	630	8,262	6,094		6,094		6,094		2020
	1단계(1~3년차) 사업시행					37,945	51,934		51,366		51,366	568	
도로	금호동3가 282~286	1	2021	4	38	180	1,482		1,482		1,482		2021
도로	금호동4가 535~547	2	2021	12	108	1,317	9,780					9,780	2021
도로	행당동 294-1~292-41	3	2021	8	153	1,296	5,084					5,084	2022
	2단계(4년차 이후) 사업시행					2,793	16,346		1,482		1,482	14,864	
소 계(도로)						40,738	68,280		52,848		52,848	15,432	
공 원	옥수동 산1-1번지 일대 (달맞이근린공원)	1	2018~ 2020			63,411	8,897		8,897		8,897		2020
	1단계(1~3년차) 사업시행					63,411	8,897		8,897		8,897		
소 계(공원)						63,411	8,897		8,897		8,897		
계		24				104,149	77,177		61,745		61,745	15,432	

다. 관련도면: 실음 생략.

◆ 도봉구공고 제2018-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건설교통부고시 제198호(1971.4.7.)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15-35호(2015.4.2.)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15-49호(2015.5.14.)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15-143호(2015.11.19.)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공고 제2016-501호(2016.5.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된 아래사업이 완료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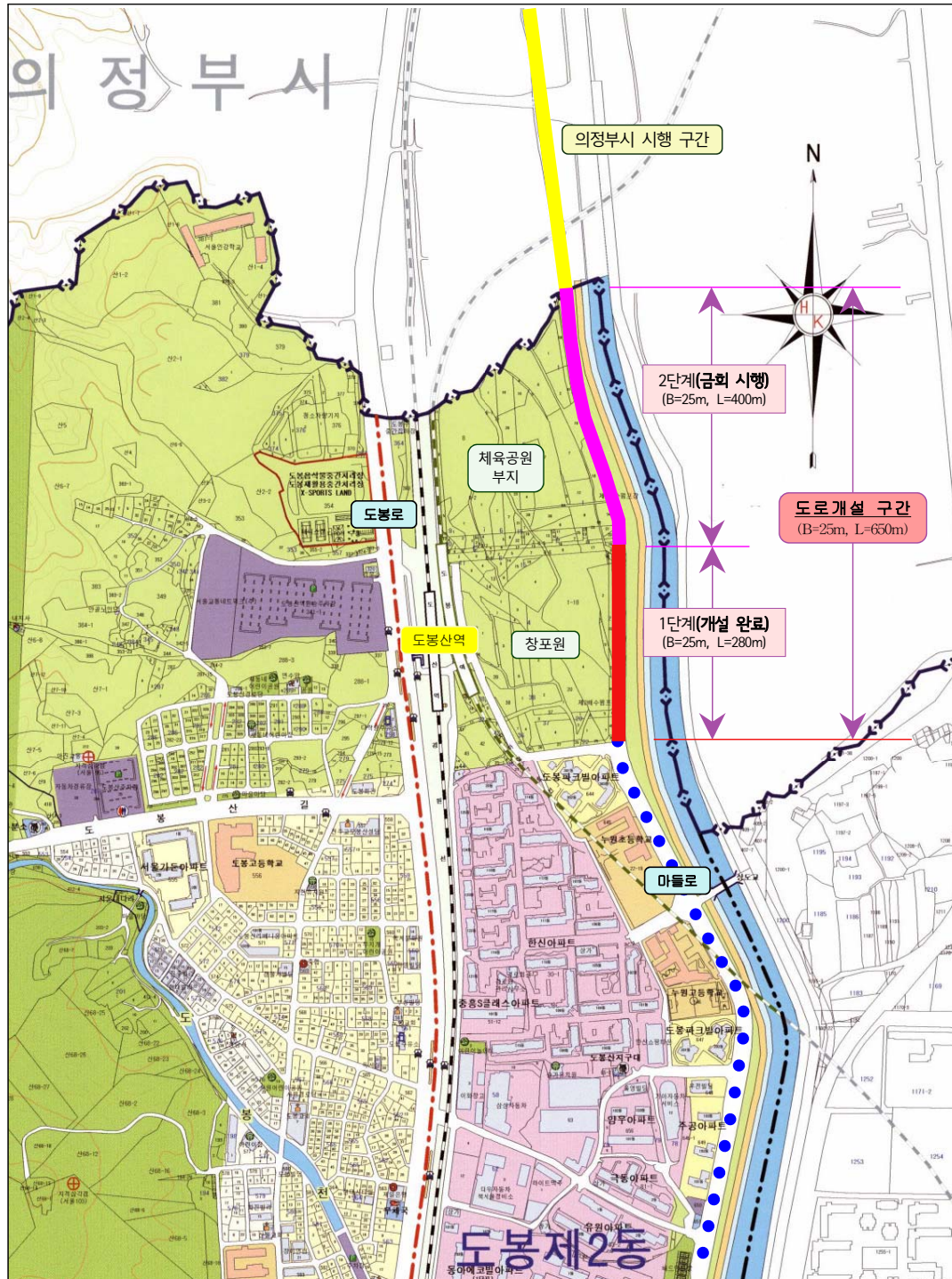
다. 공사완료 공고내역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실시계획 인가고시	사업 기간
상도교~호장교간 도로개설	도봉동4번지일대~의정부시계간	폭 : 25m 연장 : 400m	도고 제2015-49호 (2015.5.14)	2016. 5.~ 2017.12.31.

라. 붙임 : 공사완료 위치도

위 치 도

□ 사업명 : 상도교~호장교간 도로개설공사



◆ 강서구공고 제2018-65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수립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강 서 구 청 장

1. 단계별집행계획 총괄표

(사업비단위 : 백만원)

시설별	시행기간 (2018~2027)								비고
	계		1단계(1 ~ 3년차)		2단계(4 ~ 5년차)		2단계(6년차이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계	12	21,109	12	21,109	-	-	-	-	
도로	12	21,109	12	21,109	-	-	-	-	

2. 단계별집행계획 조서 : 별첨

3. 관계도면 : 생략

4. 관계서류는 강서구청 도시계획과(☎2600-638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사업 · 시설 부문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 개요	총 사업비 (백만원)	계획기간 중 사업비(2018~2027)										실호 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1년~ '3년차	2-1단계 '4년~ '5년차		2-2단계 '6년차 이후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도로	빙화동642~ 방화동648-6	1	2018 ~ 2020	연장155m 폭원8m 면적1,538㎡	865	865		865								2020	
도로	빙화동271-1~ 빙화동258-1	2	2018 ~ 2020	연장200m 폭원10m 면적2,011㎡	1,033	1,033		1,033								2020	
도로	공항동14-4~ 방화동609-47	3	2018 ~ 2020	연장480m 폭원8~10m 면적4,391㎡	2,560	2,560		2,560								2020	
도로	공항동41-44~ 공항동56-11	4	2018 ~ 2020	연장85m 폭원6m 면적545㎡	998	998		998								2020	
도로	공항동40-8~ 공항동34-60	5	2018 ~ 2020	연장210m 폭원8m 면적2,032㎡	6,875	6,875		6,875								2020	
도로	빙화동567-4~ 방화동607	6	2018 ~ 2020	연장732m 폭원10m 면적8,432㎡	2,277	2,277		2,277								2020	
도로	영창동20-46~ 영창동20-31	7	2018 ~ 2020	연장11m 폭원6m 면적55㎡	106	106		106								2020	
도로	등촌동365-105~ 등촌동364-24	8	2018 ~ 2020	연장110m 폭원4~6m 면적554㎡	703	703		703								2020	

사업 · 시설 부문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 개요	총 사업비 (백만원)	계획기간 중 사업비(2018~2027)										실효 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단계 '1년~ '3년차	2-1단계 '4년~ '5년차		2-2단계 '6년차 이후
								계	시비	구비							
도로	방화동332-2~ 방화동318-3	9	2018 ~ 2020	연장126m 폭원4~8m 면적774㎡	1,033	1,033		1,033						1,033			2024
도로	가양동146-63~ 가양동155-5	10	2018 ~ 2020	연장170m 폭원8m 면적1,360㎡	1,174	1,174		1,174						1,174			2020
도로	염창동산30-17~ 염창동산32-1	11	2018 ~ 2020	연장455m 폭원12m 면적5,836㎡	2,588	2,588		2,588						2,588			2020
도로	가양동148-2~ 가양동151-1	12	2018 ~ 2020	연장90m 폭원6m 면적588㎡	897	897								897	897		2020

◆ 강서구공고 제2018-80호

도시관리계획(등촌택지지구) 변경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17-569호(2017.04.27.)로 열람공고한 등촌동685번지 도시계획시설(시장)폐지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2017.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제68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8일

강 서 구 청 장

- I.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II.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2600-6384)
- I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사항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없음)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 가. 유통 및 공급시설
 - 1) 시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시장	대규모 점포	등촌3동 685번지	2,889	감)2,889	-	서고 제1991-368호 (1991.12.24)	준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공향시설보호지구

※ 당해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은 부지면적의 20%이상을 의무로 함

-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건축물의 밀도
 - 1) 건폐율 계획 (변경없음)
 - 2) 용적률 계획

위치	계획내용			비고
준주거 지역 (등촌동 685번지)	기정	• 400%		
	변경	기준	• 300%	
		허용	• 400%	※ 주거부분 허용용적률 250%이하 적용
		상한	$\begin{aligned} & \bullet \text{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 \\ & \bullet \text{ 환산부지면적} \times \frac{\text{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text{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end{aligned}$	※ 법정용적률의 2배 이하 (2000.07.01.이후)

3)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계획 (신설) : 열람도서참조

① 계획유도 인센티브(변경없음)

항목	세분	세부계획	비고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대지면적} × a	a = 개방형구조 : 3.0 필로티구조 : 2.0

② 친환경 인센티브(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이상에서 계획)

항 목	세 분	세 부 계 획 기 준	비 고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인증	• 최우수(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 × 0.12 • 우수(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 × 0.08 • 우량(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 0.08 •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 0.06 •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중수도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 0.04	-
	빗물관리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 0.04	-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
	자연지반보존	•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 면적) × 0.2	-
	녹색주차장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

나. 건축물의 높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등촌동 685번지	최저층수	• 3층	• 3층	-
	최고층수	-	• 16층	

2. 기타사항에 대한 결정조서

가. 차량출입허용구간 (변경없음)

나. 공공조경 (변경없음)

다. 공공기여 (신설)

1) 공공기여 계획

위 치	공공기여 용도	공공기여 내용	세부계획	공공기여량	관리청
강서구 등촌동 685번지	•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	•건축 허가 전 협의하여 결정	•20% 이상	•강서구청

※ 공공기여량 중 20%는 상한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2) 준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위 치	계획지침	세부계획
강서구 등촌동 685번지	준공공임대주택 용적률 30%이상 도입	준공공임대주택 용적률 30%이상 계획 등

4. 관계도면 : 생략(강서구 도시계획과 열람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공고 제2018-9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고시 제3호(1969.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고시, 서울시고시 제226호(1988.3.28)로 변경결정고시, 구로구고시 제2016-16호(2016.10.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고시, 제2017-74호(2017.05.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고시, 구로구고시 제2017-58호(2017.04.13)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구로구고시 제2017-123호(2017.07.27)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구간 추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로과(☎860-3124)에 비치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8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ㄱ 당초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10-15~115-124

ㄴ 변경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23-35~115-12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규모(변경) ㄱ 당초 : 도로개설 폭8m, 연장255m

ㄴ 변경 : 도로개설 폭8m, 연장377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실시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 첨

토 지 조 서(추가)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당초조서 : 변경없음										
아래항에 사업구간 추가에 따른 토지조서 추가										
1	가리봉동 110-10	대	225	14	정낙천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73-1 홍일빌딩110호	이동우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 동1054-8목련아파트70 9-602	근저당	
2	가리봉동 110-14	대	55	40	김용복 주속자	영등포구당산동3가561동부센트레빌 105-1801	중소기업은행	중구을지로2가50	근저당 지상권	
3	가리봉동 110-9	대	223	24	김용복 주속자	영등포구당산동3가561동부센트레빌 105-1801	중소기업은행	중구을지로2가50	근저당 지상권	
4	가리봉동 123-49	대	112.7	4	이병조	구로구가리봉동123-49	남부약사회신 용협동조합	금천구독산동1022-124	근저당	
5	가리봉동 123-56	도	161	5	박용희	구로구가리봉동105	장영분	구로구가리봉동105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	
6	가리봉동 123-48	대	174.8	28.3	천선례	구로구 가리봉동123-48	한국양봉축산 업협동조합	중구신당동370-61	근저당	
7	가리봉동 123-47	대	145.2	26.6	김정수	관악구 난곡로16가길3-19(신림동)				
8	가리봉동 123-63	도	159	6.8	박상옥	구로구가리봉동96				
9	가리봉동 123-46	대	99.2	19.5	박용덕	신림동1694신림현대아파트 112동1104호				
					박선영					
					심계숙					
					박지영					
10	가리봉동 123-43	대	84.6	18.5	박용덕	관악구신림동1694신림현대아파트 112동1104호				
					심계숙					
					박선영					
					박지영					
11	가리봉동 123-15	대	90.9	0.3	송병년	구로구디지털로31길90,115동 2102호(구로동,삼성래미안)	하나은행	중구을지로66 (을지로2가,구로동지점)	근저당	
							조성수	구로구고척로60길30, 105동-1104호 (고척동,벽산베스트블루 밍아파트)		
12	가리봉동 123-16	도	61.8	4.4	조명희	경기도수원시장안구율전동184-7	조정희	금천구독산동933-5	근저당	
							조영웅	금천구독산동933-5		
							조치웅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문 암1길68,103동201호(안 서동,안서금호어울림아 파트)		
13	가리봉동 123-17	대	130.9	19.8	손순이	경기도광명시영당로22번길19, 101동102호(소하동,미도아파트)				
14	가리봉동 123-22	대	124.3	18.9	구희동	구로구가리봉동123-2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5	가리봉동 123-23	도	61.5	4.9	조명희	경기도수원시장안구율전동184-7	조정희	금천구독산동933-5	근저당	
							조영웅	금천구독산동933-5		
							조치웅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문암 1길68,103동201호(안서동 ,안서금호어울림아파트)		
16	가리봉동 123-24	대	135.5	20.4	홍영서 홍현주	구로구남부순환로105길66(가리봉동)				
17	가리봉동 123-42	대	150.4	40.6	염명훈 이정옥	구로구우마2길12(가리봉동)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중구충정로1가75	근저당	
18	가리봉동 123-29	대	125	17.1	이봉식	구로구우마2길20(가리봉동)	우리은행	중구회현동1가203	근저당	
19	가리봉동 123-30	도	164.3	4	김응하	영등포구영등포동2가3				
20	가리봉동 123-40	대	144.1	18.7	박창욱	구로구가리봉동123-40	하나은행	중구율지로66 (율지로2가,본점)	근저당	
21	가리봉동 123-39	대	138.5	18	리생금	구로구우마2길6(가리봉동)	하나은행	중구율지로66(율지로2가)	근저당	
22	가리봉동 123-38	대	369.9	54.7	최봉현 조영미	강남구강남대로146길28,104동1305호 (논현동,논현아파트)	농협은행주식 회사	중구통일로120 (충정로1가,신갈지점)	근저당	
23	가리봉동 123-36	대	101.2	15	전옥이	양천구목동917목동파라곤109-1602				
24	가리봉동 123-35	대	140.8	24.6	김영희	구로구우마2길11-1(가리봉동)				
					천일상	수원시원천동35주공아파트 105동1310호				
					천문상					

※ 상기 지번은 분할전 지번으로 토지분할 후 지번정정 예정임.

물 건 조 서(추가)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당초조서 : 변경없음											
아래항에 사업구간 추가에 따른 물건조서 추가											
1	가리봉동 123-49	건물(1층) 건물(2층)	연와조 연와조	4.9 2.5	상가 주택	이병조	구로구가리봉동123-49	남부약사신용 협동조합	금천구독산동 1022-124	근저당	
2	가리봉동 123-48	가건물	알루미늄샤시	12.1	상가						
3	가리봉동 123-47	건물(1층) 건물(2층)	연와조 연와조	25.1 25.1	상가 주택	김정수	관악구난곡로16가길3-19 (신림동)				
4	가리봉동 123-43	건물(1층) 건물(2층) 가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판넬	7.5 7.5 2.7	상가및창고 주택 창고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5	가리봉동 123-15	건물(1층)	연와조및판넬	8.1	상가	송병년	구로구디지털로31길90,115 동2102호 (구로동,삼성래미안)	하나은행	중구을지로66 (을지로2가, 구로동지점)	근저당	
								조성수	구로구고척로 60길30,105 동-1104호 (고척동,박산 베스트블루밍 아파트)		
6	가리봉동 123-17	건물(1층)	연와조	11.3	주택	손순이	경기도광명시영당로22번길1 9,101동102호 (소하동,미도아파트)				
		건물(2층)	연와조	11.3	주택						
		담장및대문	콘크리트,스텐	1식	담장및대문						
		계단	콘크리트	1식	계단						
7	가리봉동 123-22	창고	판넬	1.2	창고	구희동	구로구우마2길11(가리봉동)				
		건물(1층)	연와조	1.8	주택						
		건물(2층)	연와조	1.8	주택						
		담장및대문	콘크리트,철재		담장및대문						
8	가리봉동 123-42	건물(1층)	연와조	30.3	상가	염명훈	구로구우마2길12(가리봉동)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중구충정로 1가75	근저당	
		건물(2층)	연와조	30.3	주택	이정옥					
		계단	콘크리트	1식	계단						
		담장및대문	콘크리트,철재		담장및대문						
9	가리봉동 123-24	건물(1층)	연와조	12.1	주택	홍영서	구로구남부순환로105길66(가리봉동)				
		건물(2층)	연와조	12.1	주택	홍현주					
10	가리봉동 123-29	건물(1층)	연와조	4.5	상가	이봉식	구로구우마길20(가리봉동)	우리은행	구로구가리봉 동123-29	근저당	
		가건물(2층)	조적	0.3	주택						
		화장실	콘크리트	0.9	화장실						
		건물(1층)	연와조	3.3	주택						
		담장및대문	콘크리트,스텐	1식	담장및대문						
11	가리봉동 123-40	건물(지하)	연와조	6	주택	박창옥	구로구우마2길8(가리봉동)	하나은행	중구을지로66 (을지로2가, 본점)	근저당	
		건물(1층)	연와조	6	주택						
		건물(2층)	연와조	6	주택						
		계단	콘크리트	1식	계단						
		담장및대문	조적,스텐	1식	담장및대문						
12	가리봉동 123-39	건물(1층)	연와조	18.9	상가	리생금	구로구우마2길6(가리봉동)	하나은행	중구을지로66 (을지로2가)	근저당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3	가리봉동 123-36	건물(1층)	연외조	3.5	상가	전옥이	양천구목동917목동파라곤109-1602				
		2층계단 및 보일러실	콘크리트	1.4	계단 및 보일러실						
		건물(1층)	연외조	4.1	주택						
		건물(2층)	연외조	3.4	주택						
14	가리봉동 123-38	건물(지하)	철근콘크리트조	57.1	상가	최봉현 조영미	강남구강남대로146길28,104동 1305호 (논현동, 논현아파트)	농협은행주 식회사	중구통일로120 (충정로1가)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57.1	상가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조	57.1	주택및상 가						
		건물(3층)	철근콘크리트조	57.1	주택및상 가						
15	가리봉동 123-35	건물(3층)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외조	1.5	주택	김영희	구로구가리봉동123-35				
		건물(지하)		11.1	상가						
		건물(1층)		11.1	상가						
		건물(2층)		11.1	상가						
		가건물(3층)		6.9	주택						
		옥탑		2.7	옥탑						

◆ 영등포구공고 제2018-7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사업인정을 위한 열람(의견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결정된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의 『신길동 335-17 ~ 342-88간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63)』 일부 구간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를 실시합니다.
2. 본 공고 내용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의 위치: 영등포구 신길동 342-134~342-132간(중로3-63 노선 일부)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다. 사업의 명칭: 신길동 342-134~342-132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라. 사업 규모: 폭 3m, 연장 32m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영등포구청장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등 권리명세: 별첨 조서
 아.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영등포구청 6층 도시재생과(☎ 02-2670-3528)
 차. 관계서류: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서류(도서)를 열람기간 중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장
- 사업의 명칭 : 신길동 342-134~342-132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신길동	342-142	도로	83	83	김경남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66-11 (별양동, 레미안슈르)					

◆ 동작구청고 제2018-5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299호(1963.4.2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동작구청고 제34호(2011.6.2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5-52호(2015.7.16.)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5-64호(2015.9.3.)로 변경인가를 득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6-94호(2016.12.29.)로 변경인가를 득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7-70호(2017.8.31.)로 변경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비둘기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같은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4)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8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비둘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의 규모

- 1) 위 치 : 동작구 상도1동 558
- 2) 면 적 : 2,114.7㎡
- 3) 내 용 : 건물보상 및 공원조성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2)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장물조서(변경) : 따로붙임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따로붙임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820-9844)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비둘기어린공원 조성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상도1동 558	주택	블럭조 세멘기와	82㎡	82㎡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4-3 (상도1동)	박기섭			
		보일러실	블럭조	11.3㎡	11.3㎡					
		보일러실	판넬조	6.7㎡	6.7㎡					
		장독대	세멘트 콘크리트	7.6㎡	7.6㎡					
		펜스	철재 격자형 12mx1.5m	1식	1식					
		대문	철재 1.8mx1.9m	1식	1식					
		담장	블럭조	59.3㎡	59.3㎡					
		계단	세멘콘크리트 3.3mx2.2m	1식	1식					
		단풍나무	30년생 흉고경 30φx8m	1주	1주					
		사철나무	30년생 수관 3mφx2m	2주	2주					
		판백나무	30년생 흉고경 20φx2m	2주	2주					
		모과나무	20년생 흉고경 10φx3m	1주	1주					
		감나무	5년생 흉고경 5φx 2m	1주	1주					
		당두충	17년생 근경20φx 3m	1주	1주					
		목단	17년생 1.5m	1주	1주					
		전기계량기	가정용	1기	1기					
		수도계량기	가정용	1기	1기					

기존
무허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종류 및 내용	
2	상도1동 558	건물1층 정독대	목조판넬지붕	71.2㎡	71.2㎡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4길6 (상도1동)	신규철				무허가
		보일러실	시멘트 포장	26.6㎡	26.6㎡						
		건물1층	목조판넬지붕 조적조	0.9㎡	0.9㎡						
			아스팔트상글 지붕	83.1㎡	83.1㎡						
		건물2층	조적조 및 블럭조 아스팔트상글지붕	83.1㎡	83.1㎡						
		건물1층	조적조 및 블럭조 아스팔트상글 지붕	54.4㎡	54.4㎡						
		가건물(주방)	블럭조	10.7㎡	10.7㎡						
		대문	스텐인레스 1.1mx2m	1식	1식						
		문주	시멘트벽돌 0.4mx0.4mx2m	2식	2식						
		펜스	방부목	57㎡	57㎡						
		축대1	1.34mx42.5m 석재	1식	1식						
		축대2	2.5mx22m 석재	1식	1식						
		축대3	2.0mx12m 석재	1식	1식						
		담장1	블럭조 1.2mx12m	1식	1식						
		담장2	블럭조 1.5mx20m	1식	1식						
		마당(바닥포장)	보도블록	187㎡	187㎡						
		덩굴지지대	철파이프 50φx2.4m	21개	21개						
		산초나무1	60년생 흉고경 50φx10m	1주	1주						
		감나무1	60년생 흉고경 30φx10m	1주	1주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종류 및 내용	
2	상도1동 558	감나무2	60년생 흉고경 25 ϕ x10m	1주	1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학교길6 (상도1동)	신규철				무허가
		감나무3	60년생 흉고경 25 ϕ x11m	1주	1주						
		밤나무	60년생 흉고경 18 ϕ x8m	1주	1주						
		산초나무2	60년생 흉고경 40 ϕ x8m	1주	1주						
		감나무4	60년생 흉고경 30 ϕ x11m	1주	1주						
		산초나무3	15년생 흉고경 20 ϕ x10m	1주	1주						
		등나무	30년생 수관면적 33㎡	2주	2주						
		사철나무	60년생 수관 0.5m ϕ x3m	2주	2주						
		가스계량기	가정용	2기	2기						
		전기계량기	가정용	1기	1기						
3	상도1동 558	수도계량기	가정용	1기	1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학교길 12-1 (상도1동)	대한 예수장로회 서울남노회				
		창고	적면외조 슬라브지붕	6.7㎡	6.7㎡						

일련 번호	소재지번호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상도1동 558	펜스	능형망철재 H1.5m 각 L14.37m, L20.6m	52.5㎡	52.5㎡	동작구 감남초등4길 14-1(상도1동)	한상희			
		대문	철재 2.3m×1.8m	1식	1식					
		문주	0.4m×0.5m× 2.1m	2식	2식					
		담장	시멘트블록 2.65m×1.8m	4.8㎡	4.8㎡					
		마당	보도블록	13㎡	13㎡					
		전기계량기	가정용	1기	1기					
		수도계량기	가정용	1기	1기					
		모과나무	근경15φx수고2m	1주	1주					
		살구나무	흉고경 20φx수고2m	1주	1주					
		리일락	근경18φx수고1.8m	1주	1주					
		장미	수고1.5m 10년생	1주	1주					
		철쭉	수고1.5m 11년생	10주	10주					
		목단	50년생	1주	1주					
		김나무	흉고경 35φx수고2m 50년생	1주	1주					

이전 번 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구역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상도1동 558	주택	벽돌조 및 틀린조 함석지붕	203.3㎡	203.3㎡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 27, 607동401호(북동동, 산내마을6단지 한라비발디)	신현승	6/54			신현지 제외 13인 보상원료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801번길206	천정숙	6/54			
						서울 동작구 사당3동 156-5	신현근	4/54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923, 106동	신현기	4/54			
						1505호(산이리대주파크빌아파트)					
						부산광역시 부산지구 가야대로 747번길 28-9(부전동)	신현숙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B01호(상도1동 백남빌라)	신현화	4/54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지11길4-1, 1층102호(신림동)	신현의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지층2호(상도1동)	신현주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지층동 2호(상도1동)	천태선	4/54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801번길183	신현우	4/54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 12길23-20(신월동)	신현중	4/54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801번길206	신현미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4-3(상도1동)	신현란	1/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4-3(상도1동)	신현지	1/54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관리의 종류 및 내용
5	상도1동 558	전기계량기	가정용	3기	3기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 27, 607동401호(목동동, 산내마을6단지 한라비발디)	신현송	6/54			신현지 제외 13인 보상완료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801번길206	천정숙	6/54			
						서울 동작구 사당3동 156-5	신현근	4/54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총대로 923, 106동 1505호(산이리데 주파크빌아파트)	신현기	4/54			
						부산광역시 부산지구 가야대로 747번길 28-9(부전동)	신현숙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B01호(상도1동 백남빌라)	신현화	4/54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재11길4-1, 1층102호(신림동)	신현의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지층2호(상도1동)	신현주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지층동 2호(상도1동)	천태선	4/54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801번길183	신현우	4/54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 12길23-20(신월동)	신현중	4/54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801번길206	신현미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4-3(상도1동)	신현란	1/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4-3(상도1동)	신현지	1/54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상도1동 558	가스계량기	가정용	3기	3기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 27, 607동401호(목동동, 산내마을6단지 한라비발디)	신현승	6/54			신현지 제외 13인 보상완료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801번길206	천정숙	6/54			
						서울 동작구 사당3동 156-5	신현근	4/54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총대로 923, 106동 1505호 (산이리대주파크빌아파트)	신현기	4/54			
						부산광역시 부산지구 가야대로 747번길 28-9(부전동)	신현숙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동길 16 B01호(상도1동 백남빌라)	신현화	4/54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지11길4-1, 1층102호(신림동)	신현의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동길 16, 지층2호(상도1동)	신현주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동길 16, 지층동 2호(상도1동)	천태선	4/54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801번길183	신현우	4/54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 12길23-20(신월동)	신현종	4/54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801번길206	신현미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동길 14-3(상도1동)	신현란	1/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동길 14-3(상도1동)	신현지	1/54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지분	주소	
5	상도1동 558	계단	철재 1mx3m	1식	1식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 27, 607동401호(목동동, 산내마을6단지 한라비발디)	신현승	6/54		신현지 제외 13인 보상완료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801번길206	천정숙	6/54		
						서울 동작구 사당3동 156-5	신현근	4/54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총대로 923, 106동 1505호(산이리대주파크빌아파트)	신현기	4/54		
						부산광역시 부산지구 가야대로 747번길 28-9(부전동)	신현숙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B01호(상도1동 백남빌라)	신현화	4/54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지11길4-1, 1층102호(신림동)	신현의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지층2호(상도1동)	신현주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지층동 2호(상도1동)	천태선	4/54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801번길183	신현우	4/54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 12길23-20(신월동)	신현중	4/54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801번길206	신현미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4-3(상도1동)	신현란	1/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4-3(상도1동)	신현지	1/54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관리의 종류 및 내용	
5	상도1동 558	사철나무	수관 1.2m Ø	1주	1주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 27, 607동401호(목동동, 산내마을6단지 한라베발디)	신현승	6/54				신현지 제외 13인 보상완료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801번길206	천정숙	6/54				
						서울 동작구 사당3동 156-5	신현근	4/54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총대로 923, 106동 1505호(산이리대주파크빌아파트)	신현기	4/54				
						부산광역시 부산지구 가야대로 747번길 28-9(부전동)	신현숙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B01 호(상도1동 백남빌라)	신현화	4/54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지11길4-1, 1층102호(신림동)	신현의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지층2호(상도1동)	신현주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지층동 2호(상도1동)	천태선	4/54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801번길183	신현우	4/54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 12길23-20(신월동)	신현종	4/54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801번길206	신현미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4-3(상도1동)	신현란	1/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4-3(상도1동)	신현지	1/54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	상도1동 558	주택	블럭조 기와지붕	69.8㎡	69.8㎡	서울특별시 동작구 감남초등길 14-3 (상도1동)	박남순				기준 무허가 (보상원료)
		가건물(주방)	블럭조	5㎡	5㎡						
		화장실	블럭조	3.4㎡	3.4㎡						
		대문	철재 0.9m×1.8m	1식	1식						
		담장	블럭조 1.5m×18.9m	1식	1식						
		전기계량기	가정용	1기	1기						
		수도계량기	가정용	1기	1기						
		수전	수도꼭지	1기	1기						

◆ 동작구공고 제2018-60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1-103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에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안)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동 작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대방동 11-103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대방동 11-103번지일원	-	증)12,863.11	12,863.11	

※ 결정사유 : 노후·불량한 주거지에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사항 (생략 : 결정도서 참조)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 지역	소계	12,863.11	-	12,863.11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602.95	감) 1,602.95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1,260.16	감) 11,260.16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2,863.11	12,863.11	100.0	

2)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로

3) 비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문화시설(지역문화예술창작공간)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등

다. 기타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교통처리계획 및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사항 등

3.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노량진로 74 유한양행 3층, ☎ 02-820-9195)

5.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있으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관악구공고 제2018-90호

**관악구 도시계획시설(관악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7-6호(2017.1.5)」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변경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준비를 위한 토지측량·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3. 저촉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 수령자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4.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 기한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8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신림동 산117번지

1) 토지분할 후 : 신림동 산117-30번지 (예정 지번)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 동네뒷산공원조성사업 (관악산 신림동 산117번지)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등 (토지 현황·분할측량 포함)

다. 사업규모 : 1,050㎡

라.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9.12.31.

바.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시간 09:00 ~ 18:00)

아.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3)

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불임참조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토지 분할 예정 번지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칭 : 동네뒷산공원조성사업 (관악산 신림동 산117번지)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실제 이용사항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당초	신림동 산117	임야	13,395	1,050	임야	전주이씨 **군파종회	단독 지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				본 지번
토지 분할 후	신림동 산117 -30	임야	1,050	1,050	임야	전주이씨 **군파종회	단독 지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				분할 예정지번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쥬동광지오엔지니어링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75	서울시계 내 한강 (용산 한남동 785~ 강남 압구정동 374-1)	선박 2척 (보트,바지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지반조사	'18.01.24.~ '18.02.28.	'18. 01.1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도시기반시설본부 장(토목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서울시계내한강 (마곡대교~ 성산대교)	선박 9척 (기선2척, 부선7척)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18.01.15. ~ '18.12.31.	'18. 01.12.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10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80-14, 481-5, 481-6, 481-7, 481-8, 481-11, 485-23, 485-27, 485-28번지 (총 9필지)
 - 면 적 : 19,71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광나루 한강공원 힐링숲 조성공사
 - 내 역 :
 - 힐링숲 조성(건강돌레길, 잔디마당, 수목식재 등)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8.01.10.~2023.01.09.(허가일로부터 170일, 2018.6.29.까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11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중랑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361-5번지 외 1필지
- 면 적 : 영구 1,678.70㎡, 일시 20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징검다리 설치
- 내 역 :

당 초	변 경
- 징검다리 B=1.2m, L=67m (하상보호공 B=16m, L=67m) - 징검석 67개	- 징검다리 B=1.2m, L=67m (하상보호공 B=16m, L=67m) - 징검석 87개(증 20개)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7.5.18.~2022.5.17.(2017.5.18.~2018.1.26.)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12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초구 반포동 일원
(일시점용 : 서울시 용산구 청암동 170-1번지 구간 보수)
- 면 적 : <당초> 30,667㎡
<변경> 30,685㎡, 일시 54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열배관 매설
- 내 역 :

당 초	변 경
- 열배관 매설 1식	- 열배관 매설 1식 - 열배관 보수공사를 위한 관로 주변 일시점용(545㎡)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4.10.21.~2019.10.20.(2018.1.22.~2018.3.13., 60일간)

정 정

◆ 정 정

서울특별시 조례6681호 정정

서울시보 제3443호, 2017.12.28.자 6면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조례 제6681호” 내용에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정정사항

기존	정정
제3조 (시장의1 책무)	제3조 (시장의 책무)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